

세법연구 17-02

재정정책과 조세부담의 관계 국제비교

2017. 6.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성훈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은주 전문연구원

이서현 연구원

목차

I. 서론	11
1. 연구배경	11
2.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자료 수집	13
3. 한국의 조세부담률 변화	15
II. 일본의 조세부담률 추이 및 조세정책 변화	19
1. 조세부담률 추이	19
2. 시점별 주요 정책 변화	22
가. 주요 조세정책과 세수구조	22
나. 개인소득세	26
다. 법인소득세	30
라. 소비세(부가가치세)	33
3. 소결	37
III. 영국의 조세부담률 추이 및 조세정책 변화	39
1. 조세부담률 추이	39
2. 시점별 주요 정책 변화	42
가. 주요 조세정책과 세수구조	42

나. 개인소득세	45
다. 법인소득세	50
라. 부가가치세	54
3. 소결	56
IV. 스페인의 조세부담률 추이 및 조세정책 변화	58
1. 조세부담률 추이	58
2. 시점별 주요 정책 변화	61
가. 주요 조세정책과 세수구조	61
나. 개인소득세	66
다. 법인소득세	69
라. 부가가치세	72
3. 소결	74
V. 독일의 조세부담률 추이 및 조세정책 변화	76
1. 조세부담률 추이	76
2. 시점별 주요 정책 변화	79
가. 주요 조세정책과 세수구조	79
나. 개인소득세	83
다. 법인소득세	85
라. 부가가치세	88
3. 소결	90

VI. 스웨덴의 조세부담률 추이 및 조세정책 변화.....	93
1. 조세부담률 추이.....	93
2. 시점별 주요 정책 변화.....	96
가. 주요 조세정책과 세수구조.....	96
나. 개인소득세.....	101
다. 법인소득세.....	104
라. 부가가치세.....	107
3. 소결.....	109
VII. 요약 및 시사점.....	112
1. 국가별 조세부담률 변화.....	112
2. 조세제도 변화와 부담률 변화.....	114
참고문헌.....	117

표 목차

〈표 II-1〉 일본의 개인소득세 연혁.....	28
〈표 II-2〉 일본의 법인소득세 연혁.....	31
〈표 II-3〉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연혁.....	36
〈표 III-1〉 영국의 개인소득세 연혁.....	48
〈표 III-2〉 영국의 개인소득세 비과세 및 공제제도 연혁.....	50
〈표 III-3〉 영국의 법인소득세 연혁.....	52
〈표 III-4〉 영국의 부가가치세 연혁.....	55
〈표 IV-1〉 스페인의 개인소득세 연혁.....	66
〈표 IV-2〉 스페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연혁.....	70
〈표 IV-3〉 스페인의 법인소득세 연혁.....	71
〈표 IV-4〉 스페인의 부가가치세 연혁.....	72
〈표 V-1〉 독일의 개인소득세 연혁.....	84
〈표 V-2〉 독일의 법인소득세 연혁.....	87
〈표 V-3〉 독일의 부가가치세 연혁.....	90
〈표 VI-1〉 스웨덴의 개인소득세 연혁.....	102
〈표 VI-2〉 스웨덴의 법인소득세 연혁.....	105
〈표 VI-3〉 스웨덴의 부가가치세 연혁.....	109

〈부표 1〉 한국의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121
〈부표 2〉 일본의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122
〈부표 3〉 영국의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123
〈부표 4〉 스페인의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124
〈부표 5〉 독일의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125
〈부표 6〉 스웨덴의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126

그림 목차

[그림 I-1]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	15
[그림 I-2]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16
[그림 I-3] 한국의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률.....	17
[그림 I-4] 한국의 세목별 세수비중: OECD 평균과의 비교.....	18
[그림 II-1]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	20
[그림 II-2] 일본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21
[그림 II-3] 일본의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률.....	23
[그림 II-4] 일본의 세목별 세수비중: OECD 평균과의 비교.....	25
[그림 II-5] 일본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	27
[그림 II-6] 일본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	30
[그림 II-7] 일본의 소비 조세부담률.....	35
[그림 III-1] 영국의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	40
[그림 III-2] 영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41
[그림 III-3] 영국의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률.....	44
[그림 III-4] 영국의 세목별 세수비중: OECD 평균과의 비교.....	45
[그림 III-5] 영국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	47
[그림 III-6] 영국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	51
[그림 III-7] 영국의 소비 조세부담률.....	55

[그림 IV-1] 스페인의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	58
[그림 IV-2] 스페인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61
[그림 IV-3] 스페인의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률.....	64
[그림 IV-4] 스페인의 세목별 세수비중: OECD 평균과의 비교.....	65
[그림 IV-5] 스페인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	67
[그림 IV-6] 스페인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	69
[그림 IV-7] 스페인의 소비 조세부담률.....	73
[그림 V-1] 독일의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	77
[그림 V-2] 독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78
[그림 V-3] 독일의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률.....	81
[그림 V-4] 독일의 세목별 세수비중: OECD 평균과의 비교.....	82
[그림 V-5] 독일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	85
[그림 V-6] 독일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	86
[그림 V-7] 독일의 소비 조세부담률.....	89
[그림 VI-1] 스웨덴의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	93
[그림 VI-2] 스웨덴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94
[그림 VI-3] 스웨덴의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률.....	98
[그림 VI-4] 스웨덴의 세목별 세수비중: OECD 평균과의 비교.....	100
[그림 VI-5] 스웨덴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	104
[그림 VI-6] 스웨덴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	106
[그림 VI-7] 스웨덴의 소비 조세부담률.....	108

I. 서론

1. 연구배경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점차 둔화되는 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조세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짐
 -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와 관련된 재정 지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경제가 예전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 증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개정하여 조세 수입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함
 - 점차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조세 수입의 원천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세제도를 개정하여 조세 수입을 늘리면, 경제 규모 대비 조세부담의 비중도 증가함

- 이러한 배경에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할 때 조세부담률, 즉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수입의 비율을 주요한 정책 지표로서 고려함
 - 국민부담률, 즉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도 함께 주요한 지표로 이용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국가 경제 내에서의 전반적인 조세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임

- 본 보고서에서는 조세정책의 변화와 조세부담 수준 사이의 관계를 통사(通史)적인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할 때 기여하고자 함

- 다만 조세정책의 변화와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과 같은 거시경제적인 지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사례 연구에 집중하고자 함
- 본보고서에서는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스페인에서 있었던 조세정책의 변화가 조세부담 수준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연구함
 - 주요 국내의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개별 연구 대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조세정책의 변화를 추적하여 재구성하는 데 있어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이 대체로 1980년 전후 이어서 연구의 시작점을 1980년으로 설정하였음
 - 연구 대상 국가를 선정하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거나 앞으로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문제를 연구대상 기간 동안 경험한 국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 예를 들어, 독일의 통일, 일본의 고령화, 스웨덴의 복지 재원 충당, 영국과 스페인의 국제 경제위기 대응 등이 조세정책 변화에 미친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 한편 조세부담률 또는 국민부담률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정해진 시점에서 국가별 부담률 수준을 비교하는 횡단면적인 분석에 집중하거나, 시계열적인 분석을 수행하거나 패널자료를 이용하더라도 단순히 부담률 수준의 변화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음
 - 예를 들어, 박형수(2004)에서는 OECD 주요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지표(1인당 GDP, 경제개방도, 국가채무 비중 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나, 각 부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음
 - 한편, 안종석(2017)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변화를 제도적 변화와 함께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조세부담률에 대한 국제 비교를 할 때는 다른 국가에서의 제

도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음

- 이와 같은 제한적인 분석 방식으로 인해 시기별 조세제도의 변화와 부담률의 변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 본 보고서에서는 개별 연구대상 국가에 집중하여 조세제도의 구체적인 변화와 부담률의 변화를 함께 살펴봄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제 I 장의 나머지 절에서는 주요 용어의 정의와 자료 수집 절차를 설명하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부담률 자료를 간략히 제시함
- 제 II 장부터 제 VI 장은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스페인 각국의 조세부담률 추이와 조세정책 변화를 1980년부터 최근까지 시기별로 요약하고, 조세정책과 조세부담의 관계를 분석
- 제 VII 장에서는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함

2.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자료 수집

□ 본 연구에서는 주요 지표로서 OECD Revenue Statistics¹⁾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²⁾을 차용하였으며, 두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
- 1) OECD Revenue Statistic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는 회원국의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총세수입, 각 세목별 세수입의 금액 및 조세부담률 등 관련 통계자료를 공표하고 있으며 GDP, 환율 및 인구 등 기준 통계자료는 Reference Series for Revenue Statistic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FSERIES_REV)에서 별도 공표하고 있음
 - 2) OECD에서는 Revenue Statistics(RS)와 Economic Outlook(EO)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두 수치에는 차이가 존재함. 이는 일반적 특징 및 국가 특징적 요소에 의한 것으로 회계기법의 차이(RS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EO는 현금과 발생주의를 혼용함)와 회계기간의 차이(조사대상국 중 일본은 회계연도와 역년이 다름) 등에서 비롯함. 조사대상국의 국민부담률은 RS와 EO 간에 평균 -1.2%p(한국), 0.4%p(일본), -0.6%p(영국), -1.4%p(스페인), -3.9%p(독일), -0.8%p(스웨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부담률은 한 국가의 명목 GDP 대비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text{- 조세부담률} = \frac{\text{국세} + \text{지방세}}{\text{명목 GDP}} \times 100$$

○ 국민부담률은 한 국가의 명목 GDP 대비 조세수입과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국가 재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각종 사회기여금 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text{- 국민부담률} = \frac{\text{국세} + \text{지방세} + \text{사회보장기여금}}{\text{명목 GDP}} \times 100$$

□ 주요 3대 세목별 조세부담 및 제도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명목 GDP 대비 각 세목별 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목별 조세부담률'로 정의하고 지표로서 차용함

○ 주요 3대 세목은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부가가치세로 구성되며, OECD Revenue Statistics에서는 각 세목을 1110, 1120, 5111 코드로 구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정의함

$$\text{- 개인소득 조세부담률} = \frac{\text{개인소득(1110) 세수입}}{\text{명목 GDP}} \times 100$$

$$\text{- 법인소득 조세부담률} = \frac{\text{법인소득(1120) 세수입}}{\text{명목 GDP}} \times 100$$

$$\text{- 소비 조세부담률} = \frac{\text{부가가치(5111) 세수입}}{\text{명목 GDP}} \times 100$$

□ 조세부담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World Bank의 명목 GDP 연평균 성장률을 경제성장률지표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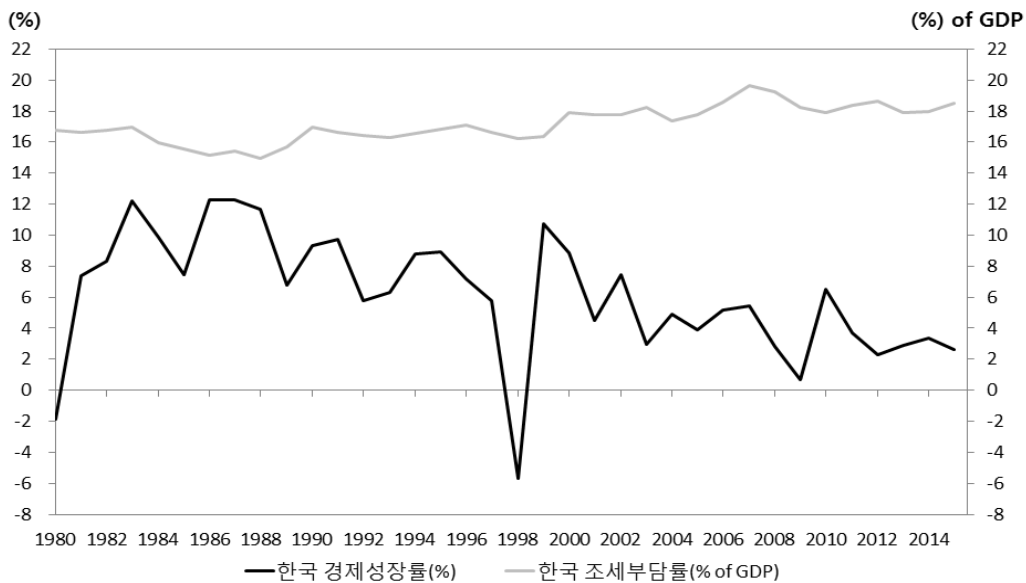
○ 명목 GDP 변화율이 경제성장률로 정의됨

$$\text{- 경제성장률} = \frac{\text{금년도 명목 GDP} - \text{전년도 명목 GDP}}{\text{전년도 명목 GDP}}$$

3. 한국의 조세부담률 변화

- 본 절에서는 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및 조세제도 연혁에 대해 분석하기에 앞서 한국의 조세부담률 및 재정상황 변화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검토 시기는 분석대상국과 동일한 1980년대부터 2014년까지로 함
- [그림 I-1]을 보면 1980년대는 6.8~12.3%, 1990년대는 5.8~10.7%, 2000년대는 2.8~8.8%, 2010~2014년은 2.3~6.5%으로 나타나 경제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임
- 1980년은 2차 오일쇼크로³⁾, 1998년은 IMF 경제위기로,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함

[그림 I-1]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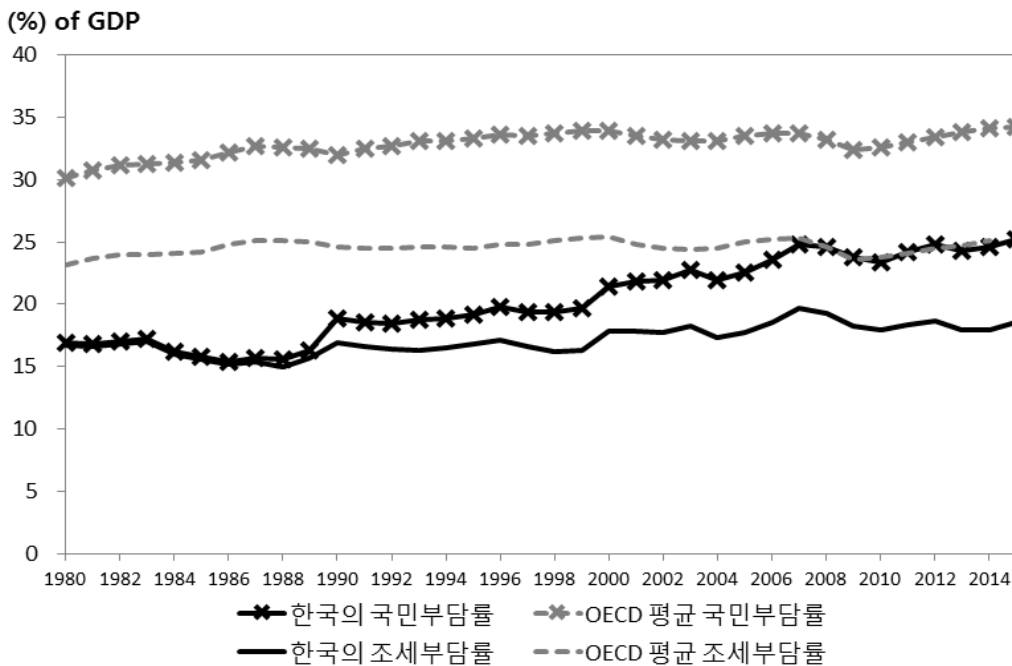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OECD, Revenue Statistics

3) 1979년에 있었던 2차 오일쇼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였고 이로 인해 1980년 경제성장률은 -1.9%를 기록하였음

-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80년대 초반에 소폭 하락하였다가 1990년대부터 16%대를 회복하였고 2000년대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5년 이후로 약 18%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10% 이하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한데 비해 조세 부담률은 증가함
- 1980년대 말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간에 유의한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함
- OECD Revenue Statistics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2년 0.103%에서 1988년 0.590%로 급증하였으며 2015년 현재 6.717%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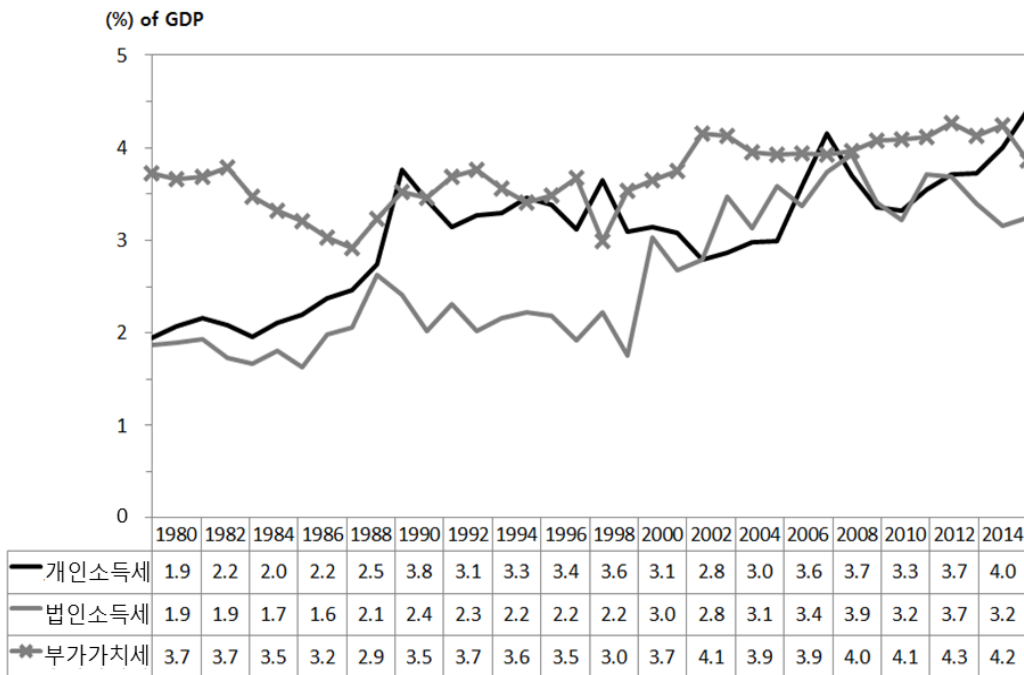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그림 I-3]은 개인소득, 법인소득, 소비의 조세부담률 변화를 나타냄
 -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80~2014년 기간에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지만, 1980년 1.9%에서 2014년에는 4.0%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증가추세라 할 수 있음
 - 법인소득 조세부담률 역시 1980년에 1.9%에서 2014년에는 3.2%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임
 - 시기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과 2000년 초반에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비 조세부담률은 1980년에 3.4%에서 2014년에는 4.2%로 증가하였으나 개인 소득과 법인소득의 조세부담률에 비해 증가폭은 낮음

[그림 I-3] 한국의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그림 I-4]는 1980~2014년 기간의 세목별 세수비중 변화를 나타냄
 - 1980~2014년 기간의 세목별 비중 변화를 보면, 소비세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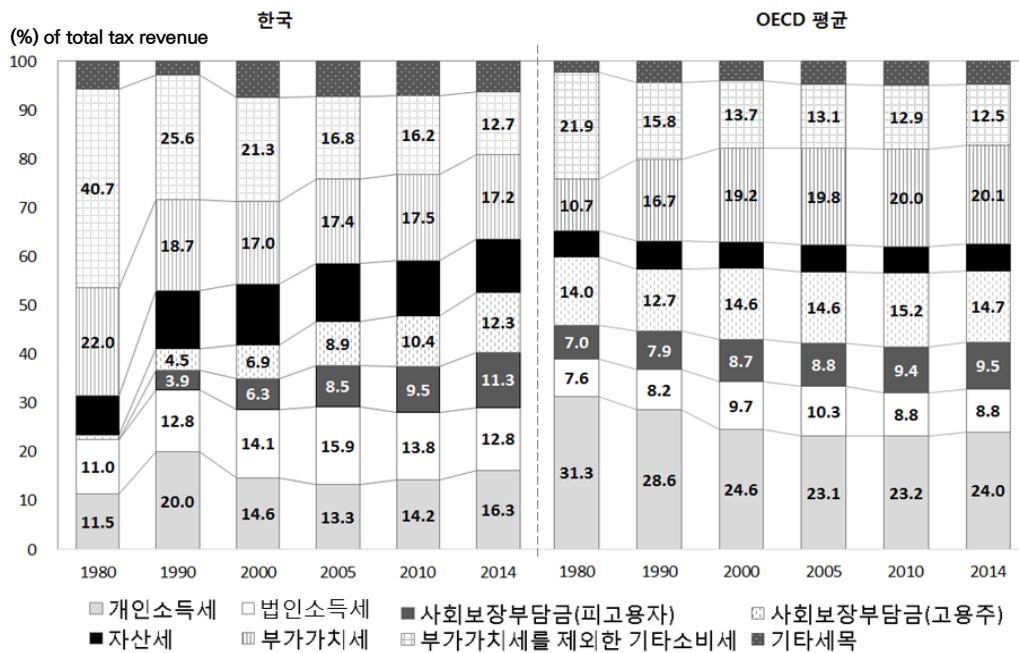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하였음

- 1980년에 부가가치세와 기타소비세가 각각 22.0%와 40.7%로 총소비세 비중이 62.7%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는 각각 11.5%와 11.0%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2014년에는 전체 소비세 비중이 29.9%까지 감소하였고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는 각각 16.3%와 12.8%로 증가하였음

○ 한국의 세목별 비중을 OECD 평균과 비교하면, 1980년의 경우 소비세 비중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소비세 비중이 높았으나 2014년에는 OECD 평균에 유사한 수준이 되었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1980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법인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그림 1-4] 한국의 세목별 세수비중: OECD 평균과의 비교



주: 기타세목에는 급여세(payload tax)와 기타세금이 포함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Ⅱ. 일본의 조세부담률 추이 및 조세정책 변화

1. 조세부담률 추이

- 1980년 이후 일본 경제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면, 1980년대의 거품이 형성되는 시기와 1990년대의 거품이 붕괴되는 시기를 거쳤고 2001년에 출범한 고이즈미 정권에서는 구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하였으나 2000년 후반 금융위기로 다시 침체를 겪었음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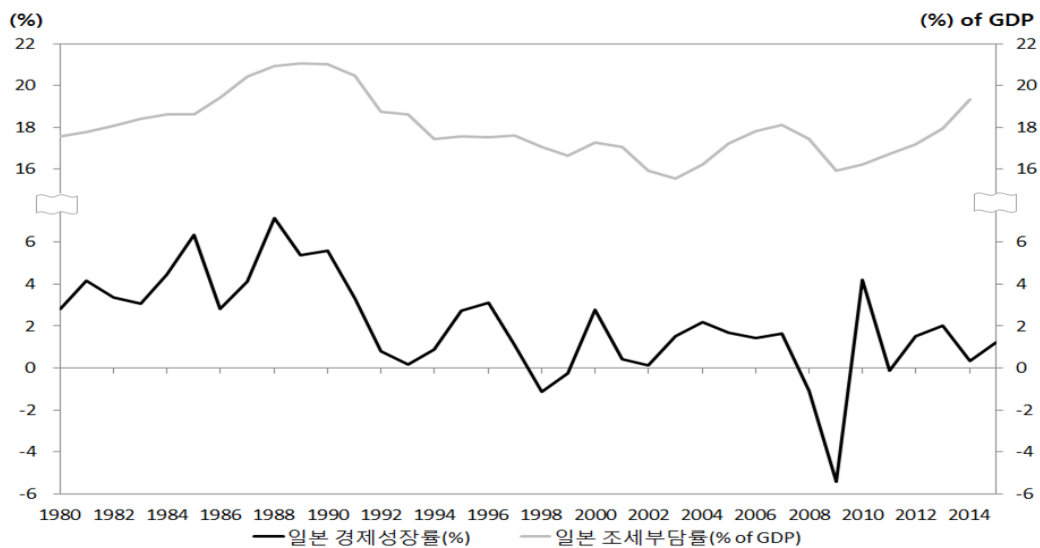
- [그림 II-1]은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일본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인 1980년대의 경제성장률은 2%에서 7%까지 큰 폭의 격차를 보이며 전반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보임
 - 1990년 들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1994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등 1990년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은 -1%에서 2% 정도의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음
 - 2000년대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2009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2%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음

- [그림 II-1]에 나타난 조세부담률 추이를 보면, 1980년대는 초기부터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다가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2003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4) 국중호(2009), pp.30~31를 기초로 작성함

- 조세부담률의 경우 전반적인 흐름은 경제성장률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급격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경제성장률이 감소하였던 1990년대에 조세부담률도 대체로 감소하였고 경기가 회복하였던 2000년대에 다시 증가하였음
- 2001년 시작된 고이즈미 정권은 구조개혁 정책을 내세워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해소 및 국채발행 축소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세출 축소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반영하듯, 조세부담률 추이를 보면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17~21%수준이었던 조세부담률이 2002년 15.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2003년부터 일본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0년대 후반기에는 다시 침체되었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2008년 9월부터는 국채발행을 증가시켰고 아소정권에서는 2009년 다시 대폭적인 세출확대로 전환함
 - 2009년 직후의 조세부담률은 큰 변화가 없지만 2010년부터 2014년 기간에 점차 증가하여 2010년 16.2%이던 조세부담률이 2014년에는 19.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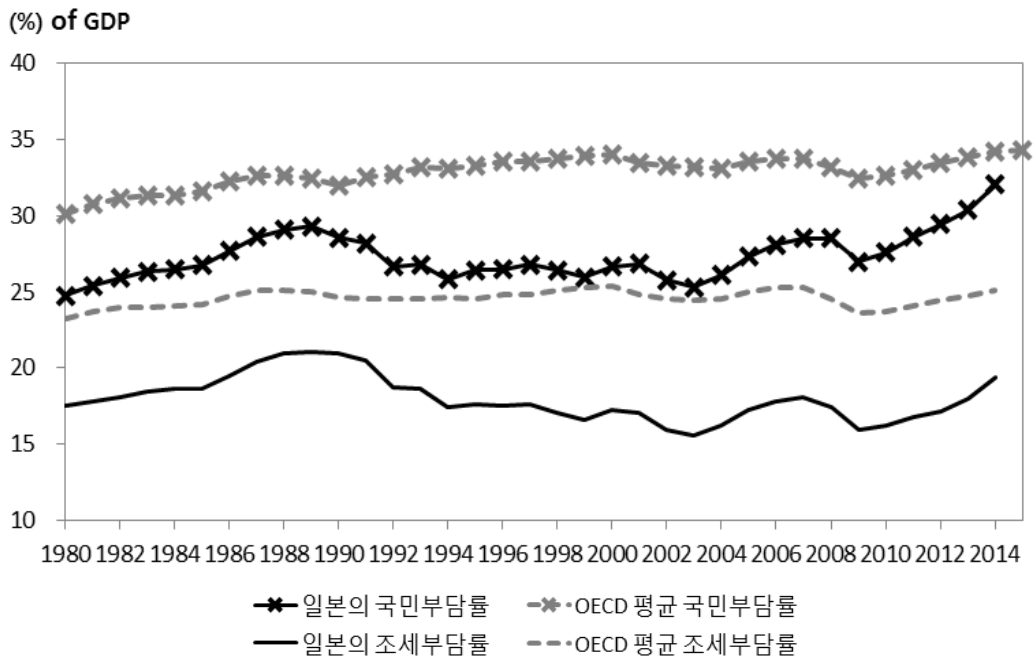
[그림 II-1]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



자료: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OECD, Revenue Statistics

- [그림 II-2]를 보면, 일본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1990~2014년 기간의 일본의 조세부담률 추이를 보면, 1990년 21.0%에서 2002년 15.9%까지 감소 추이를 보이거나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면 최근까지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하여 2014년에는 19.3%로 나타나며 이러한 추세는 국민부담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일본 경제가 하락 국면이었던 1990년대에 점차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 그 격차가 더 커짐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차이는 사회보장부담금 부분이므로, 일본에서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격차가 점차 증가하는 것은 고령화의 진전이 사회보장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그림 II-2] 일본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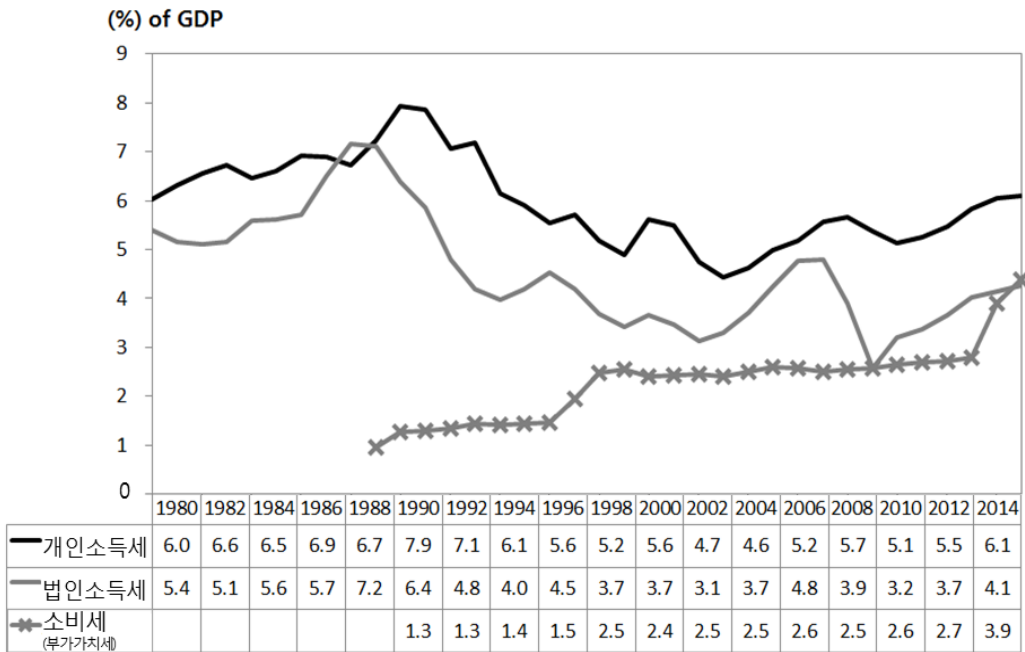
2. 시점별 주요 정책 변화

가. 주요 조세정책과 세수구조

- 일본의 주요 조세개혁으로는 1989년의 근본적 세제개혁과 1998년의 법인소득세 개혁을 들 수 있음
 - 1989년의 근본적 세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것이고 1998년의 법인소득세 개혁은 법인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소득세율 인하를 단행한 것임
- [그림 II-3]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요 세목의 세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소득 조세부담률, 법인소득 조세부담률, 소비 조세부담률을 나타냄
 - 개인소득 조세부담률, 법인소득 조세부담률, 소비 조세부담률은 각각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 소비세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1990년부터 최근까지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과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데,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과 2009년 기간에는 소득세의 경우 미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법인소득세의 경우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금융위기는 개인보다는 기업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의 경우 1990년 8%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나 거품경제가 사라지던 1990년대에 꾸준히 하락하여 1999년에는 4.8%까지 하락하였고 2000년 이후 기간에는 4~5%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의 경우도 개인소득과 유사하게 1990년대에는 하락세를 보이는데, 1990년 6.4%에서 1999년에는 3.4%까지 하락하였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다시 증가하였지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과 2009년에 다시 급격히 하락하여, 2009년에 2.57%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에는 다시 상승 추세에 있음

- 일본의 경우 부가가치세 성격의 세목으로 ‘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1989년 도입되어 두 차례의 세율 인상이 있었고 이러한 세율 변경이 세수 비중에 반영되어 나타남
- 소비세 도입 당시에는 소비 조세부담률이 1%수준이었으나 1996~1998년의 상승기를 거쳐 2%수준이 되었고 2014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2015년에 상승하여 두 배에 달하는 4%대까지 증가하였음
- 2015년 현재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비중은 각각 6.1%, 4.2%대를 유지하고 있고 소비세는 4.4%로, 2015년 들어 처음으로 소비 조세부담률이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을 초과하였음

[그림 II-3] 일본의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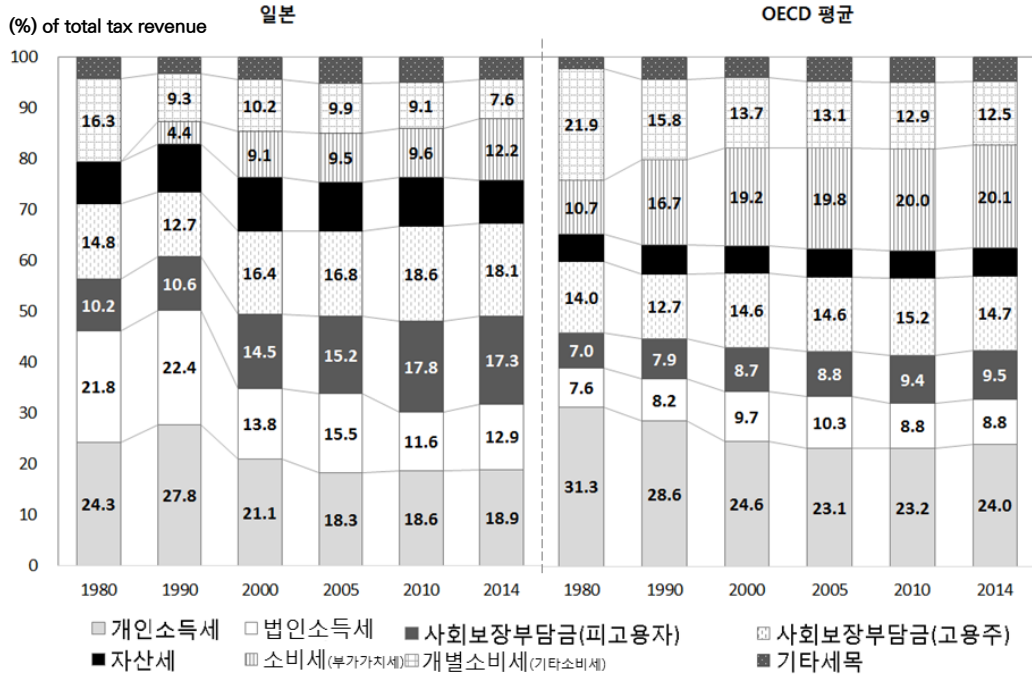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그림 II-4]에서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세목별 비중을 보면, 1980년도의 경우 총소비세⁵⁾, 개인소득세, 사회보장부담금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총소비세, 사회보장부담금, 개인소득세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개인소득세 비중이 감소한 것이 두드러짐
-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1980년에 31.3%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24.0%를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보장부담금은 2008년에 21%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24.2%를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보장부담금의 구성을 보면, 고용주 부담은 2008년에 14%에서 2014년에 14.7%로 0.7%p 증가한 반면 피고용자 부담은 2008년에 7.0%에서 2014년에 9.5%로 증가하여 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사회보장부담금 증가분 중 피고용자 부담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컸음
 - 법인소득세의 비중은 2008년 7.6%에서 2014년에는 9.1%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총소비세의 비중은 2008년에 32.6%에서 2014년에도 32.6%로 동일한 수준이지만, 총소비세 내에서 소비세의 비중은 증가하고 개별소비세 비중은 감소하였음
 - 총소비세는 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성되는데, 개별소비세의 비중은 1980년 21.9%에서 2014년에 12.5%로 9.4%p 감소한 반면 소비세의 비중은 1980년 10.7%에서 2014년 20.1%로 9.4%p 증가하였음
 - 총소비세의 비중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개별소비세의 상당부분이 소비세로 대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5) 총소비세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일본의 경우 부가가치세 성격의 세목을 '소비세'라 칭하고 있으므로 소비세와 개별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함

[그림 II-4] 일본의 세목별 세수비중: OECD 평균과의 비교



주: 기타세목에는 급여세(payroll tax)와 기타세금이 포함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그림 II-4]에서 일본의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세목별 비중을 보면, 1980년에 사회보장 부담금,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2014년에는 사회보장 부담금, 개인소득세, 총소비세의 순으로 변화하였음

- 시대별 비중 변화를 보면, 소득세의 감소와 사회보장부담금의 증가가 두드러짐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합한 소득세 비중은 1980년에 46.1%에서 2014년에 31.8%로 감소하였고 사회보장부담금 비중은 1980년 24.8%에서 2014년 35.4%로 증가하였음

□ 소득세 비중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모두 감소하였음

-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2008년 24.3%로 2014년에는 18.9%까지 감소하였고 법인소

득세 비중은 1980년에 21.8%로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나 2014년에는 12.9%로 감소하여 세수기여도가 상당히 낮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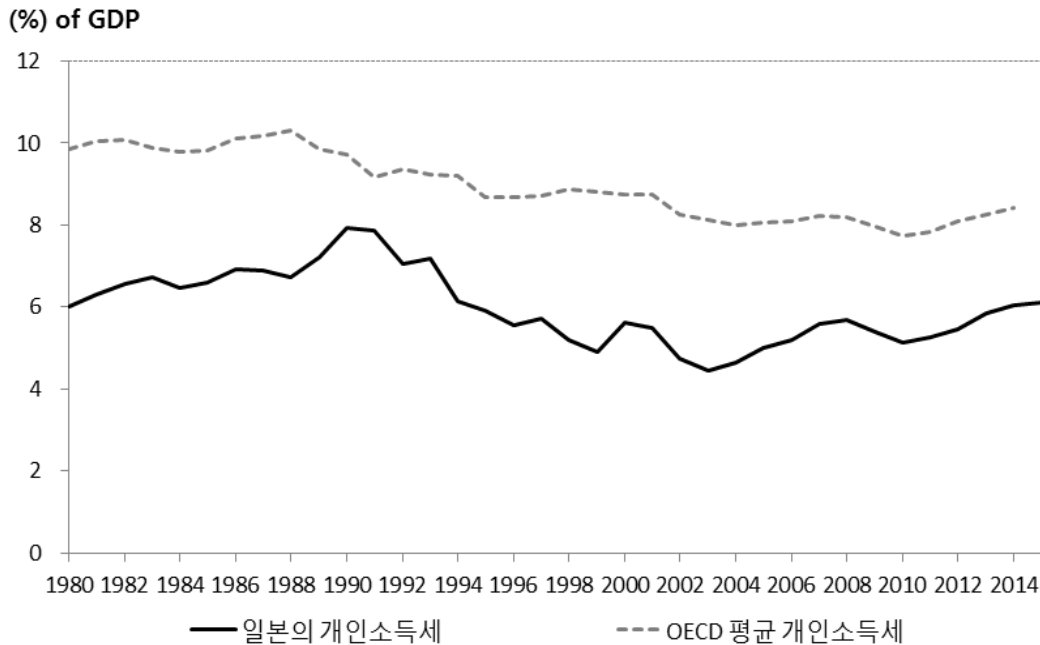
- 총소비세의 경우, 1980년에 16.3%에서 소비세 도입 직후인 1990년에는 13.7%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 19.3%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4년 현재는 19.8%를 차지하고 있음
 - 1990년에 개별소비세의 비중이 9.3%에서 2014년에는 7.6%로 감소한 반면, 소비세(부가가치세)의 비중은 1990년에 4.4%에서 2014년에는 12.2%로 증가하였으므로 총소비세의 증가는 소비세의 증가에 의한 것임
- 일본의 세수비중을 OECD와 비교할 때 특징적인 것은 개인소득세 비중과 총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과 법인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임
 - 일본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1980년에 24.3%로 OECD 평균인 31.3%에 비해 상당히 낮았으며 2014년 현재도 여전히 OECD 평균인 24.0%에 비해 낮은 18.9%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법인소득세 비중은 1980년에 21.8%로 OECD 평균 7.6%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12.9%수준이지만 OECD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비중은 도입 시점인 1990년 4.4%에서 2014년 12.2%까지 증가하였지만 2014년 OECD 평균인 20.7%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음

나. 개인소득세

- [그림 II-5]에서 1980년부터 최근까지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을 보면, 1980년 6%에서 1990년 8%까지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에 다시 4%까지 하락한 뒤 약한 상승 추세를 보여 2014년 현재 6%대 수준임

- 일본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낮은 국가라 할 수 있음

[그림 II-5] 일본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시점별 일본 소득세율구조의 주요 개정과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⁶⁾
 -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는 1984년, 1987년, 1989년의 세 번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이 기간에 이루어진 개정에서 주요 특징은 최고세율이 75%에서 50%까지 인하되었고 세율구간이 16개 구간에서 5개 구간으로 축소됨으로써 누진구조가 대폭 완화되었다는 것임

6) 일본의 소득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9년 5월에 작성된 사우프 세제권고에 의해 현행 세제의 기초가 이루어졌음

- [그림 II-5]를 통해 1980년대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 추이를 보면, 최고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990년대에는 1995년과 1999년의 두 번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이 시기의 특징은 과세구간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세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세수가 감소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최고세율이 50%에서 37%로 인하된 것도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그림 II-5]를 보면, 이러한 개정을 반영하듯 1990년부터 2002년까지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의 개정으로는 2007년에 최고세율을 인상과 누진구조를 강화하는 개정이 있었음
 -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2007년의 개정 직후에는 증가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추세임

〈표 II-1〉 일본의 개인소득세 연혁

(단위: %, 개)

	최저세율	최고세율	세율구간 수	주요 개정내용
1950	20	55	8	샤우프세제 ¹⁾
1953	15	65	11	부유세 폐지
1969	10	75	16	최고세율 인상
1984	10.5	70	15	최고세율 인하
1987	10.5	60	12	최고세율 인하
1989	10	50	5	근본적 세제개혁(소비세 도입)
1995	10	50	5	과세구간 소득금액 상향조정 ²⁾
1999	10	37	4	최고세율 인하
2007	5	40	6	지방으로의 세원이양(소득세→주민세)
2015	5	45	7	최고세율 인상

주: 1) 1949년 5월에 샤우프(C. Shoup)를 단장으로 미국의 재정 및 조세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조세사절단이 만든 세제권고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세제를 전면 개정하는 개혁안이었음

2) 10% 과세구간 소득은 300만엔에서 330만엔으로, 50% 과세구간 소득은 2,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상향조정됨

자료: 국중호(2009), p.79를 기초로 추가 작성

- 세율 외의 주요 개정과 조세부담률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1987년 9월부터 1988년 12월
까지의 기간에 세제개혁에 관한 논의를 거쳐 1989년부터 대부분의 조세제도가 새롭게
실시되었는데 이 시기의 조세개혁의 목적은 고령화 및 국제화에 대처하는 것이었음⁷⁾
 - 조세개혁의 특징은 지나치게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한
편 비과세제도를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기조로 하였음
 - 세부적으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원칙화하고 1992년 9월에는 소액주
축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이자소득의 원천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이
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음
 -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년 12월에 세율구조 간소화를 위해 종전 12단계
에서 5단계 세율구조로 개정하였고 인적공제를 인상하였음
 - [그림 II-5]를 보면, 이러한 소득세 과세강화의 효과를 반영하듯 1989~1990년 기간
에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1990년대 초반부터
10여 년에 걸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시기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시기로 자산 가치 하락이 소득세 세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개정은 주목할 만한 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세수 증가로는 연결되지 않았음
-
- 1999년에는 아시아 경제위기 직후 경기대책을 위하여 잠정적인 국세부담 감면조치로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정률감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가 2007년 폐지하였음⁹⁾
 - 이는 1999~2005년 기간에 세액의 20% 상당액(상한 25만엔)을 공제하고 2006년에
는 세액의 10% 상당액(상한 12.5만엔)을 공제하는 제도임
 - 동 개정은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가처분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 기간에 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7) 이 개혁을 나카소네-타케시타 세제개혁이라 함

8) 국중호(2009), 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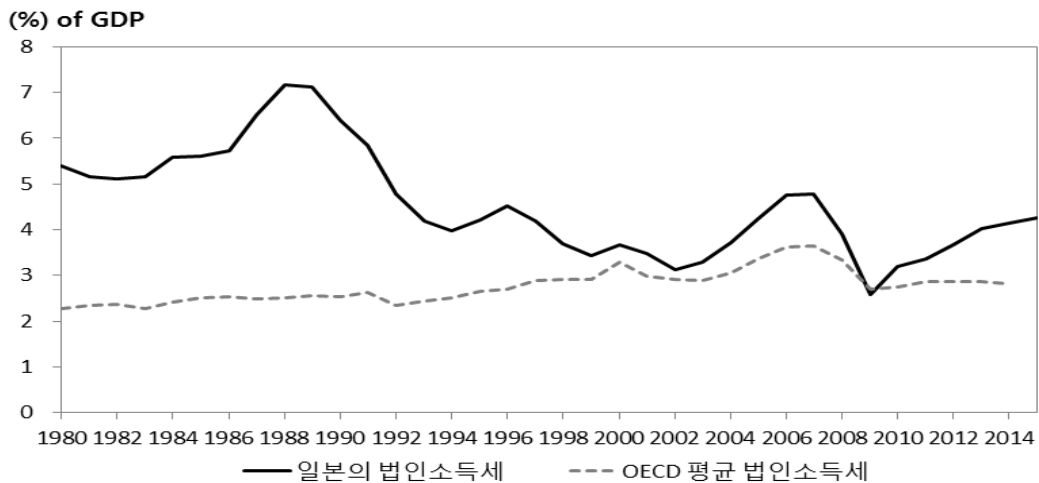
9) 長谷川卓(2005)

- 2000년대에는 세율구조 간소화와 최고세율 인하 및 공제 축소가 이루어졌음
 - 2000년에 최고세율은 50%에서 37%로 인하되었으나 2004년에는 배우자특별공제 추가분과 노령자공제가 폐지되었음
 - 이러한 세제개편의 특징은 1980년대 후반의 '낮은 세율 넓은 세원'과 같은 맥락의 개정으로 세율은 인하하되, 공제를 축소함으로써 세원을 유지하려는 정책임
 - [그림 II-5]를 보면, 2000년에 개인소득 부담률이 일시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2001~2003년에는 감소하고 있어 세율인상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2004년의 공제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2004~2007년에 오히려 부담률은 증가하고 있어 세율의 인상이나 공제의 축소가 직접적으로 조세부담률에 반영되어 나타나지는 않음

다. 법인소득세

- [그림 II-6]은 1980~2014년 기간의 일본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을 나타냄
 - 일본은 오래전부터 OECD 국가 중 법정 법인소득세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고 [그림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소득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였음

[그림 II-6] 일본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법인소득세는 조세제도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세목이므로 다음에서는 시대별 경제적 상황이나 주요 조세개정과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의 관계를 살펴봄
- 법인소득세율은 국가의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소득세 등 기타 세목과의 균형을 맞추어 그 시대의 재정 상태나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1990년 이후 주요 개정은 <표 II-2>와 같음¹⁰⁾

<표 II-2> 일본의 법인소득세 연혁

(단위: %)

적용 사업연도	보통법인	중소법인의 경감세율 (연소득 800만엔 이하 부분)	조합법인 등	공익법인 등, 특정의료법인
1990 (근본적 개정)	37.5	28	27	27
1998 (법인소득세 개혁)	34.5	25	25	25
1999	30	22	22	22
2008	30	18	22 ²⁾	22 또는 30 ²⁾
2009	30	18 ¹⁾	22 ²⁾	22 또는 30 ²⁾
2012	25.5	15 ¹⁾	19 ²⁾	19 또는 25.5 ²⁾
2015	23.9	15 ¹⁾	19 ²⁾	19 또는 23.9 ²⁾

주: 1) 자본금이 5억엔 이상인 법인에 의해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은 제외

2) 연소득 800만엔까지는 15%

1.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기준법인소득세액의 10%의 부흥특별법인세(復興特別法人税)가 과세됨

자료: 江島一彦 編著(2015), p.135

- 1980년대에는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았으나 1990년대 경기침체를 거치며 법인소득세의 세수기반 확보 및 세율 인하를 통한 실효세율 인하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혁이 있었고 이후 법정 법인소득세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어 현재는 법인소득세 세수 비중이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10) 江島一彦 編著(2015), p.134

- 일본 경제의 활황기였던 1980년대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을 보면, 1980년 5%대에서 1980년대 후반에는 7%대로 상승하였고 OECD 평균과 약 5%p 정도의 큰 격차를 보이면서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1990년대 들어서는 점차 감소함
- 1990년대는 일본경제의 거품이 꺼지는 시기이면서 1990년의 근본적 세제개정으로 법인소득세율도 42%에서 37.5%로 인하되어 법인세수가 감소할 만한 상황이었음
 - [그림 II-6]을 보면,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89년을 정점으로 1994년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락 추세는 1995~1996년 기간에 잠시 주춤함
 - 1998년도의 법인세제 개혁은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활력과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과세기반의 대폭적인 검토가 행해졌고 기본세율을 37.5%에서 34.5%로 인하하였고 1999년에는 경제상황을 배려하여 과세기반의 재검토는 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30%로 인하함
 -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여 2000년에는 OECD 평균과 유사한 3%수준까지 떨어졌고 2000년대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6년 5%대를 기록하였다가 금융위기를 거친 2008년 전후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빠른 회복세를 이루어 최근에는 상승추세를 보임
- 2008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을 22%에서 18%로 인하하였고 이 시기에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2007년 4.8%에서 2008년 3.9%, 2009년 2.6%로 2개 연도에 걸쳐 크게 감소하였으나 금융위기라는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던 시기와 겹치므로 법인소득 부담률의 감소가 세율인하보다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 2010년의 세제개정에서는 국제경쟁력의 향상이나 입지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면서 기본세율을 30%에서 25.5%로 인하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22%에서 19%로 인하하였으며, 이는 2012년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 2010년 이후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율인하가 조세

부담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2015년의 개정에서는 과세기반을 확대하면서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익력 있는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법인과세를 성장지향형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본세율을 23.9%로 인하하였음

- 일본은 1990년대 들어서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겪게 되면서, 1998년 4월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총액 16조엔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게 되며 그 종합대책에는 4조엔 규모의 감세정책이 포함되었음¹¹⁾¹²⁾

- 감세정책에는 세율 인하 외에도 과세기반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 상여금충당금, 제품보증충당금을 폐지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비율을 낮추었고 신규취득건물에 정액법만 허용하는 등의 감가상각제도의 개정이 있었음¹³⁾

- [그림 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조세부담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은 과세기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라. 소비세(부가가치세)

- 일본은 1988년 12월 근본적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성격의 ‘소비세’를 신설하여 1989년 4월 1일부터 3%의 단일세율로 부과하기 시작하였음¹⁴⁾

- 이후 1997년 4월에 소비세율을 5%로 인상하였고 2014년 4월 세율을 5%에서 8%로

11) 국중호(1998), pp.42~51

12) 1998년도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국중호, 1998, p.47).

첫째, 개인소득세 및 개인주민세에 관하여 정액의 특별감세를 실시하여 내수(소비)를 진작함

둘째, 금융·경제정세를 감안하여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변화 및 제반 개혁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세제, 금융관계세제, 토지·주택세제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

13) 財務省, 「平成10年度税制改正の概要」, 1999, 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trend/sy004a1.htm, 검색일자: 2017. 8. 10

14) 江島一彦 編著(2015), p.186

인상하였음¹⁵⁾

- 1997년에 인상된 2%p 중 1%p는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분이고 2014년에 인상된 3%p 중 1.7%p는 지방소비세분임

○ 2004년 4월에는 소비세 납부의무면제 사업자 기준을 매출액 3,000만엔에서 1,000만엔으로 인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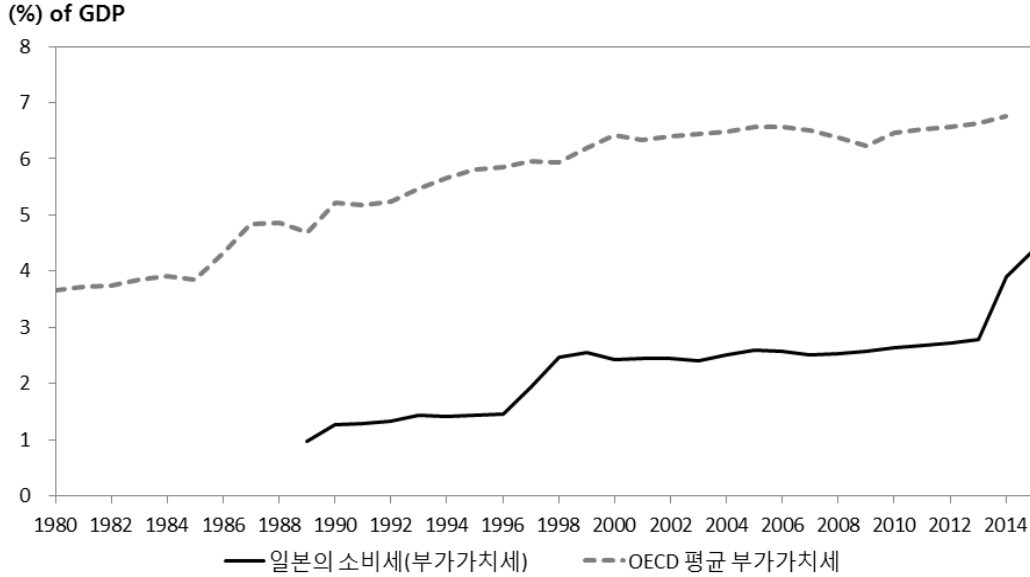
□ [그림 II-7]을 보면, 일본의 소비 조세부담률은 전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세율 인상과 함께 증가 추세에 있음

○ 소비세의 도입 전·후로는 총소비세의 세수에 큰 변화가 없지만 소비세 세율이 3%에서 5%로 인상된 1997년과 5%에서 8%로 인상된 2014년에 총소비세 및 소비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 일본은 많은 간접세(개별소비세)를 폐지하면서 소비세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소비세가 도입된 1989년 전·후로 총소비 조세부담률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도입시점인 1989년 소비세부담률은 0.97%이었고 1997년에 1.94%까지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3.91%로 증가하는 등 계단식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세율 인상이 조세부담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남

15) 2015년 10월부터 세율을 10%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인상시기를 2017년 4월로 연기한 바 있으나 또다시 연기되어 현재는 2018년 10월에 인상할 예정에 있음

[그림 II-7] 일본의 소비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1989년에 일본이 소비세를 도입한 취지는 물품 간의 과세불균형이나 용역에 대한 과세의 부재, 소비과세제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국과의 무역마찰 등 당시 개별 간접세 제도가 직면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과세체계 전체를 통한 세부담 공평성을 도모하면서 국민복지에 충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입구조의 안정화에 있었음¹⁶⁾
- 당시 일본은 샤우프권고¹⁷⁾에 의거한 과세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일본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소득과세에 편중되어 있어 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여러 간접세를 정리 및 합리화한다는 관점에서 국세 5개 세목, 지방세 3개 세목을 폐지하면서 소비세를 신설하였음¹⁸⁾

16) 江島一彦 編著(2015), p.186

17) 샤우프권고란 “1949년 샤우프(C. Shoup) 사절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제와 전면적으로 다르게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등의 직접세를 중심으로 하고 소비세 등의 간접세를 보조적인 세제로 하여 새롭게 디자인한 세제개혁 권고”임(국중호, 2009, p.27)

- 소비세 도입과 함께 폐지된 국세는 물품세, 트럼프세, 설탕소비세, 입장세, 통행세
이고 폐지된 지방세는 전기세, 가스세, 목재거래세임

〈표 II-3〉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연혁

적용연도	개정 내용
1989	소비세 도입: 세율 3%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범위 확대(주택임대료 등) - 중소특례조치 축소: 간이과세 적용상한: 5억엔 → 4억엔 한계공제 적용상한: 6천만엔 → 5천만엔 - 신고납부 횟수 증가: 연 세액 500만엔 초과 시 연 2회 → 연 4회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인상: 3% → 5%(지방소비세 1% 포함) - 중소특례조치 축소: 면세점제도 개편: 자본금 1천만엔 이상의 신설법인 적용배제 간이과세 적용상한: 4억엔 → 2억엔 한계공제제도 폐지 - 매입세액공제제도 개편 간편장부 → 청구서 등 보존 방식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특례조치 축소 면세점 적용상한: 3천만엔 → 1천만엔 간이과세 적용상한: 2억엔 → 5천만엔 - 신고납부 횟수 증가 연 세액 6,000만엔(지방소비세 포함) 초과 시 연4회 → 연12회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인상: 5% → 8%(지방소비세 1.7% 포함) - 사회보장재원화 - 면세점제도 개편: 과세매출 5억엔 초과 사업자가 설립하는 신설법인 적용배제 - 임의의 중간신고 신설(연 1회)

자료: 江島一彦 編著(2015), p.187

3. 소결

- 경제성장률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990년대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부담률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 조세부담률은 1980년대 16~19%수준에서 1990년에는 21%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2년에 15.9%까지 하락한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3~2014년 기간에는 다소 증가함
 - 국민부담률은 1990년 28.5%에서 2014년에는 32.0%로 점차 증가하였음
 - 이는 일본이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부담금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세목별 비중은 1980년에 사회보장부담금,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법인소득세 비중이 감소하고 소비세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2014년에는 사회보장부담금, 개인소득세 다음으로 총소비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음
 - 일본의 세수비중을 OECD와 비교하면, 개인소득세 비중과 소비세(부가가치세)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법인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개별적인 조세부담률을 보면, 개인소득 조세부담률과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이 높은 편이고 소비 조세부담률은 낮은 편임
 - 1990년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의 조세부담률이 각각 7.9%, 6.4%였고 소비 조세부담률은 1.3%에 불과함
 - 2014년에는 개인소득 조세부담률과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이 각각 6.1%, 4.1%로 하락한 반면 소비세는 3.9%로 증가하여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의 감소와 소비 조세부담률의 증가가 두드러짐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세수는 세율의 변화보다는 경기 변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지만 소비세 세수는 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
 - 개인소득세의 경우, 1989년과 1999년의 세율 인하 시기에도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걸쳐 30%까지 법인소득세율이 인하되었으며, 법정기본세율이 30%를 유지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은 세율 변화가 없었음에도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꽤 상승함
 - 소비세는 1989년 다양한 간접세를 대체하는 세목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1997년과 2014년 두 차례의 세율 인상이 있었음
 - 소비 조세부담률은 세율이 인상된 연도와 그 다음연도 2개 연도에 걸쳐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Ⅲ. 영국의 조세부담률 추이 및 조세정책 변화

1. 조세부담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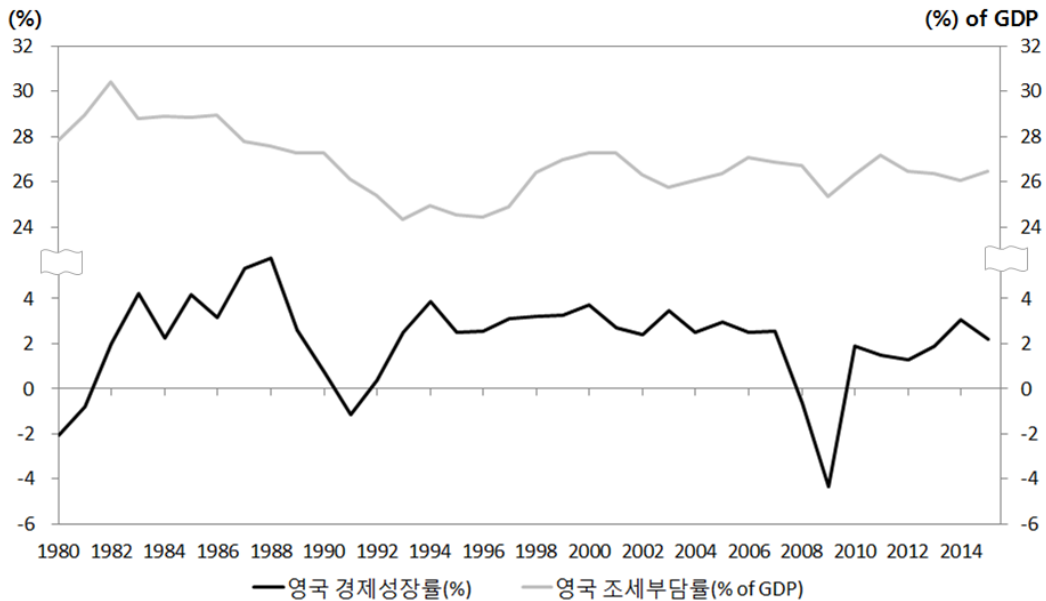
- 영국은 1980~2014년 기간 중 몇 차례의 일시적인 하락기를 제외하면, 3~4%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Ⅲ-1]을 보면, 1979년의 2차 오일쇼크로 1980년에 마이너스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하였지만 빠르게 회복하였고 1983~1997년의 기간에는 평균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하였음
 - 1991~1992년 다시 급락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역시 빠른 속도로 회복하여 1994~2007년까지 평균 3%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함
 - 영국은 1993~2007년 기간에 금융서비스 산업의 호황으로 3%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유럽 경제대국 중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였음¹⁹⁾
 -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또 다시 경제성장률이 -4%대로 나타나지만 단기간에 회복하였고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는 평균 2~3%대의 성장률을 유지함
 - 금융위기로 2008~2009년에 -0.63%, -4.33%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나타낸 바 있지만 이후 점차 회복하여 2014년에는 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 [그림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 또는 하락을 반복하였지만 조세부담률은 큰 변화가 없었고 대체로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감소하였고 2000년대 이후는 유사한 수준임
 - 10년 단위로 평균 조세부담률을 산출해보면, 1980년대는 28.5%에서 1990년대는

19) 박정수(2009), pp.21~22

25.5%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와 2010년 이후기간에는 다시 26.5%로 나타나고 있어 조세부담률은 2000년도 이후 현재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III-1] 영국의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



자료: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OECD, Revenue Statistics

□ [그림 III-2]를 보면, 영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연도별로 보더라도 영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과 유사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1993년부터 1997년 기간에는 OECD 평균과 일치하고 있지만 그 외의 기간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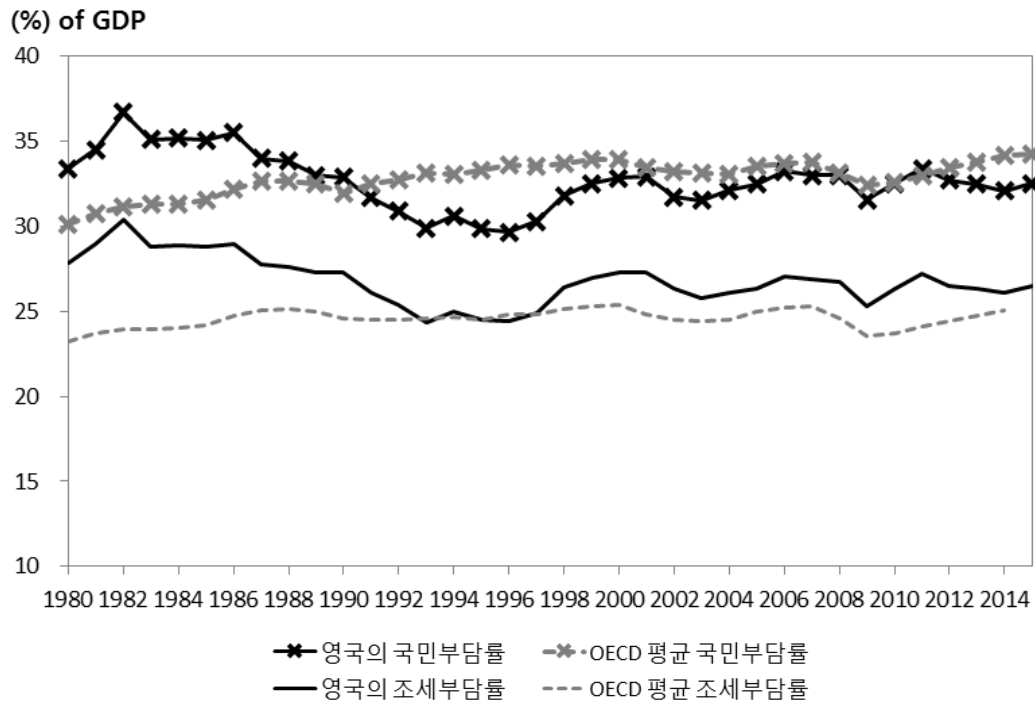
□ 국민부담률의 경우에는 영국이 OECD 평균을 전체적으로 하회하고 있음

○ 영국의 1990~2015년 평균 조세부담률은 26.9%이고 국민부담률은 31.9%이므로

그 차이인 GDP의 약 5.0%p가 사회보장부담금 부분임

○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지만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은 영국의 경우 사회보장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인 것을 의미함

[그림 III-2] 영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 시점별 주요 정책 변화

가. 주요 조세정책과 세수구조

- 영국에서 1980년대는 보수당이 집권했던 시대로 주요 조세정책은 개인소득세율이 인하되는 한편 각종 공제제도가 줄어들었고 자본에 유리한 조세제도가 형성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세율은 단일화되었다는 특징이 있음²⁰⁾
 - 개인소득세 기본세율은 33%에서 30%를 거쳐 25%로, 최고세율은 83%에서 60%를 거쳐 40%로 인하되었고 이로 인해 총정부세입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2.8%에서 25.6%로 인하되는 반면 개인소비세 비중은 증가하여 간접세 비율은 25.5%에서 34.8%로 커짐
 - 1982년에 자본소득세 산정 시 물가연동방식(indexation)이 도입되어 1985년에 확대되었으며 1988년에는 모든 자본이득의 미실현 이득에 대한 조세부과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고 법인소득세율은 52%에서 35%로, 중소기업 세율도 43%에서 25%로 인하됨
 - 부가가치세 세율은 종전 2단계(8%, 12%) 세율에서 15% 세율로 단일화함
- 1992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보수당은 개인소득세율을 20%로 감세하는 공약을 제시하여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²¹⁾ 기존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1997년 총선에서는 노동당이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함
 - 노동당의 집권기간인 1997~2001년 동안 공약대로 개인소득세 인상은 하지 않았으며 2001년 총선에서도 노동당은 개인소득세를 인상하지 않는 공약을 제시하여 또 다시 집권함²²⁾

20) 은민수(2012), p.135; Kato(2003), pp.8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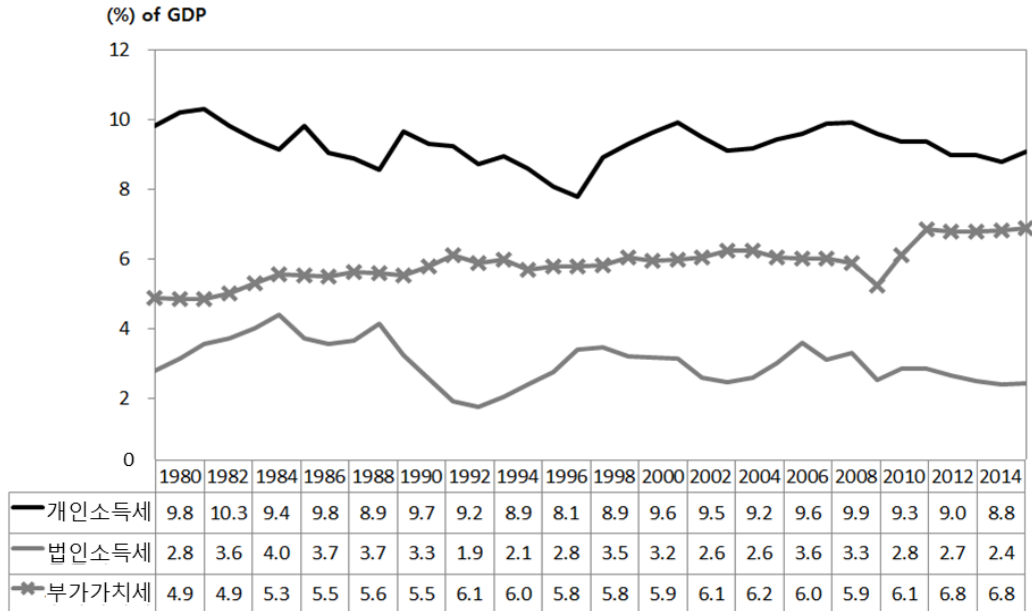
21) 1992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고소득자들의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집권에 실패함

- 노동당은 공약대로 개인소득세는 인상하지 않았으나 소비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인상하였음
 - 2005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복지에 대한 요구와 재정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여 또 다시 집권하게 됨
- [그림 III-3]을 보면, 영국은 개인소득세 세수의 GDP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순이며 시대별로 큰 변화는 없음
-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90~1997년 기간에 하락추세를 보이고 이후 1998~2001년 기간에는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2002~2003년 기간에는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하는 등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음
 -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90~1993년 기간에 3.3%에서 1.8%로 상당한 규모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1994~1998년 기간에는 다시 3.5%로 상승세를 나타낸 후 최근까지 큰 변화 없이 2.4~3.2% 범위를 유지함
 - 1992년 당시 영국이 유럽환율메커니즘(ERM)을 탈퇴하는 사건이 있었음²³⁾
 - 부가가치세의 경우, 1980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1980년 4.9%에서 2014년에는 6.8%까지 증가하였음

22) 은민수(2012), p.135; Johnson, P., Frances L., and John G. W.(2005), p.396

23) 1992년 9월 16일 조지소로스의 퀴텀펀드 및 다른 헤지펀드가 영국 파운드화를 투매해 영국정부가 유럽환율메커니즘(ERM)을 탈퇴함(일명, '검은 수요일(Black Wednesday)'이라 함). 영국은 1990년 10월 8일에 ERM에 가입하였고 당시 파운드화는 협약에 의해 독일 마르크화의 $\pm 6\%$ 수준의 변동 폭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음.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통일비용으로 마르크화를 대폭 풀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초고금리 정책을 취함으로써 마르크화가 고평가됨. 1992년 9월 15일 독일연방은행 총재의 마르크화 고평가 발언을 기점으로 조지소로스가 영국 파운드화를 투매하기 시작하자 다른 헤지펀드들도 투매에 나섰고 잉글랜드은행은 환율방어를 위해 투매한 파운드화를 사들였지만 환율하락이 지속되자 환율방어를 포기하고 1992년 9월 16일자로 ERM을 탈퇴함

[그림 III-3] 영국의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그림 III-4]를 보면, 영국은 총세수 대비 총소비세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개인 소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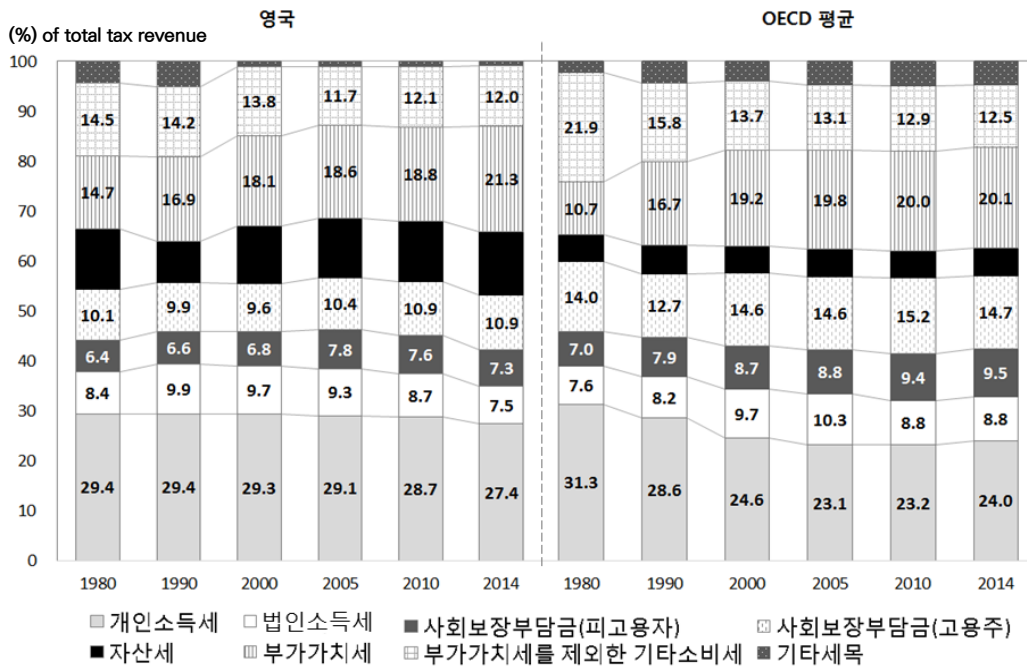
- 시기별로 볼 때 큰 변화는 없지만, 1980년에 총소비세 비중이 29.2%에서 2014년 33.3%로 증가하여 세수의 소비세 의존도가 더 커졌음
 - 총소비세 비중이 증가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14.7%에서 21.3%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제외한 개별소비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음

□ [그림 III-4]를 통해 영국의 세수구조를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영국은 OECD 평균과 상당히 유사한 세수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OECD에 비해 영국의 조세구조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재산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사회보장부담금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것임

- 개인소득세 비중의 경우 1980년대에는 OECD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변화는 영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OECD 평균에서 개인소득세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임

[그림 III-4] 영국의 세목별 세수비중: OECD 평균과의 비교



주: 기타세목에는 급여세(payroll tax)와 기타세금이 포함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나. 개인소득세

- 영국의 세법은 영구세(permanent tax)와 연간세(annual tax)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소득세는 연간세이며 경제여건 등에 따라 세율과 구간 및 감면한도 등이 매년 바뀜²⁴⁾

24) 박정수(2009), p.42

- 연간세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Finance Act를 통해 정해짐²⁵⁾
 - 현재 개인소득세율은 20%/40%/45%의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세율구간의 과세 표준 금액은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변동함²⁶⁾
- 금융소득(savings income)에 대해서는 2017-18 과세연도에 5,000파운드까지 0%의 세율이 적용됨
- 금융소득 외의 소득이 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0% 세율은 적용하지 않음
 - 금융소득이란 배당소득과 저축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임
- 영국의 과세체계는 사회보장제도가 세제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²⁷⁾
- 현재의 개인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를 기초로 하는 과세체계이고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분리 과세함
 - 영국의 개인소득세제의 특징이었던 분류소득(Schedule)시스템이 2005년 4월 6일 이후 폐지되었음
 - 분류소득시스템은 특정 소득에만 과세하고 소득의 종류마다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함으로써 납세자 소득의 합계를 알 수 없는 구조였음
- [그림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80년부터 1997년까지 하락하다가 1998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함
- 영국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80년대부터 1997년까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동 시기 영국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세율 인하를 단행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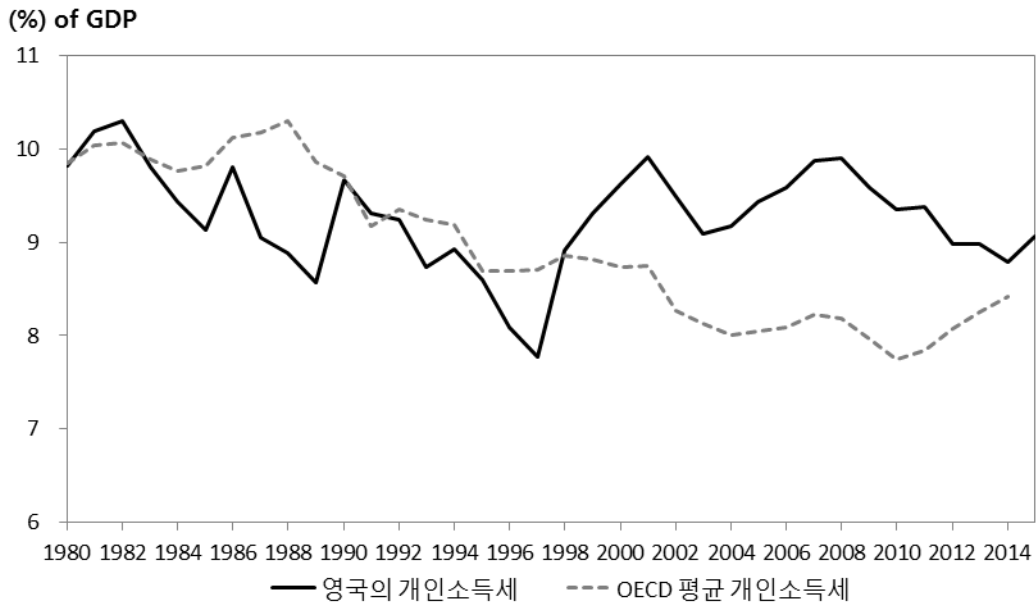
25) 법인소득세도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연간세이고 간접세는 대부분 영구세이며 영구세는 세율이 매년 바뀌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6) 영국의 현행 세제는 IBFD의 Country Survey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현행 세율은 Finance Act 2015에 의해 2020년 5월까지 적용됨

27) 井上徹二(2010), pp.19~20

- 1998년 이후로 영국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을 상당히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영국은 개인소득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라 할 수 있음

[그림 III-5] 영국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개인소득세제의 주요 개정과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국의 개인소득세율은 1970년대 후반부터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고 세율구조는 2단계 또는 3단계의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유지함
- 1979년 보수당인 대처정권이 들어서면서 개인소득세의 단일세율화라는 보수주의적인 세제개혁이 행해졌는데, 개혁의 목표는 누진세율 완화에 의한 근로의욕 촉진에 있었음
 - <표 III-1>은 1979년 이후 세율 변동을 나타내는데, 개인소득세율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음

- 세율은 1980년대 보수당 집권 기간 중²⁸⁾ 개인소득세 기본세율이 33%에서 30%로 인하되었다가 1988년에 25%로 인하되었고 최고세율은 83%에서 60%를 거쳐 40%로 인하여 1988년부터는 25%와 40%의 2단계 구조가 되었음
- [그림 III-5]를 보면, 1980년대 초 영국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세율의 지속적인 인하로 1980년대 중반부터는 OECD 평균보다 낮아짐

〈표 III-1〉 영국의 개인소득세 연혁

(단위: %)

적용연도	세율구조	개정내용
1981	30/40/45/50/55/60	6단계 세율구조
1986	29/40/45/50/55/60	세율 인하, 6단계 세율구조
1987	27/40/45/50/55/60	세율 인하, 6단계 세율구조
1988	25%/40%	세율인하 및 2단계 세율구조
1995	24%/40%	기본세율 인하(25%→24%) 이자소득 원천세율 인하(25%→20%) 과세소득기준과 인적공제에 3.9%의 indexation ¹⁾ 실시(1996년도 적용)
1996	23%/40%	기본세율 인하(24%→23%) 2.1%의 indexation 실시(1997년 적용)
1998	상동	3.61%의 indexation 실시
1999	10%/23%/40%	10% 경감세율 도입, 3단계 세율구조
2000	10%/22%/40%	기본세율 인하(23%→22%) * 자본이득세 세율구조 조정 (20%/40%→10%/20%/40%)
2008	20%/40%	경감세율 폐지, 2단계 세율구조
2010.4	20%/40%/50%	추가세율구간 신설, 3단계 세율구조
2011.4	20%/45%/50%	높은세율 인상(40%→45%)
2013.4	20%/40%/45%	세율 인하

주: 1) Indexation이란 물가상승으로 납세자의 실질구매력은 증가되지 않았음에도 과세구간이 높아짐에 따라 실효세율과 한계세율이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임

자료: 1981~1999세율은 OECD Tax Database(<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pit>), 2000~2013년 세율은 橋本恭之(2002), p.39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매년도 『조세동향』에 기초하여 필자 작성

28) 1979년 개인소득세 기본세율은 33%, 최고세율은 83%였음

- 1995년과 1996년에 기본세율이 각각 24%, 23%로 추가적으로 인하되었고²⁹⁾ 1999년도에는 10%의 경감세율이 도입되어 기존의 2단계 세율구조에서 10%, 23%, 40%의 3단계 세율구조로 변경되었음
 -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80년대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짐
 -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세율 인상이 없던 시기에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시기에 세율 외적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세수 증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주목할 만한 개정사항은 파악되지 않음
 - 참고로, 영국은 1993~2007년 기간에 금융서비스 산업이 호황기를 누려 평균 3%대의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2000년도에는 기본세율 23%를 22%로 인하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2010년, 2011년에 걸쳐 세율을 인상함
 - 2000년 이후에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률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이후는 수차례의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감소추세임

- <표 III-2>는 세율 외에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비과세 공제제도의 개정 내용임
 - 1997년³⁰⁾에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하여 연간 5,000파운드까지의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을 비과세하였고 1999년에는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자본이득세 세율 구간을 조정하였음³¹⁾
 - 또 개인소득세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아동부양세액공제(Children's Tax Credit, 2000년),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1999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보장

29) 橋本恭之(2002), p.139; 은민수(2012), p.135

30) 당시 집권당인 블레이어 정권은 노동당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당 정권하에서 진행되어온 세계개혁의 방향성을 크게 바꾸지 않고 진행하였음

31) 橋本恭之(2002), p.137

급부제도와 개인소득세제를 통합하였다는 점임

-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세부담의 증가나 감소 문제보다도 사회보장시스템의 일부를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음³²⁾

〈표 III-2〉 영국의 개인소득세 비과세 및 공제제도 연혁

	개정내용
1984	생명보험료공제 폐지
1997	연간 5,000파운드까지 저축에 관한 이자소득 비과세
1999	전 세대 416파운드 아동부양세액공제(children's tax credit) 도입(2000년부터 실시) 근로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도입(1999년 10월부터 실시)
2000	부녀자세액공제 폐지 인적공제 인상: 4,355파운드 → 4,385파운드 64~74세의 노령자공제: 5,270파운드 → 5,790파운드 75세 이상의 노령자공제: 5,989파운드 → 6,050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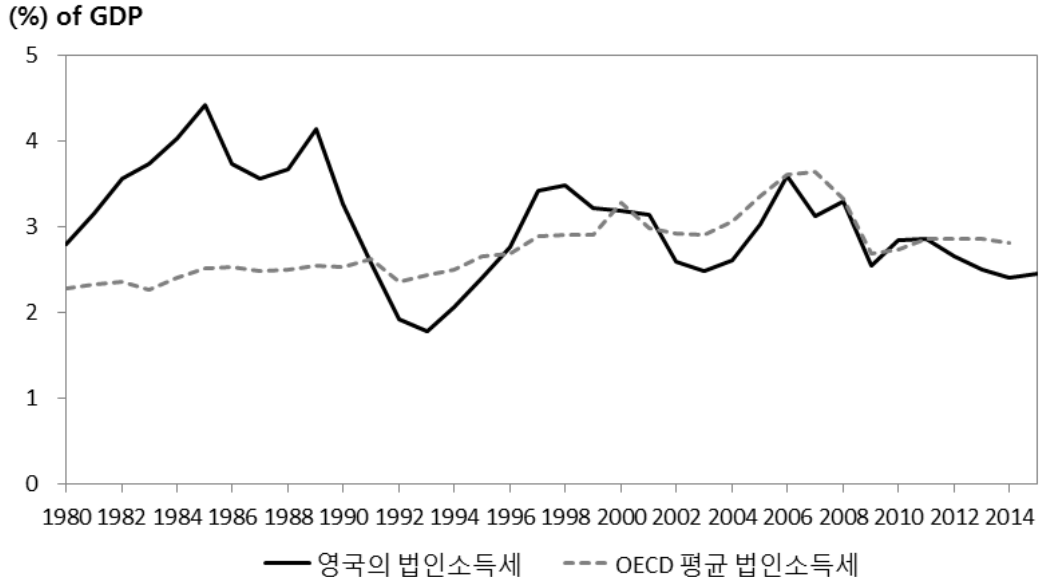
자료: 橋本恭之(2002), p.39

다. 법인소득세

- [그림 III-6]을 보면, 영국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법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목이고 1980년대 이후 국제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심화 및 디지털 경제의 진전 등으로 기업을 둘러싼 세제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임
 - 1992년을 전후로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1992년 영국이 유럽환율메커니즘(ERM)을 탈퇴하는 사건을 계기로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 2단계 세율구조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세율이 인하되었던 2008~2014년 기간에는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이 특히 감소추세를 보임

32) 우리나라는 2000년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였음

[그림 III-6] 영국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표 III-3>을 통해 법인소득세율의 주요 개정과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80년대 중반까지 법인소득세율은 52%에 달했으나 공장과 기계설비에 대한 초기 연도 공제를 폐지하면서 세율을 35%로 인하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세율을 인하하였음³³⁾
 - 1988년부터 추가적으로 30%, 19%로 인하하였음
 - 1980년대에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였지만 [그림 III-6]을 보면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80년대 초에 상승했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하락하는 등 세율변

33) 박정수(2009), p.116에 따르면 1965년 법인소득세 도입 당시 세율은 40%였고 1969년 예산안에서 45%로 인상되었고 1970년 예산안에서는 세율이 다시 42.5%, 1971년 예산안에서는 40%로 인하되었음. 1973년에 ACT(Advance Corporation Tax)가 도입됨에 따라, 기본세율(main rate) 52%, 소기업 세율(smaller companies' rate) 42%로 세율이 개정되었고 ACT제도의 도입으로 배당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979년에는 소기업 세율은 40%로, 1982년에는 또 38%로 인하하였음

화와는 무관한 추이를 보임

- 1999년 예산안에서는 1만파운드 이하의 과세소득에 대해 10%의 초기세율 구간 (starting rate)을 별도로 설정하여 2000년 4월부터 적용하였고 2002년 예산안에서는 10%의 초기세율을 0%로 인하하다가 2007년에는 폐지하였고 2008년에는 기본세율과 소기업세율도 각각 28%, 21%로 인하하였음
- 2011~2014년 기간에는 소기업 세율은 20%를 유지한 채 기본세율을 26%에서 21% 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였음
- 1999년에서 2007년 기간은 기본세율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였고 2008년부터 2014년 기간은 법인소득세율이 28%에서 21%로 점진적으로 하락했고 법인소득 조세부담률도 하락추세임
- 시기별로 세율 인하와 조세부담률이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세율 변화가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3〉 영국의 법인소득세 연혁

(단위: %)

적용연도	기본세율	소기업세율	초기세율	적용연도	기본세율	소기업세율	초기세율
1981	52	40	-	1997~1998	31	21	-
1982	52	38	-	1999	30	20	-
1983	50	30	-	2000~2001	30	20	10
1984	45	30	-	2002~2006	30	19	0
1985	40	30	-	2007	30	20	-
1986	35	29	-	2008~2010	28	21	-
1987	35	27	-	2011	26	20	-
1988~1989	35	25	-	2012	24	20	-
1990	34	25	-	2013	23	20	-
1991~1995	33	25	-	2014	21	20	-
1996	33	24	-	2015~2016	20	-	-

주: 회사의 이익(profit)이 1만파운드 이하면 초기세율(starting rate) 적용, 1만~5만파운드 구간이면 소기업세율 적용하고 한계공제(marginal relief), 5만~30만파운드 구간이면 소기업세율, 30만~150만 파운드 구간이면 기본세율 적용하고 한계공제, 150만파운드 이상이면 기본세율을 적용함
 자료: 1981~1999년의 세율은 OECD Tax Database([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C-Corporate Capital](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C-Corporate%20Capital)), 2000~2016년의 세율은 박정수(2009), p.117과 HMRC (2010)을 기초로 작성

- 비교적 최근인 2010년 영국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인소득세 개혁안을 제시하였고 주요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음³⁴⁾
 - 과세표준을 유지하면선 세율은 낮춤: 공제 및 감면(reliefs and allowance)을 줄이면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최고의 정책임
 - 조세체계의 안정성 유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안정적인 조세체계는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불필요한 세제 개정을 자제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함
 - 비즈니스 관행에 맞는 세제: 세계화 및 기술 개발로 비즈니스 관행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조세체계도 이에 맞추어 나아가야 함
 - 복잡성 회피: 단순성은 훌륭한 조세정책의 한 요소임에도 기업 운영 방식의 복잡성과 인구의 다양성으로 법인소득세 시스템의 복잡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정부는 가능한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탈피하고자 함
 - 납세자를 위한 형평성 유지: 세금의 결정은 모든 법인소득세 납세자에게 공정해야 하며, 시장 실패가 있는 경우와 같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함

- 법인소득세 개혁안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친 법인소득세 개정일정을 제시하였고 제시된 로드맵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정이 이루어짐³⁵⁾
 - 2011년에는 세율 인하, 자본공제 축소 및 연구개발비 공제 확대가 이루어짐
 - 법인소득세 기본세율이 28%에서 26%로 인하되었고 소기업 세율 역시 21%에서 20%로 인하되었음
 - 자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단기내용연수 자산의 요건을 4년에서 8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자본공제 대상을 축소하였고 자본공제의 공제율은 20%에서 18%로 축소하였음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소득공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중소기업의 특정연구개발비의 공제비율은 100%에서 125%로 확대하였음
 - 2012년에는 법인소득세 기본세율이 26%에서 24%로, 2013년에는 23%, 2014년에

34) HMRC(2010), p.11

35) HMRC(2010), p.17

는 21%로 인하됨

- 2013년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였고, 공제혜택의 범위는 2013년 지식재산권을 통한 수익 중 60%에서 5년에 걸쳐 2017년에 100%로 확대하며, 지식재산권 수익에 대한 보통 법인소득세보다 낮은 10%의 세율을 적용함³⁶⁾

- 영국 및 유럽특허청에서 획득한 특허 및 관련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함

- 2010년의 법인소득세 개혁은 법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든 종합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법인소득세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세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는 2011~2014년 기간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라. 부가가치세

- 영국은 1973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고 한 번의 세율 인하와 세 번에 걸친 세율 인상이 있었음

- <표 III-4>를 보면 도입 당시 10%였던 표준세율을 1975년에 8%로 인하하였으나 1980년에 다시 15%로 인상하였고 1991년에는 17.5%로 인상하였으며 2011년부터 20%로 인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994년 이후 기간부터는 표준세율과 함께 8% 또는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음

- 1994년 4월 영세율 적용대상인 가정용연료 및 전력에 대해 8%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였고 이후 1995년 4월부터는 8%의 세율에서 17.5%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2009년에 표준세율을 17.5%에서 15%로 인하하였다가 2010년부터 다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한 것이었음

36) 유경진(2017), p.3

〈표 III-4〉 영국의 부가가치세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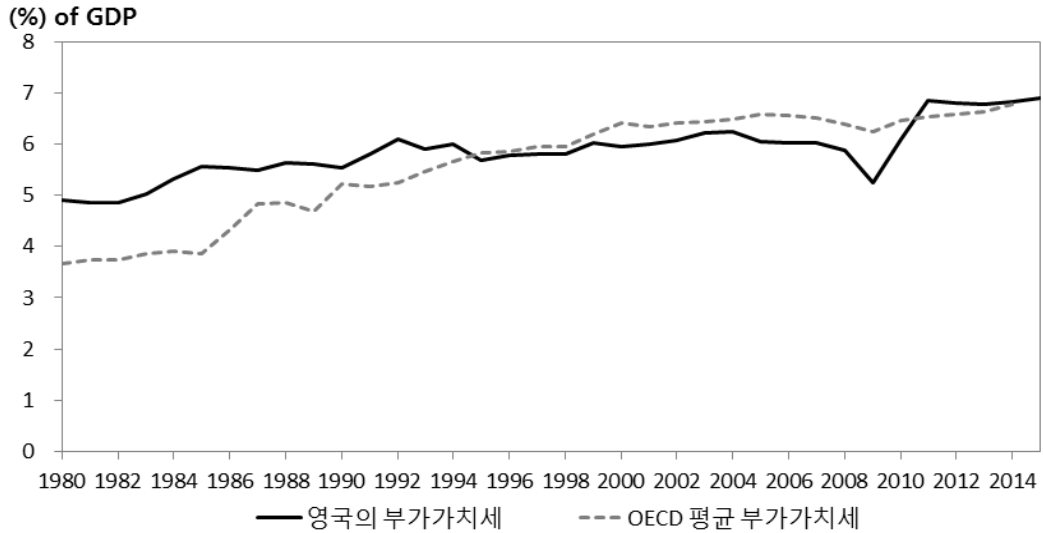
(단위: %)

적용연도	표준세율	경감세율	적용연도	표준세율	경감세율
1975-1979	8.0	-	2009-2010	15.0	5.0
1980-1993	15.0	-	2010-2011	17.5	
1994-1996	17.5	8.0	2011-현재	20.0	
1996-2009		5.0			

자료: OECD(2016), p.83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내부자료(Institute of Fiscal Studies, <https://www.ifs.org.uk/>)에 기초하여 작성

- [그림 III-7]에 나타난 소비 조세부담률은 세율이 8%에서 15%로 인상되었던 1980년대와 17.5%로 인상되었던 1991년과 20%로 인상된 2011년 직후에 증가폭이 두드러짐
- 영국의 소비 조세부담률은 1994년 이전까지는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1995년 이후 기간에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2011년 이후 기간에는 OECD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7] 영국의 소비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3. 소결

- 영국은 OECD 회원국의 대표적인 선진국 중 하나로, 1990년대 초반과 2008년의 금융 위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조세부담률 역시 1980년부터 최근까지 25%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을 유지하고 있음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이 모두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임
 - 세목별 세수구조도 소비세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 외에는 큰 변화 없음

-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개인소득 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여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함
 - 개인소득세율을 보면, 1981년 최고세율 60%에서 2008년 40%로 인하하기까지 세율이 꾸준히 인하되었으며, 조사대상 기간 중 특이할 만한 개정으로는 1999년 근로세액공제와 2000년 아동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조세정책에서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점임
 - 1990년대와 2000년 이후 기간에도 세율 인하는 계속되었으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2008년 이후 기간에는 세율은 인상되었으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감소추세를 보여 세율의 변화가 조세부담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소득세율 변화도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세율이 크게 인하되었다는 점임
 - 1980~90년대에는 법인소득세율을 52%에서 30%까지 인하하였지만 조세부담률은 1980년대 초에 상승했다가 1980년대 후반에는 하락하는 등 세율 변화와는 다른

추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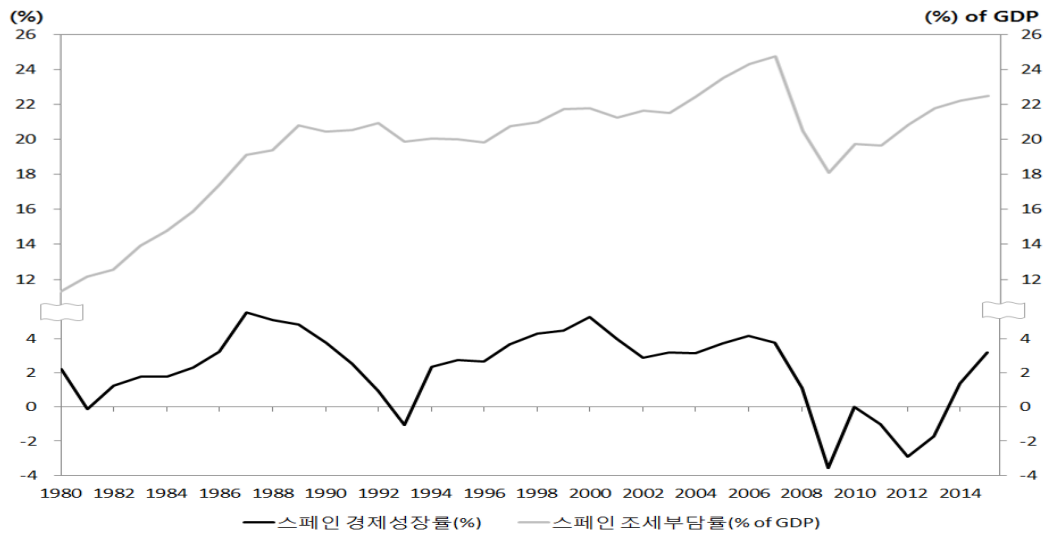
- 1992년 발생한 영국의 '통화위기(영국이 유럽환율메커니즘을 탈퇴한 사건)'가 1990년대 초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1999~2007년 기간은 기본세율에 변화가 없었지만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고 2008~2014년 기간은 세율이 매년 인하되었음에도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하락함
-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 번에 걸친 세율 인상이 있었고 세율 인상은 소비세 조세부담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율이 8%에서 15%로 인상되었던 1980년대 초반과 17.5%로 인상되었던 1991년과 20%로 인상된 2011년 직후에 소비 조세부담률의 증가 폭이 두드러짐
 - 소비 조세부담률은 1990년에 5.6%에서 1991~1992년에 5.8%, 6.1%로 증가하여 2개 연도에 걸쳐 상승하였고 2011년 개정에서는 개정 이전 연도인 2010년부터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2009년 5.3%, 2010년 6.1%, 2011년 6.9%)
 - 소비세의 경우 세율 인상을 예측하고 소비를 앞당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상 직전연도부터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 소비세 조세부담률은 1994년 이전까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OECD 평균이 점차 높아져 영국이 OECD 평균보다 낮아졌음
 - 이러한 변화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세율을 인상하는 추세로, OECD의 평균 소비 조세부담률이 3%대에서 6%대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IV. 스페인의 조세부담률 추이 및 조세정책 변화

1. 조세부담률 추이

- 스페인은 1975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증가하는 정부지출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수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동시에 경제성장률도 크게 증가하였음³⁷⁾
- [그림 IV-1]을 보면, 조세부담률은 1980년대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10%대에서 20%대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1970년대 말의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개혁과 1980년대의 부가가치세 도입 등 증세 기조의 조세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1981년 조세부담률은 11.3%에서 1989년 20.8%까지 상승하였음

[그림 IV-1] 스페인의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



자료: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OECD, Revenue Statistics

37) 권오성(2002) p.198에 기초하여 정리함

- 1990년대에는 1980년대의 증세정책으로도 재정지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2차례의 조세개혁이 1995년(법인소득세 개혁)과 1998년(개인소득세 개혁)에 있었고 이는 조세체계의 단순화, 조세중립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였음
 - [그림 IV-1]을 보면,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의 성장기를 거쳐 1986년을 정점으로 다시 급속히 하락하여 1990년대 초에 마이너스경쟁률을 기록하였으나 조세부담률은 하락하지 않고 20%대를 유지하였음
 -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은 1992~93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진행됨에 따라 세금공제를 줄이고 세율을 낮추고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³⁸⁾
 - 1980년대의 조세개혁이 증세에 목적이 있었던 것과 달리 1990년대의 세제개혁은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과세의 누진성 및 중립성 부족으로 인한 왜곡 문제를 교정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에 20%던 조세부담률이 2007년 25%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8년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함께 조세부담률도 다시 10% 후반대로 하락하였음
 -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내놓게 되는데,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건전화 문제를 유발하면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시작되었고 스페인도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게 됨³⁹⁾
 - 경제위기의 여파로 스페인은 과도한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비율을 기록하였는데, 2009년 스페인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11.4%, 국가부채는 GDP 대비 54.3%였음⁴⁰⁾
 - 스페인은 2012년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지만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재정 악화를 회복하기 위한 조세정책 등으로 조세부담률 역시 증가추세로 돌아섰음⁴¹⁾

38) Martinez-Vazquez(2007), p.535

39) 홍승현(2012), p.21

40) 박형수·이은경(2010),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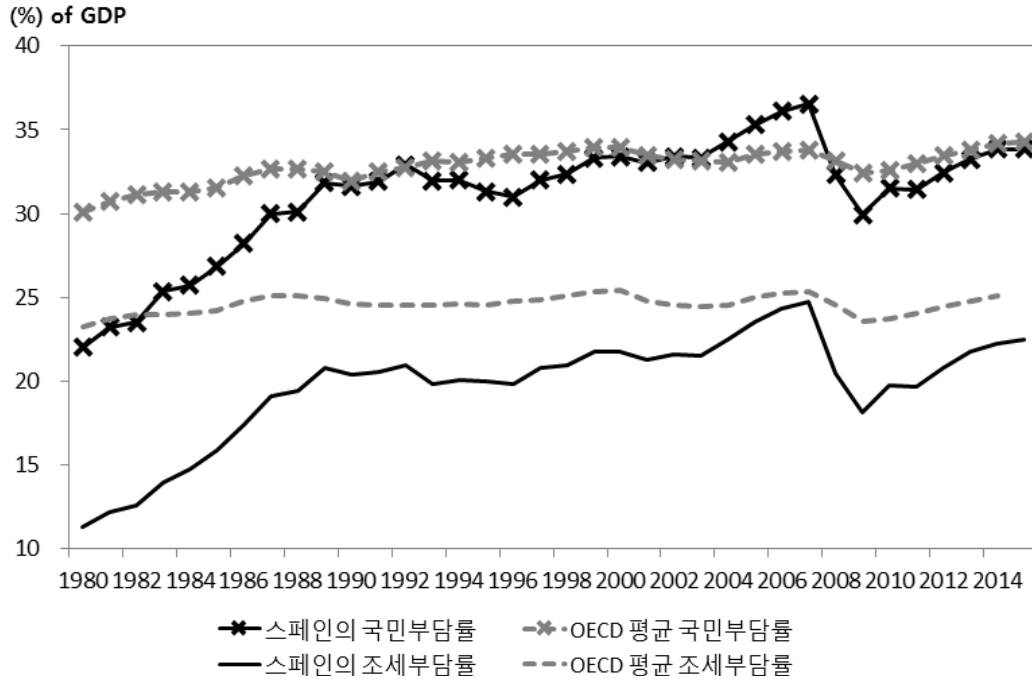
- 2012년 당시 스페인의 경제상황은 2011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한 후 2012년 1분기 역시 전기 대비 -0.3%를 나타냈고 이러한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실업률은 20%를 넘는 상황이었음⁴²⁾
- 스페인은 부동산 침체에 따른 금융권 부실화의 문제도 심각했는데,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의 약 60%가 악성대출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2012년 당시 부동산 시장은 고점 대비 27%가량 하락하였음
 - 가계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약 79%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추가적인 경기악화가 발생할 경우 가계소비 위축과 부실 금융권에 대한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음⁴³⁾
- [그림 IV-2]는 스페인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를 나타냄
- 1980년대는 증세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OECD 평균의 추세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1980년의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3%수준인데 비해 스페인은 11%수준에 불과하여 약 12%p의 격차를 보이거나 1990년에는 OECD 평균이 24%이고 스페인은 20%수준으로 약 4%p 정도로 OECD 평균에 가까워졌고 2006년에는 거의 OECD 평균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음
 - 2014년 현재 조세부담률은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격차가 큰 편인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전체 세입 중 사회보장부담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 것을 의미함

41) 소위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을 칭함)라 불리는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심각했는데, 2010년 5월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후 11월에는 아일랜드, 2011년 4월에는 포르투갈, 2012년 6월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이어 6월에는 스페인도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름

42) 홍승현(2012), pp.27~29

43) 스페인의 구제금융은 정부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스페인은행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은행이 지원을 받는 것이므로 재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동성의 문제로 한정되어 재정위기를 겪은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림 IV-2] 스페인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 시점별 주요 정책 변화

가. 주요 조세정책과 세수구조

□ 스페인은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및 경제에 있어서 큰 사회적 변혁을 이루었고 이 중 과세체계는 1977년부터 광범위한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개혁과정이 스페인 경제 기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임⁴⁴⁾

○ 민주화를 이루기까지의 기간에 복지프로그램이나 부족한 인프라를 위하여 공공예산

44) Martinez-Vazquez(2007), p.532

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있었고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였음
 -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스페인 국민의 납세의식 역시 같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세제도가 진화하는 성과를 거둠

- 1936년부터 약 40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프란시스코 프랑코(Francisco Franco)가 1975년 사망한 이후 새로 출범한 스페인 정부는 1977년 긴급 조세개혁 조치를 통과시켰음
 - 1975년 총세수는 GDP 대비 20% 미만(당시 OECD 평균은 31%)이었으나 2002년 35%로 OECD 평균에 수렴하였음
- 세금개혁으로 1982년 사회당(PSOE)은 선거에서 승리했고 1986년 유럽경제연합 가입을 준비하게 되었고 1996년 중도우파인 국민당(PP)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 유로화 도입을 목적으로 성장 정책을 추진

□ 스페인은 여러 가지 조세개혁을 통해 간접세 의존도는 낮아지고 직접세 의존도는 높아짐⁴⁵⁾

- 1970년대 스페인의 세수구조는 사회보장기여금과 간접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었음
 - 1975년 사회보장기여금이 일반정부 세입의 43%,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금이 17%, 기타 세금이 9%인 반면 소득에 대한 직접세는 17%에 불과했음
-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직접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1986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징수액이 증가하면서 세금체계가 조정되는 시기를 거침
- 2000년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일반정부수입의 28%를 차지하였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은 29%를 차지함
 - 이 시기에는 공정한 세금부담과 경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기초로 다양한 우대 조치를 제거하고 조세행정시스템의 개선으로 불평등을 해소시킴

45) Martinez-Vazquez(2007), p.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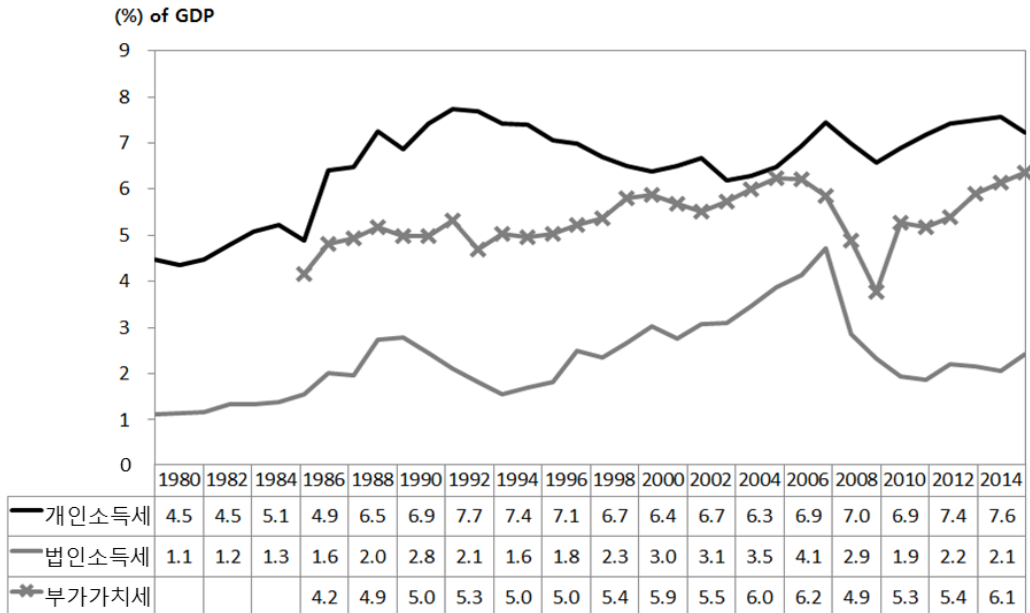
-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까지 자본이득과세는 여전히 국제경쟁력에 뒤쳐져 있었고 실업(특히 청소년 실업) 증가 문제와 연금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 문제, 공기업의 재무상태 악화 문제 등 여러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음

- 납세의식 측면에서 보면 1970년대 스페인에서는 탈세가 만연했고 정부는 이를 막을 정치적 의지도 없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조세제도를 근대화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요인이었음⁴⁶⁾
- 그러나 1981년부터 1995년까지의 14년 동안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질이 꾸준히 향상되었는데, 제도적인 개선 특히 전반적인 공정성의 증가와 조세행정의 개혁이 이루어졌음
 - 이 시기에는 민주주의의 회복, 재정분권화 진행, 복지국가의 창설 등으로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갖는 신뢰수준이 높아졌음

- [그림 IV-3]을 보면, 스페인은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소비 조세부담률,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의 순임
- 2000년대 중반까지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부담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2008년을 전후하여 급락하였고 개인소득 조세부담률과 소비 조세부담률은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법인소득 부담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즉, 개인소득세와 소비세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46) Martinez-Vazquez(2007), p.543

[그림 IV-3] 스페인의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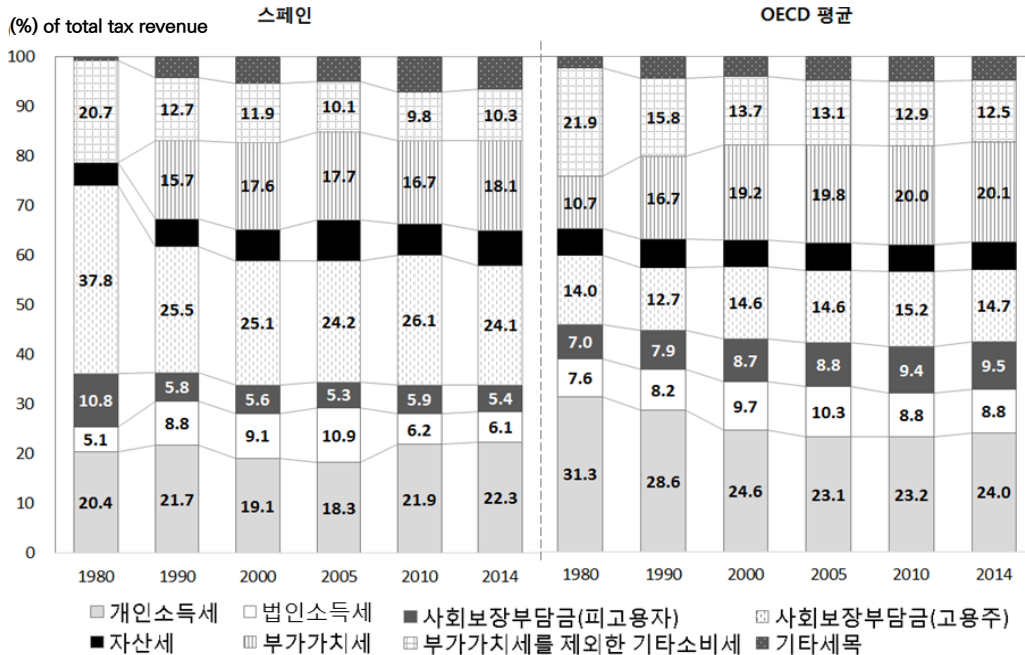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그림 IV-4]에서 세목별 세수구조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부담금인데, 1980년에 사회보장부담금이 총세수의 약 48.6%였고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4년 현재에도 29.5%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비중이 각각 1980년에 20.4%, 5.1%에서 2014년에는 22.3%, 6.1%로 큰 변화가 없었음
 - 총소비세의 비중은 1980년 20.7%에서 2014년 28.4%로 증가하여 스페인의 소비세 의존도는 상승하였음
 - 총소비세 내에서 개별소비세 비중은 감소하고 부가가치세 비중은 증가하였음
- 스페인의 세목별 세수구조를 OECD 평균과 비교하면, 1980년에 사회보장부담금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컸고 개인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았으나 2014년에는 두 세목의 비중이 OECD 평균에 상당히 수렴하고 있음

- 사회보장부담금의 경우 1980년 스페인이 48.6%이고 OECD 평균은 21.0%로 그 차이가 상당히 컸지만 2014년에는 스페인이 29.5%까지 낮아졌고 OECD 평균은 24.2%로 증가하여 스페인과 OECD 평균의 격차가 좁아졌음
- 개인소득세의 경우, 1980년 스페인의 비중이 20.4%이고 OECD 평균은 31.3%로 스페인이 상당히 낮은 비중을 보이거나 2014년에는 스페인이 22.3%, OECD 평균이 24.0%로 거의 유사한 수준임
 - 스페인의 소득세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OECD 평균이 감소하여 유사한 수준이 되었음
- 법인소득세의 경우 스페인은 전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총소비세의 경우, 1980년에 스페인은 20.7%로 32.6%인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28.4%로 증가하여 OECD 평균에 근접함

[그림 IV-4] 스페인의 세목별 세수비중: OECD 평균과의 비교



주: 기타세목에는 급여세(payload tax)와 기타세금이 포함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나. 개인소득세

- 1980년대의 개인소득세 분야에서의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시기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증세정책 기초였음
- <표 IV-1>을 통해 1980년대의 세율 변화를 보면, 1981~1983년 기간에 최저세율 14.8%, 최고세율 40.7%이었고 1984~1987년 기간은 최저세율 16.14%, 최고세율 45.84%, 1988~1996년 기간은 최저세율 25%, 최고세율 56%로 두 차례에 걸쳐 세율이 인상되었음
- 이러한 정책 기초를 반영하듯 [그림 IV-5]에서도 1980년대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4%대에서 7%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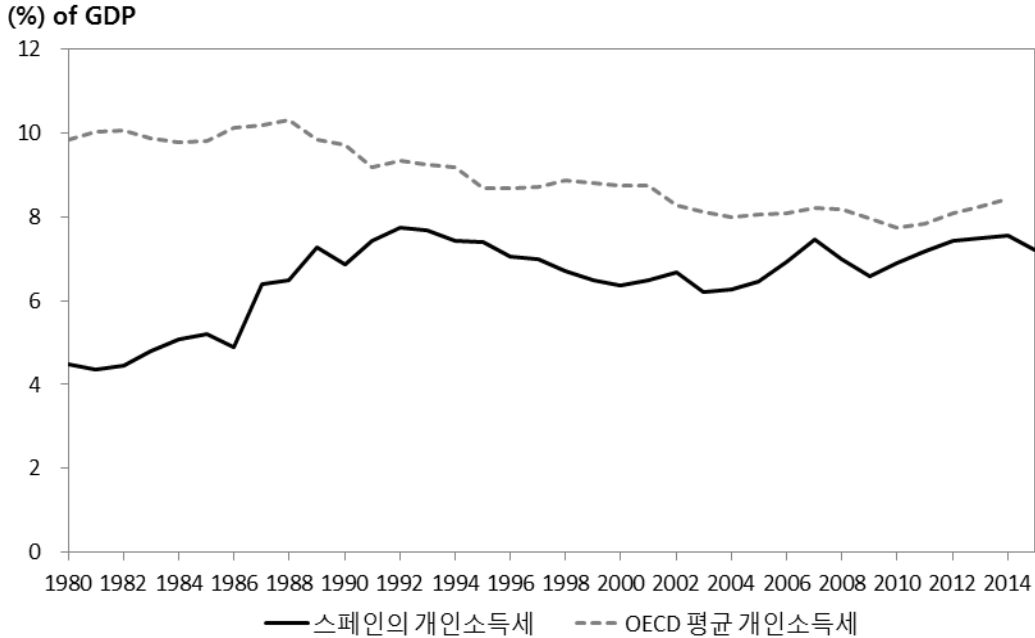
〈표 IV-1〉 스페인의 개인소득세 연혁

(단위: 개, %)

적용연도	세율구간의 수	최저세율	최고세율
1981~1983	17	14.8	40.65
1984~1987	17	16.14	45.84
1988~1991	16	25	56
1992~1996	17	25	56
1997	10	17	47.6
1998	8	17	47.6
1999~2002	6	15	39.6
2003~2006	5	9.06	29.16
2007~2010	4	15.66	27.13
2011	6	12	23.5
2012~2014	7	12.75	30.5
2015~2016	5	9.5	22.5

자료: OECD, Tax Database

[그림 IV-5] 스페인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1999년에는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노동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을 인하하였고 다양한 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제를 단순화하고 수평적 형평성도 높이는 개정이 있었음⁴⁷⁾
 - 금융소득에 대한 감면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노동소득과의 조세중립성을 제고하고 금융자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던 것을 20%로 조정하여 조세중립성을 높임
 - 납세보고 의무 기준 금액을 높임으로써 세무행정비용을 감소시킴
 - [그림 IV-5]를 보면, 1990년대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국가재정도 악화되었던

47) 권오성(2002), p.203을 기초로 작성함

시기인데, 스페인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증세정책을 제시하였고 이는 2010년 7월부터 실시됨⁴⁸⁾

- 자본이득세의 경우, 종전 자본이득에 일괄적으로 18%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개정하여 6천유로까지는 19%, 6천유로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1%를 적용하는 것임
-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400유로 추가환급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폐지함
- 2009년의 조세개혁으로 2010~11년에 국세로 110억유로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며 이는 근로자 1인당 연평균 500유로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2012년 세제개정에서는 개인소득에 대한 주세(state tax)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소득세율이 인상되었고 일부 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도 인상됨⁴⁹⁾

- 주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은 종전 45%에서 52%로, 최저세율은 24%에서 24.27%로 인상됨
- 원천징수세율의 경우, 배당 및 이자소득, 자산 및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 복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19%에서 21%로, 이사성과급(director's fee)은 35%에서 42%로 인상됨

□ 2009년과 2012년의 세제개정에서 개인소득세 분야는 대체로 증세 기조의 개정이 있었고 이러한 조세정책에 의해 [그림 IV-5]를 보면,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2009년을 기점으로 재정위기가 있던 2011~2012년 기간에도 상승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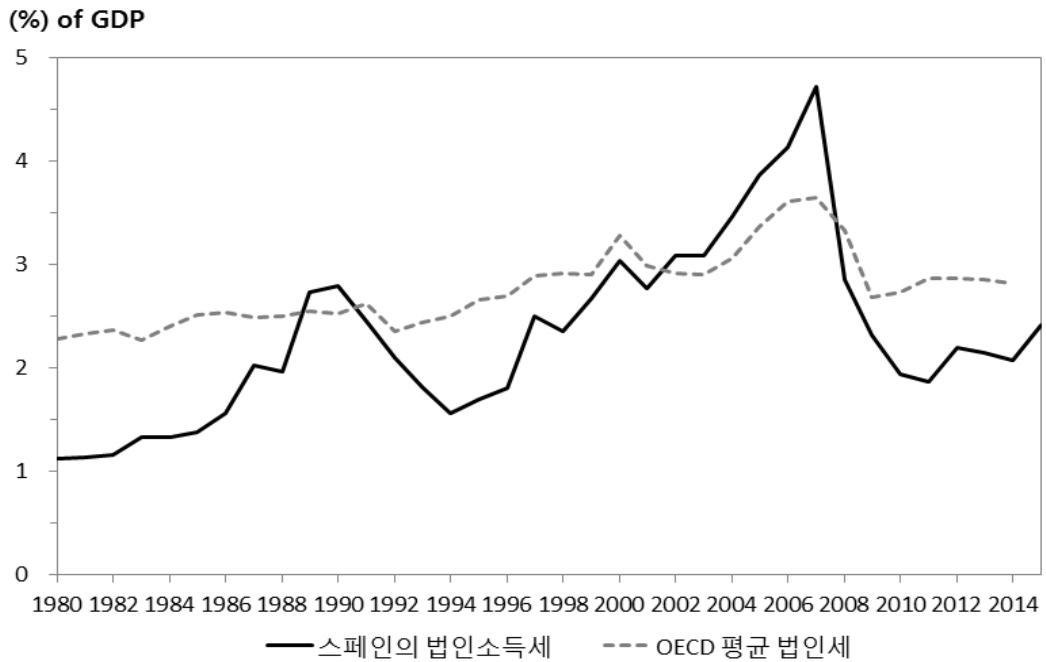
48) KOTRA, 「스페인 조세제도 개혁안 발표」,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92583>, 검색일자: 2017. 8. 10

4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12(11)

다. 법인소득세

- [그림 IV-6]을 보면,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80년 1%수준에 불과하여 법인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낮은 국가였음
- 1980년대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1990년에 약 2.8%까지 증가하였고 1990년대 초부터 다시 급격히 하락하여 1994년에 1.6%까지 감소함
 - 이는 1980년대의 증세정책이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990년대 초에는 세수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7년에 약 4.7%까지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2014년 현재 2%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IV-6] 스페인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1995년에 있었던 법인소득세 개혁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음⁵⁰⁾
-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까지 3종류의 소득(영업수익, 순자본이익, 순자산증가)에 차별세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기업의 주식투자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였으며 해외직접투자와 자본이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방안을 마련하였고 기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 [그림 IV-6]을 보면, 1995년 이후 상당기간 동안 세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법인소득세 개혁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세수가 증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개정 중 영업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확대는 기업의 실효세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음
- 최근의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연혁은 <표 IV-2>와 같음
 - 2011년부터 이월공제기간을 18년까지 확대하면서 이월공제금액의 한도가 설정되었음
 - 매출액 기준에 따라 2천만유로에서 6천만유로까지는 결손금의 50%, 6천만유로 초과 시에는 결손금의 25%까지 공제 가능함

<표 IV-2> 스페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연혁

적용기간	이월공제	제한규정
2003~2010	15년	-
2011~2013	18년	매출액 2천만유로 이상 6천만유로 미만 법인: 이월결손금의 75%까지 매출액 6천만유로 이상 법인: 이월결손금의 50%까지
2012~2014	18년	매출액 2천만유로 이상 6천만유로 미만 법인: 이월결손금의 50%까지 매출액 6천만유로 이상 법인: 이월결손금의 25%까지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12(08)

50) 권오성(2002), p.202

- 1995년부터 10년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락추세로 반전하였고 2007년 4.5%대에서 2011년에는 1.5%대로 급락하였고 이후 2014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국가재정 상황이 심각했던 2009년의 세제개정에서 법인소득세 분야에서의 변화는 종업원 수가 25명 이하이면서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율을 인하하는 조건부 조세지원을 부여한 것임⁵¹⁾
 - 이는 2009년의 개정이 전반적으로 세부담 증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유일하게 세금을 인하하는 정책이었음
 - <표 IV-3>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8년과 2010년의 두 차례에 걸친 세율 인하도 법인소득세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 스페인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90년대 초와 2000년대에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OECD 평균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OECD 평균에 비교해 볼 때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법인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은 국가로 나타남

<표 IV-3> 스페인의 법인소득세 연혁

개정연도	세율구조	개정내용
1981~1983	대법인: 33% ¹⁾	-
1984~1996	대법인: 35% ¹⁾	법인소득세율 인상(33% → 35%)
1997~2006	중소법인: 30%/대법인: 35%	-
2007	중소법인: 25%/대법인: 32.5%	법인소득세율 인하(35% → 32.5%)
2008	중소법인: 25%/대법인: 30%	법인소득세율 인하(32.5% → 30%)
2010	중소법인: 20%/대법인: 30%	중소법인소득세율 인하(25% → 20%)
2015	중소법인: 20%/대법인: 28%	법인소득세율 인하(30% → 28%)

주: 1) 중소기업인 세율은 확인할 수 없음

자료: 1981~2007년 세율은 OECD Tax Database([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C-Corporate Capital](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C-Corporate-Capital)), 2008년 이후 세율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08(01); 09(20); 14(07)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51) KOTRA, 「스페인 조세제도 개혁안 발표」,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92583>, 검색일자: 2017. 8. 10

라. 부가가치세

- 스페인은 1986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고 이후 조세수입에서 소비세의 의존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조세수입 구조가 조정되었음
 -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인 1980년 총소비 조세부담률은 4.6%에서 1990년 9.0%로 증가하였음
 - 1980년은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이므로 소비세 총액으로 비교함
-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친 세율 인상이 있었음
 -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볼 때, 1990년 12%에서 1995년 16%, 2010년 18%, 2012년 21%로 인상되었음
 - 2014년 현재 표준세율 21%에 경감세율 10%, 초경감세율 4%를 적용함
 - 10% 경감세율 대상은 인간 또는 동물의 소비를 위한 식음료, 동물용 의약품,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의료장비, 주거용 주택, 여객 수송,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 쓰레기수거,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임
 - 4%의 초경감세율 대상은 기본적인 식재료, 도서 및 잡지, 인간을 위한 의약품, 장애인용 특정 재화와 용역, 2011년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 공급임

〈표 IV-4〉 스페인의 부가가치세 연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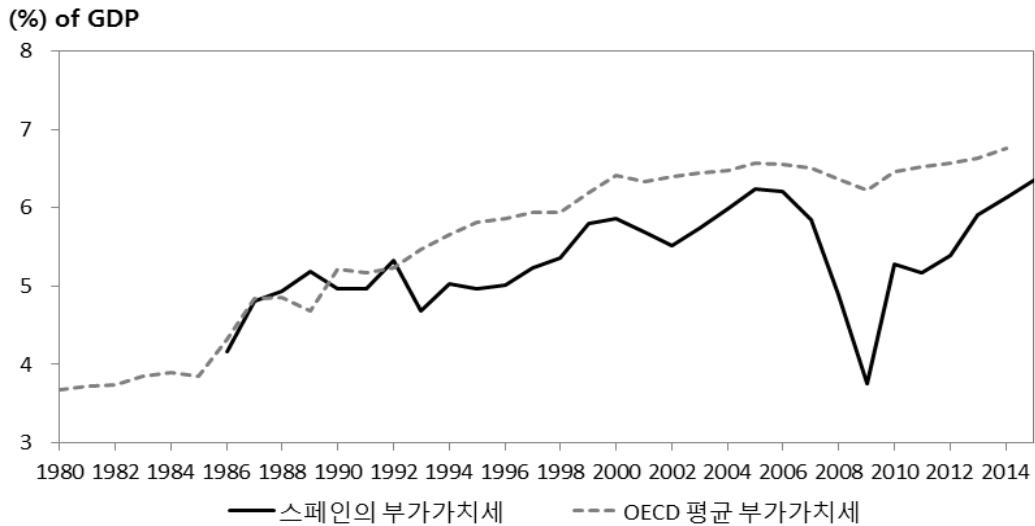
개정연도	세율구조			개정내용
	표준세율	경감세율	초경감세율	
1990 ~ 1995	12	-	-	
1995 ~ 2010.6	16	4	4	
2010.7 ~ 2012.8	18	8	4	표준세율과 경감세율 인상
2012.9 ~ 현재	21	10	4	표준세율과 경감세율 인상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12(09)

- 최근 스페인의 부가가치세율 개정은 2008년 이후 발생한 유럽의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스페인의 재정수지 문제로,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⁵²⁾
 - 금융위기 이전 재정수지 흑자 상태에서 2011년에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11.1%에 이르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여러 대책이 시도되었고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음

- [그림 IV-7]의 소비 조세부담률은 4~5%로, 도입 직후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 1995년에 표준세율을 12%에서 16%로 인상하였지만 경감세율 및 초경감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2010년과 2012년은 표준세율과 경감세율이 모두 인상되었고 이후 기간의 소비 조세부담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2008년 전후의 하락에서 회복하는 수준이며 금융위기 이전보다 증가한 것은 아님

[그림 IV-7] 스페인의 소비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52) 홍성훈 · 성명재(2013), p.53

3. 소결

- 스페인은 1975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정부지출을 감당하기 위하여 증세정책을 펼침으로써 1980년대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0년 10%대에서 1990년대에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률도 비슷한 추세로 상승하였음
 - 2000년 중반에 지방분권화⁵³⁾를 이루는 변화가 있었고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빠른 속도로 회복함
 - 1990년대에는 조세부담률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급락한 후 아직 이전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태임

- 세수구조 면에서 보면, 1980년대에는 사회보장부담금과 소비세 비중이 높았다는 특징이 있었고 2015년 현재는 소비세 비중은 OECD 평균 수준에 수렴하였으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또한 개인소득세 비중이 1980년대에는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았으나 OECD의 소득세 비중은 낮아지고 스페인의 소득세 비중은 증가함으로써 2014년에는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의 경우, 1980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40.65%에서 1984~1996년 기간에 45.84%를 거쳐 56%로 높아지면서 이 시기에 개인소득 조세부담률도 상당히 증가하여, 세율 변동이 조세부담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1990년대 후반에는 노동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최고세율을 인하하였으나 동시에 다양한 세액공제를 폐지함으로써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53) Martinez-Vazquez(2007), p.541에 따르면 스페인은 1970년대 세계에서 가장 중앙집권적인 국가였으나 2000년 중반에는 강한 지방분권화 과정을 겪었음

- 2008년 경제위기 시기에는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제 위기로 악화된 재정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자본이득세를 강화하였고 주정부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증세정책으로 2009년 이후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다시 증가추세를 보임
- 스페인의 경우 비교적 소득세제의 변동이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스페인은 1980년대의 증세정책으로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는 시기가 있었고 1990년대 법인소득세제 개혁은 조세중립성 제고에 초점을 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조세부담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을 기점으로 급락한 후 2014년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태임
 - 1980년에는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이 1%에 불과하였고 1980년대의 증세정책으로 법인소득 조세부담률도 증가하여 1990년에는 약 2.8%까지 증가하였음
 - 1995년의 법인소득세 개혁에서는 3가지 세율을 단일세율로 하고, 투자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 및 영업손실의 이월공제를 확대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음
 - 1995년 이후 상당기간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증세를 위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법인소득세 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세수를 증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스페인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초에 OECD 평균을 상회하였음

- 부가가치세는 1986년 도입되었고 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 소비 조세부담률이 커짐
 - 소비 조세부담률은 1980년 4.6%에서 부가가치세 도입 직후인 1990년에는 9.0%로 증가하였고 2015년 현재는 9.9%임
 - 총세수에서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20.7%에서 1990년 28.4%로 증가한 이래 2014년 현재 28.4%를 유지하여 OECD 평균인 32.6%에 근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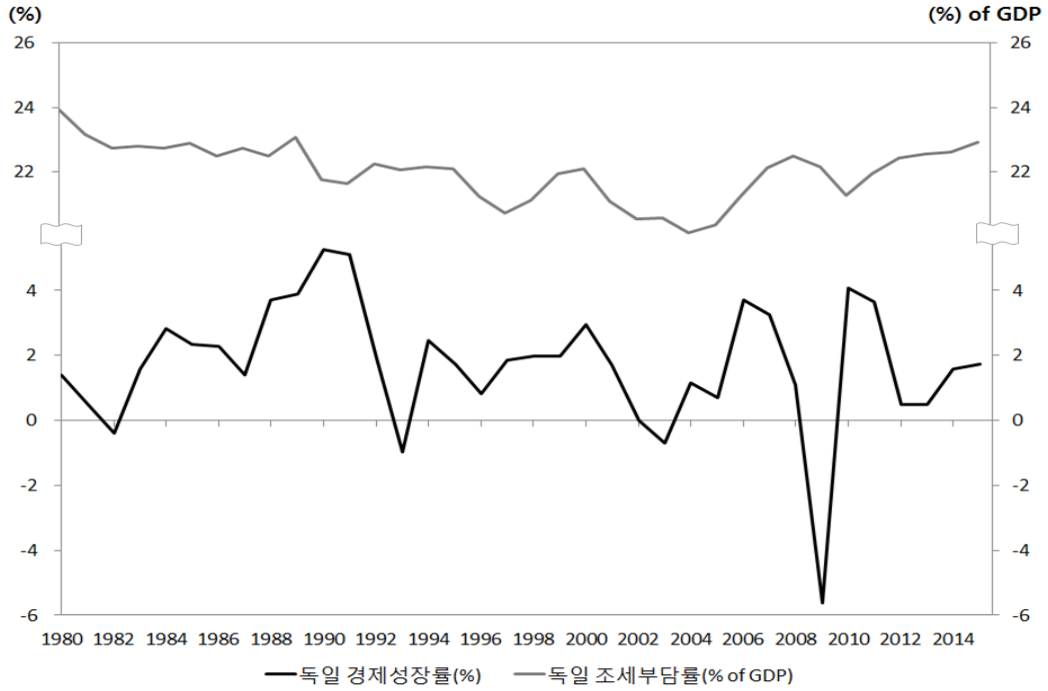
V. 독일의 조세부담률 추이 및 조세정책 변화

1. 조세부담률 추이

- 1980년대 중후반 독일은 2~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구가하였으며, 이후 세 차례의 경기침체를 거쳐 2015년 1.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 통일 특수 기간을 제외하고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2006년부터 경기호황이 시작되면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임

- [그림 V-1]을 보면 독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성장률의 등락 폭에 비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추이를 보임
 - 독일의 조세부담률은 21%에서 23% 사이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조세시스템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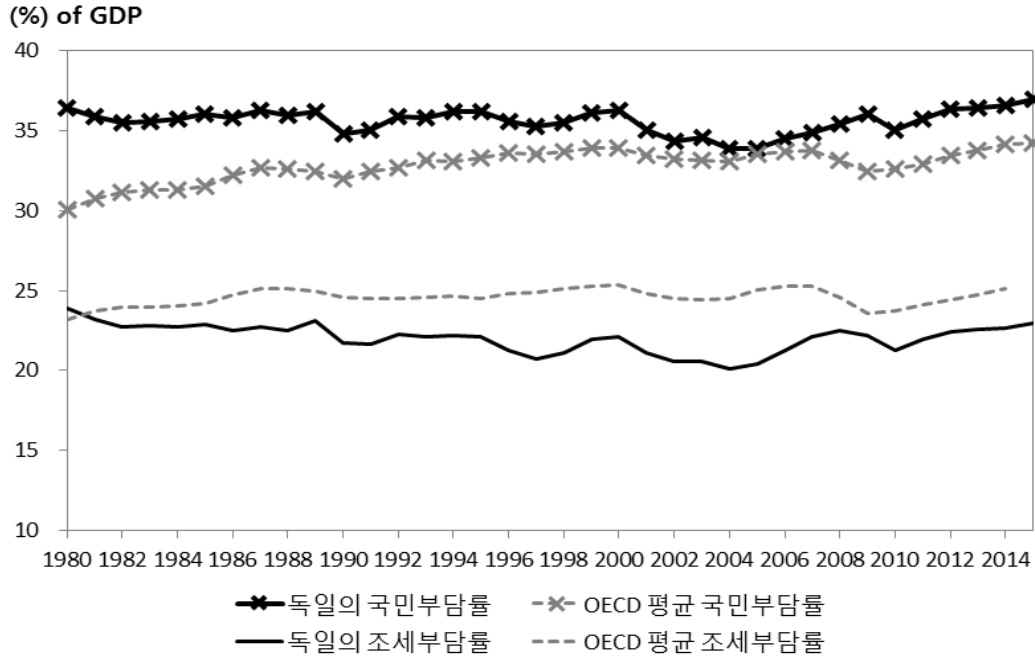
[그림 V-1] 독일의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



자료: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OECD, Revenue Statistics

- 독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중하위 수준이며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임
- [그림 V-2]를 보면 1980~2014년 기간에 독일의 조세부담률은 23.9%에서 22.6%로 하락한 반면,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3.2%에서 25.1%로 상승함
- 독일의 국민부담률은 1980년 36.4%에서 2004년에 33.9%까지 하락하였으나 2014년에는 다시 36.6%수준을 회복하여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동 기간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1980년 30.0%, 2004년 33.1%, 2014년 34.2%를 기록함

[그림 V-2] 독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OECD 평균에 비해 독일의 조세부담률이 낮아도 국민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회보험료 기여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임⁵⁴⁾
 - 1990년대 말까지 독일의 사회보험료 기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1995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됨
- 국민부담률이 조세부담률보다 더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사회보장시스템이 정부지출보다 근로자 및 고용자 부담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2005년을 기점으로 OECD 평균 국민부담률과 독일의 국민부담률 간의 격차는 다시 확대됨

54) 김상철(2016), p.68

2. 시점별 주요 정책 변화

가. 주요 조세정책과 세수구조

- 1980년대 중반 세계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여 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독일의 세제 개혁은 방향을 전환하여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⁵⁵⁾
 - 1970년대의 세제 개혁은 사회적 재분배 및 정부 재정부담 감소를 목표로 함
 - 1980년대부터 독일 세제 개혁의 목표는 세금부담을 경감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됨
 - 이는 동 시기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인하한 것과 흐름을 함께함

-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루어진 실질적 의미가 있는 독일의 세제 개혁으로는 1975년, 1985년 개혁이 있음
 - 1975년 세제 개혁은 개인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부양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하는 등 세수진작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를 목적으로 함
 - 개인소득세 최저세율은 19%에서 22%로, 최고세율은 53%에서 56%로 인상함
 - 1975년에 부양자녀 소득면세 제도(Kinderfreibetrag)를 폐지하고 양육보조비(Kindergeld)로 대체하였다가 1982년 개정으로 자녀면세 제도를 재도입하여 양육보조비와 자녀면세 제도 중 한 가지를 선택 적용하도록 함⁵⁶⁾
 - 1985년 세제 개혁은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액과 양육보조비를 상향조정하고, 한계세율 간 격차를 축소하는 등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함⁵⁷⁾
 -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액과 양육보조비 상향조정은 1986년에, 한계세율 간 격차

55) 김영태(2007), p.104

56) Bethusy-Huc, V.(1987), p.61

57) 김영태(2007), p.104

축소는 1988년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세수 감소 및 정부재정 적자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1990년대 통일 이후 독일은 지속적 경제침체와 재정적자 심화로 경제위기를 겪음
 - 통일 직후 독일은 통일 단기특수 호황을 누렸으나, 이후 통일 비용부담효과가 발생하면서 경제침체에 돌입함
 - 1988년에서 1991년까지 3.7%에서 5.3%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통일 특수 종료 후 비용부담 효과가 나타나면서 1992년 1.9%, 1993년 -1.0%, 1995년에는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침체에 돌입함⁵⁸⁾
 - 독일정부는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 대해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였고,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재정적자는 해소되지 않음⁵⁹⁾
 -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에 대한 할증부가세인 연대세의 한시적 도입,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통해 세수를 1990년 5,496억DM에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각각 6,619억DM, 7,317억DM, 7,491억DM, 7,861억DM, 8,141억DM으로 확대함
 - 그러나 동독 지역의 조세부담률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여전히 12% 후반으로 서독 지역의 절반 수준에 그쳐 통일독일의 조세부담률은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⁶⁰⁾

- 1995년에서 2005년에 걸친 증세조치, 노동시장개혁과 법인소득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슈뢰더 총리의 하르츠개혁(아젠다 2010)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에 성공함⁶¹⁾
 - 1995년에서 2003년 사이에는 확대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연대세 부활⁶²⁾,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 조치를 도입함

58) 김유찬(2014), p.4

59) 김유찬(2014), p.8, p.45

60) 김유찬(2014), p.31

61) 이현대·조윤수(2013), p.71, p.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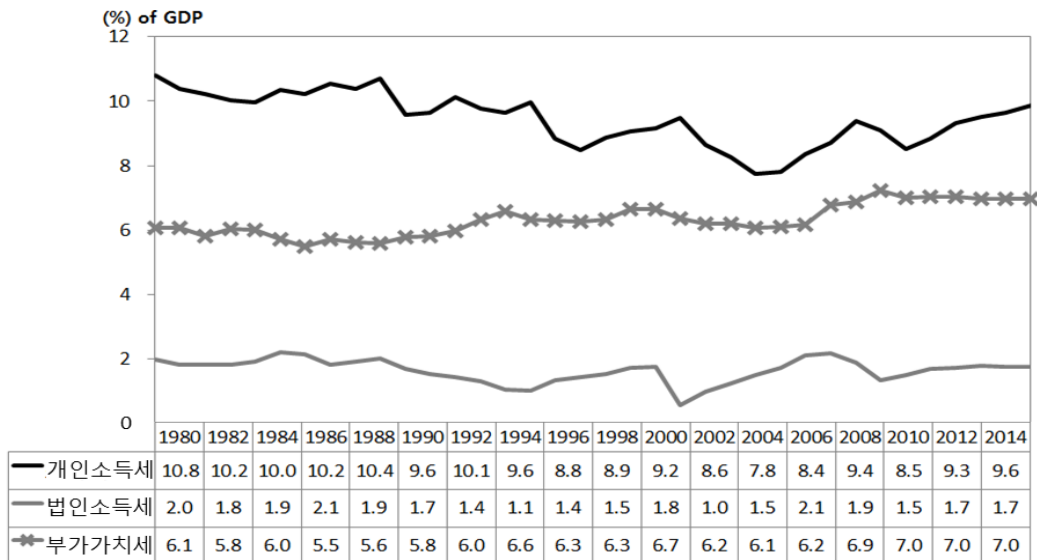
62) 1998년 1월부터 연대세의 세율을 7.5%에서 5.5%로 인하함

-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슈뢰더 총리에 의해 하르츠(Hartz)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하르츠II법을 통해 미니잡이라는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를 사회보장체계에 통합하면서 세원 및 세수를 증대함⁶³⁾
 - 미니잡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세(2003년 400유로→2013년 450유로) 및 고용주의 고용보험부담 면세혜택 제공을 통해 불법고용이 양성화됨

□ [그림 V-3]에서 개인소득, 법인소득, 소비의 조세부담률 추이를 보면 직접세 비중이 높고 간접세 비중이 낮은 전반적인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직접세 비중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간접세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80년 10.8%에서 2014년 9.6%로 1.2%p,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80년 2.0%에서 2014년 1.7%로 0.3%p 하락함
- 소비 조세부담률은 1980년 6.1%에서 2013년 7.0%로 0.9%p 상승함

[그림 V-3] 독일의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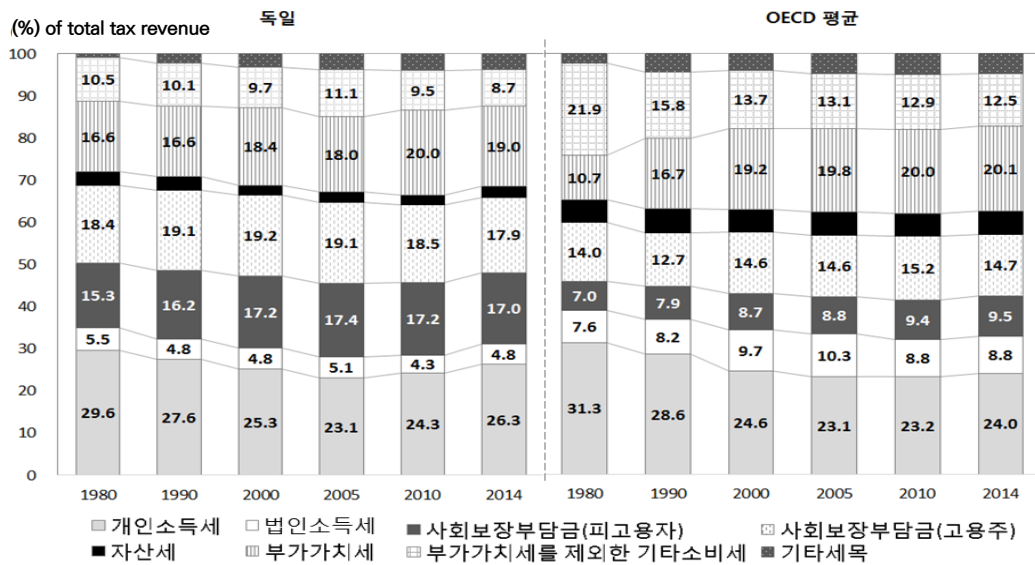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63) 이현대 · 조윤수(2013), p.76

- [그림 V-4]를 보면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부담금의 비중이 높은 독일의 세 수구조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1990년대부터 조세제도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보장부담금의 세수비중이 높아졌으며 특히 피고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의 비중은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됨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소비세의 세수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음
- 시기별로 볼 때 급격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으나 개인소득세 비중이 1980년 29.6%에서 2005년 23.1%로 하락하였다가 2014년 26.3%수준을 회복하여 전반적으로 세 수의 개인소득세 의존도가 낮아짐
- 법인소득세의 비중은 1980년 5.5%에서 2014년 4.8%로 하락하여 동 시기 OECD 평균 7.6%, 8.8%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세의 비중은 1980년 27.1%에서 2014년 27.7%로 상승하였으나 동 시기 OECD 평균 32.6%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그림 V-4] 독일의 세목별 세수비중: OECD 평균과의 비교



주: 기타세목에는 급여세(payroll tax)와 기타세금이 포함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나. 개인소득세

- 통일 후 독일의 소득세제상 가장 큰 변화로 연대소득세 도입을 들 수 있음
 - 1991년 7월부터 1992년 6월까지 연대세 7.5%를 한시적으로 도입함
 - 1995년 1월부터 연대세를 재도입하여 1998년 1월부터 5.5%로 세율을 인하함

- 3단계(1999/2000/2002) 조세부담경감법(dreistufige Steuerentlastungsgesetz) 도입 등을 통해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기본공제를 인상하여 민간 가계의 부담을 경감함
 - <표 V-1>을 보면 3단계 조세부담경감법을 통해 기본세율은 1998년 25.9%에서 2001년 19.9%로, 최고세율은 53%에서 48.5%로 인하하였으며 2016년 현재 기본세율은 14.0%, 최고세율은 45.0%임
 - 2008년 부유세를 도입하면서 45%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함(2016년 현재 독신 가구 기준 254,447유로 이상 소득구간에 적용)
 - 개인소득세 면세구간 및 한계세율 기준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함
 - 개인소득세 면세구간은 2000년 6,902유로, 2001년 7,206유로, 2004년 7,664유로, 2009년 7,834유로, 2010년 8,004유로, 2011년 8,130유로, 2014년 8,534유로, 2015년 8,472유로, 2016년 8,652유로로 인상됨

〈표 V-1〉 독일의 개인소득세 연혁

(단위: %)

적용연도	기본세율	최고세율	비고	연대세
1981~1989	22.0	56.0	-	-
1990~1995	19.0	53.0	기본세율, 최고세율 인하	7.5(1991.7~1992.6, 1995.1~1997.12)
1996~1998	25.9		기본세율 인상	
1999	23.9		기본세율 인하	5.5 (1998.1~현재)
2000	22.9	51.0	기본세율, 최고세율 인하	
2001~2003	19.9	48.5	기본세율, 최고세율 인하	
2004	16.0	45.0	기본세율 인하	
2005~2006	15.0	42.0	기본세율, 최고세율 인하	
2007~2008		45.0	최고세율 구간 신설	
2009~2016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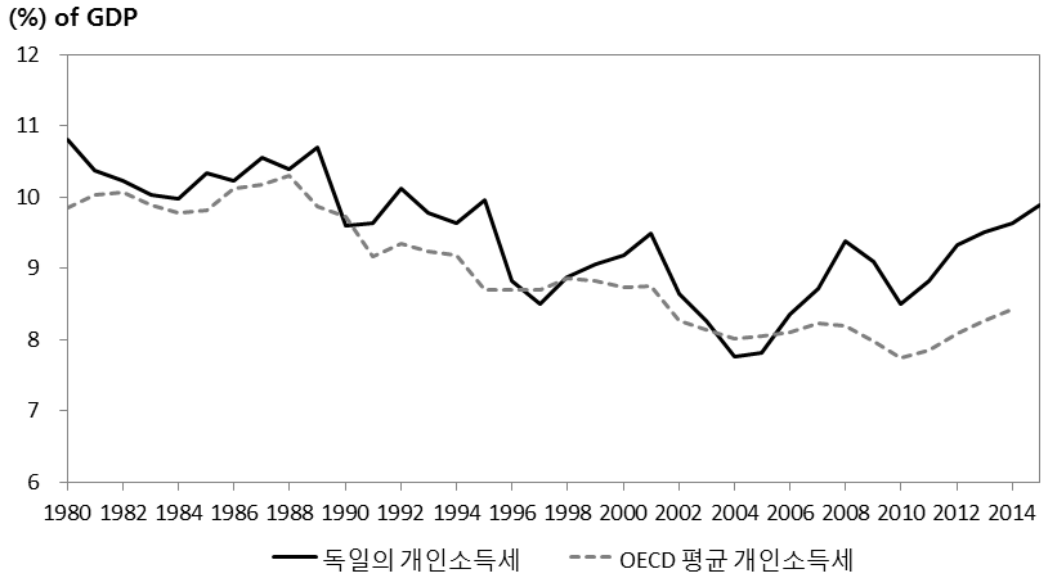
주: 독일 개인소득세 한계세율은 독일 소득세법(EStG) §32a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거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변화하므로 물리적으로 세율구간단계를 규정하기 어려움
 자료: 1980~1999년 세율은 외교부, 「독일의 재정구조와 재정개혁 및 조세개혁」, 2000~2016년 세율은 OECD Tax Database(<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pit>)에 근거하여 필자 작성

- 2009년부터 원천징수세 제도를 도입하여 자산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함
 - 기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였으나, 자산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고소득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대폭 인하됨
 - 반면 자산소득의 분리과세로 인해 저소득자의 과세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⁶⁴⁾
- [그림 V-5]를 보면 독일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세 차례 경기위기를 전후하여 등락을 반복하며 2014년 현재 1990년대 초와 비슷한 9.6%수준을 기록함
 - 1990년대 경제위기, 2000년대 초 IT버블 붕괴, 2009년 유럽재정위기 발발 시 약 1~2%p가 하락하였으나 위기 극복 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함

64) 김유찬·이유향(2009), p.68

- 독일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80년 10.8%에서 1990년 9.6%, 2000년대 초반에 7.7%까지 하락하였다가 2014년 현재 9.6%로 총 1.2%p 하락함

[그림 V-5] 독일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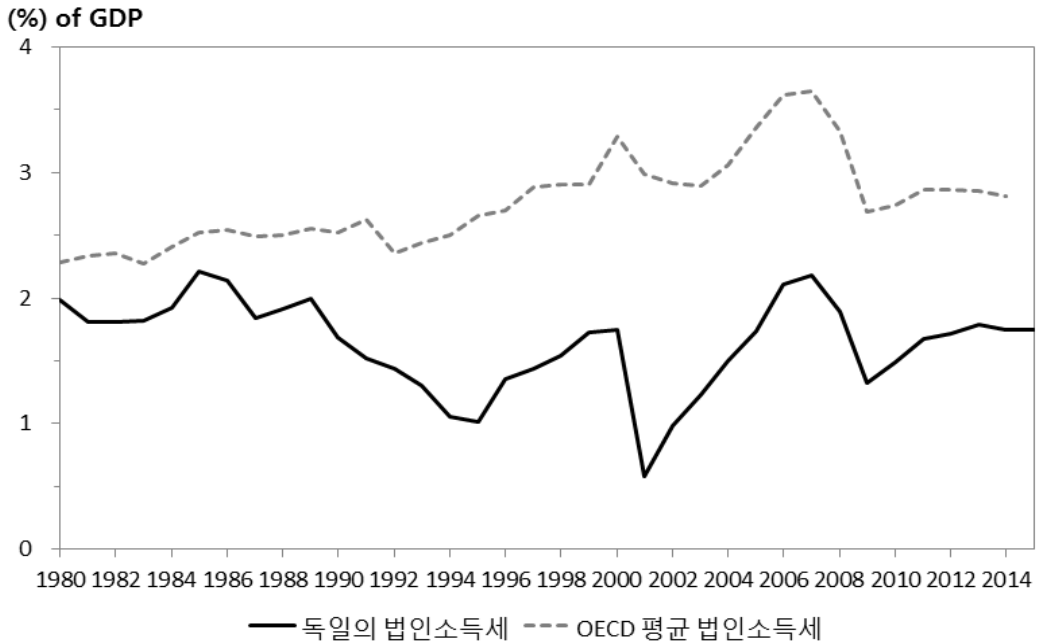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다. 법인소득세

- 독일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80~2014년의 기간 동안 OECD 평균 이하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그림 V-6]을 보면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2000년대 초 IT버블붕괴, 2009년 유럽 재정위기 시 각각 약 1%p가 하락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14년 현재 1.7% 수준을 유지함
 - 1980년대 초반 2.0%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1.0%, 2000년대 초반에 0.7%수준 까지 하락하였으나 2014년 현재 1.7%수준을 회복함

[그림 V-6] 독일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법인소득세율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독일기업의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부담은 경감되고 있으나 법인소득의 조세부담률은 1980년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표 V-2>를 보면 독일 (연방정부)법인소득세율은 1980년 5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4년 45%, 1999년 40%, 2001년 25%, 2008년에는 15%로 인하됨
 - 2008년 법인소득세율 인하는 세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⁶⁵⁾
 - 각 지방정부가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영업세(Gewerbsteuer) 기준 세율은 기존 5%에서 2008년 3.5%로 인하됨⁶⁶⁾

65) Gadatsch, N., Stähler, N., & Weigert, B.(2016), p.20

66) 독일의 영업세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연방법에 의거하고 있으나 실제 부과율은 지방정부에 의해 결정됨. 영업세 과표승수가 되는 기준세율(3.5%)에 각 지방정부가 정한 기준율을 곱하여 각 지방별 실제 영업세가 결정됨

- 2008년 개정으로 인해 영업세를 손금산입할 수 없도록 하여 영업세 기준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완화함
- 기존 영업세는 법인소득수준에 따라 1%에서 4%로 차등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08년 개정을 통해 3.5%로 일원화됨

〈표 V-2〉 독일의 법인소득세 연혁

(단위: %)

적용연도	종합 법인소득세율		연대세	
	연방정부	지방정부		
1981~1989	60.0	50.9	-	
1990	54.5	50.0	-	
1991	56.3		7.5(1991.7~1992.6)	
1992	58.2	45.1		-
1993	56.5	43.5	13.0	
1994	52.2	45.0		7.5(1995.1~1997.12)
1995	55.1		14.5	
1996	55.9		16.3	5.5(1998.1~현재)
1997	56.8		17.0	
1998	56.0	33.0		
1999~2000	52.0	25.0		
2001~2002	38.9	25.0		
2003	40.2	15.0	14.4	
2004	38.9			
2005~2007				
2008~2016	30.2			

주: 종합법인소득세율은 법인소득세율(연방정부)과 법인소득 지방세율을 합한 금액임. 1990년부터 전자와 후자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1990년도부터 법인소득세율(연방정부) 데이터에 부가세(surcharge tax)와 영업세가 포함되었기 때문임

자료: OECD, Tax Database

- 2001년에 배당소득과 유보이익에 대한 법인소득세율을 25%로 단일화하고 2008년에는 자본소득에 대해 25%의 종결적 원천징수제를 도입하여 세율을 단순화하고 인하하는 동시에 배당소득 과세제도를 조정하여 세수감소 효과를 완화함
- 2001년 개정을 통해 유보이익(Ausgeschüttete Gewinne)과 배당이익(Einbehaltene

Gewinne)에 대한 법인소득세율을 25%로 인하하고 단일화함

- 개정 이전에는 유보이익과 배당이익에 각각 40%, 30%의 차별세율을 적용함

○ 2001년부터 새로운 배당소득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세수감소 효과를 완화함

- 개정 이전에는 배당이익에 대해 ‘법인소득세 완전 주주 귀속법(full imputation)’에 따른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만을 부과함

- 2000년 세제개정 후 배당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이중과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당소득금액의 50%만을 과세대상소득에 산입하는 반액법을 도입함⁶⁷⁾

- 2009년부터 배당소득금액의 60%를 과세소득금액에 산입하도록 개정함

○ 2008년에 기업세제개혁법을 창설하면서 자본소득에 대한 25%의 종결적 원천징수세를 도입함⁶⁸⁾

- 이는 북구국가들의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에 해당하는 제도로 모든 포괄적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 증권양도차익 및 파생상품도 적용대상임⁶⁹⁾

라. 부가가치세

□ [그림 V-7]을 보면 1980년대 독일의 소비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점차 OECD 평균 수준에 수렴하고 있으며, 소득 대비 소비세 부담 증가분은 OECD 평균보다 낮음

○ 1980년부터 2014년까지 독일의 소비 조세부담률은 전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음

- 분석기간 동안 OECD 평균 소비 조세부담률이 3.1%p 증가한 데 비해 독일의 소비 조세부담률은 0.9%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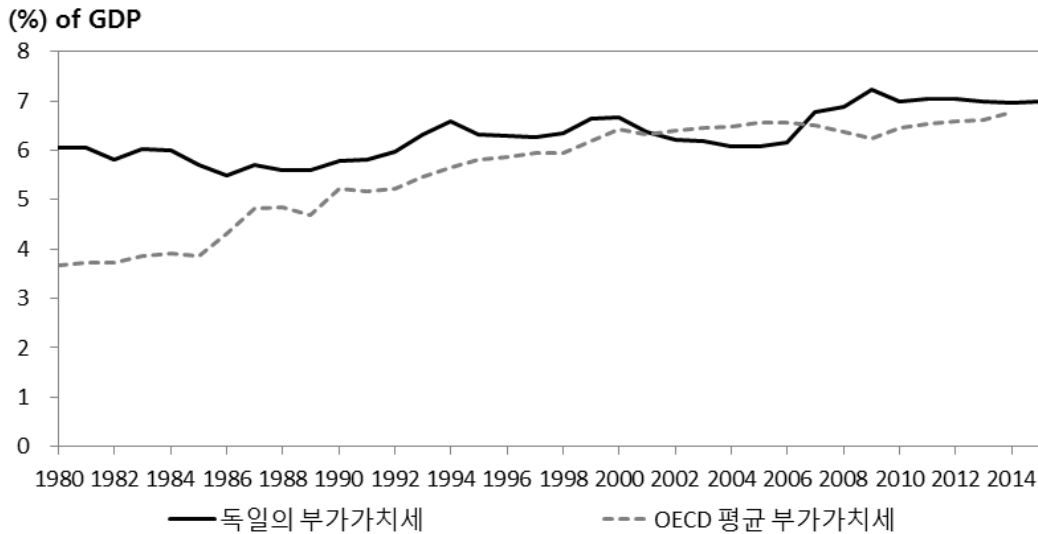
67) 이성봉(2001), pp.124~125

68) 김유찬·이유향(2009), p.125

69) 김유찬(2016), p.245

- 분석기간 동안 OECD와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독일의 부가가치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지만 소득 증가분 대비 세부담 증가분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V-7] 독일의 소비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표 IV-3>에서 볼 수 있듯 1990년대 통일 이후 독일은 지속적으로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세수를 확충함
 - 독일의 부가가치세법은 1993년에 제정된 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 1996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주요 연원으로 함
 - 부가가치세율을 1993년 1월에는 15%로, 1998년 4월에는 16%로 인상하였으며 1994년에는 유류세를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함
- 2005년 대연정 협상결과 2007년부터 기존 16%였던 부가가치세율을 19%로 인상하여 세원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함⁷⁰⁾
 - 증세를 통해 확보한 세원 중 3분의 2는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함⁷¹⁾

- 세원 중 나머지 3분의 1은 재정평가절하(Fiscal devaluation)에 사용됨⁷²⁾
 - 3분의 1의 세원은 고용주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고용 및 경제 활동을 지원함

〈표 V-3〉 독일의 부가가치세 연혁

(단위: %)

적용연도	일반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적용연도	일반부가가치세	경감세율
1979.7~1983.6	13	6.5	1998.4~2006.12	16	7.0
1983.7~1992.12	14	7.0	2007.1~현재	19	7.0
1993.1~1998.3	15	7.0			

자료: OECD, Tax Database

3. 소결

- 독일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맞아 증세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이 자체로는 재정적자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에 노동시장개혁 및 법인소득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하르츠개혁(아젠다 2010)을 단행한 뒤 경제체질 개선에 성공함
- 1990년대 통일을 전후하여 독일은 경제위기를 맞아 연대세 부활,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조치를 단행하였으나 누적된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실패함
- 하르츠개혁을 통해 ‘미니잡’이라는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를 사회보장체계에 통합시키면서 세원 및 세수를 증대시킴

70) Gadatsch, N., Stähler, N., AND Weigert, B.(2016), p.20

71) 대연정 협상 당시 독일의 재정 적자 규모는 EU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의 의무 규정 기준인 GDP의 3%를 초과하는 수준이었음

72) 한국조세연구원(2011), pp.56~57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재정 평가절하는 화폐가치 평가절하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조세 개편을 의미하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 tax) 대신 부가가치세를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대두되며 재정 평가절하가 새로운 실행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독일의 조세부담률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부담률은 이에 비해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음
 - 독일의 국민부담률이 조세부담률보다 더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사회보장시스템이 정부지출보다 근로자 및 고용자 부담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독일의 개인소득, 법인소득, 소비 조세부담률 추이를 보면 직접세 비중이 높고 간접세 비중이 낮은 전반적인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직접세 비중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간접세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80년 10.8%에서 2014년 9.6%로 1.2%p,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80년 2.0%에서 2014년 1.7%로 0.3%p 하락함
 - 소비 조세부담률은 1980년 6.1%에서 2014년 7.0%로 0.9%p 상승함

- 1980년대부터 독일 세제 개혁의 목표가 세금부담을 경감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직접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경감됨
 - 독일의 개인소득세는 세율 인하 및 기본공제 인상이 단행되는 등 지속적으로 절감되고 있으며 전 기간에 걸쳐 OECD 평균과 비슷한 세수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3단계(1999/2000/2002) 조세부담경감법(dreistufige Steuerentlastungsgesetz) 도입 등을 통해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소득세 기본공제를 인상하여 민간 가계의 부담을 경감함
 - 개인소득세율 인하 결과 기본세율은 1998년 26%에서 2016년 현재 14%로, 최고세율은 53%에서 45%로 인하됨
 - 2009년부터 자산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
 - 법인소득세율은 1990년 50%에서 2008년부터 15%로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나 법인소득의 조세부담률은 1980년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배당소득과 유보이익에 대해 40%, 30%의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1년부터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법인소득세 완전 주주 귀속법(full

imputation)'에 따른 배당세액공제를 폐지함

- 2008년부터 자본소득에 대해 25%의 종결적 원천징수세를 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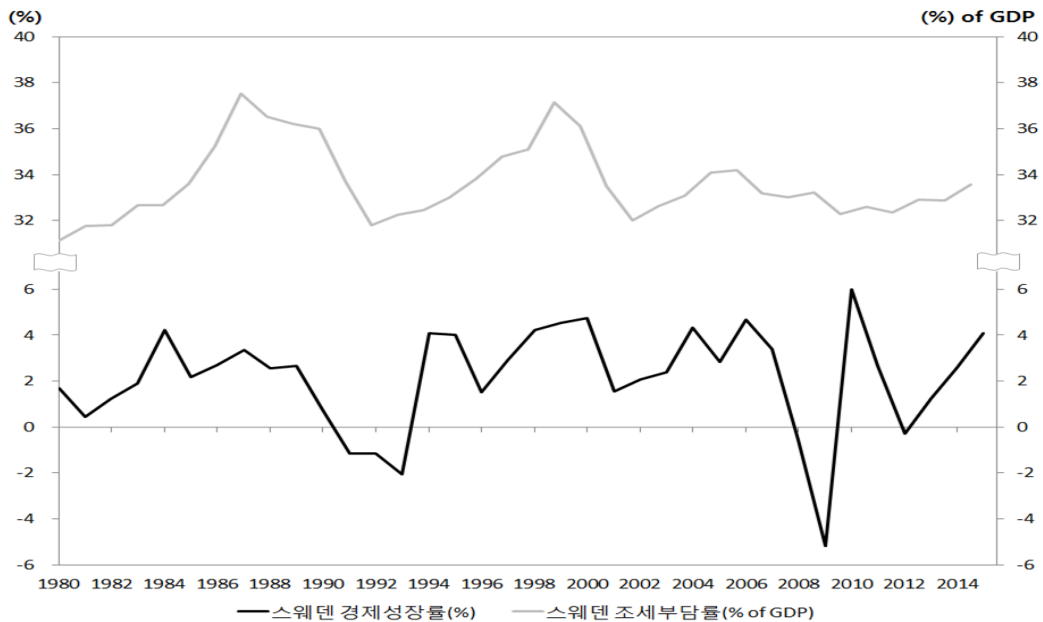
- 독일은 1990년대 통일 이후 특히 부가가치세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세원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함
 - 1980년대 독일의 소비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점차 OECD 평균 수준에 수렴하여 소득증가분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증가분은 OECD 평균보다 낮음
 - 부가가치세율은 1982년에 12%였으며 점진적 인상 과정을 거쳐 1998년에는 16%였다가 2007년부터 19%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소비 조세부담률은 분석 전 기간에 걸쳐 10%대의 수준을 유지함
 - 부가가치세 증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재정 불균형 해결 및 재정 평가절하에 사용함

VI. 스웨덴의 조세부담률 추이 및 조세정책 변화

1. 조세부담률 추이

- 스웨덴은 1980년대부터 2015년까지 평균 2.6%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하였으며, 세 차례의 경기침체를 거쳐 2015년에는 4.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 [그림 VI-1]를 통해 시대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1980년대에는 2.3%, 1990년대에는 1.8%, 2000년대에는 2.0%,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2.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1990년 경제위기 극복 이후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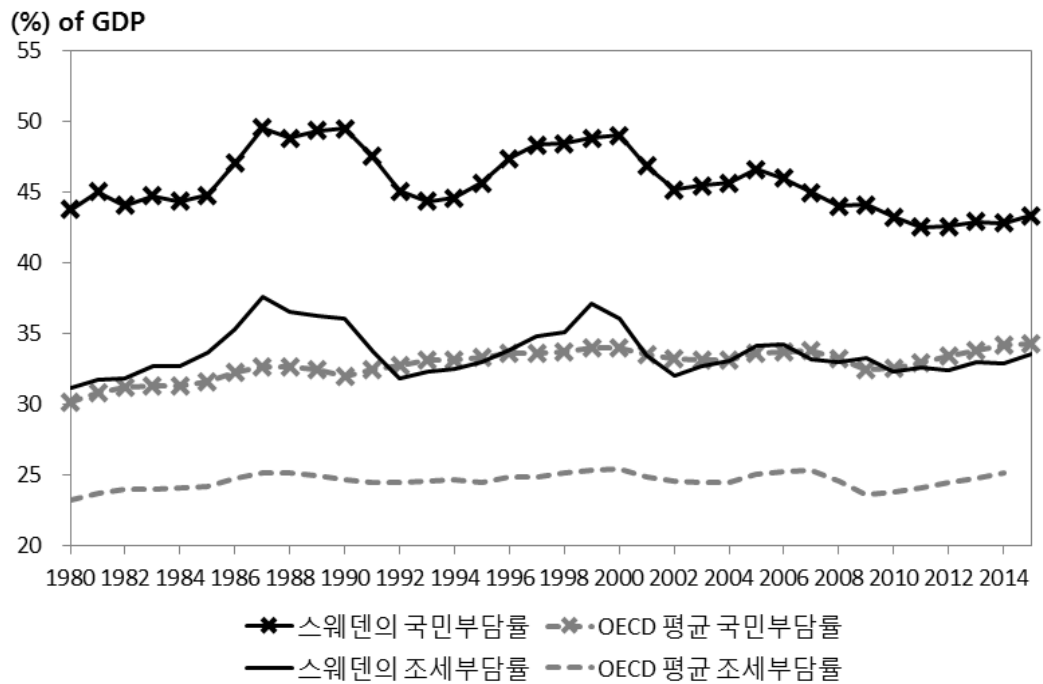
[그림 VI-1] 스웨덴의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



자료: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OECD, Revenue Statistics

- 조세부담률은 경제성장률 변동과 어느 정도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이를 보임
- [그림 VI-2]를 보면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1980년대부터 2014년까지 평균 33%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약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스웨덴과 OECD 평균 조세부담률 격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또한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상승추세를 보여 두 지표 간의 격차는 축소되고 있음
 -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1990년 49.3%에서 2015년 43.3%로 감소하였으며,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1990년 31.9%에서 2015년 34.3%로 상승함

[그림 VI-2] 스웨덴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스웨덴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7~10%p 이상 높은 수준으로 스웨덴은 고부담·고복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주 스웨덴 대사관(2006)에 따르면,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복지수당으로서 가계로 이전되는 소득의 비중이 높고, 이전된 복지수당 역시 과세 대상이므로 순사회 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비용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음⁷³⁾
 - 스웨덴의 세금의 상당 부분이 각종 복지수당으로 다시 가계에 이전 지급되고 있어 실제 국민의 복지부담수준은 많은 부분 경감되고 있음

-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격차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조세제도가 사회보장기여금에 의존하는 비중은 전 시기에 걸쳐 OECD 평균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격차로 산출되는데, GDP 대비 스웨덴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늘 높은 수준을 기록함
 - 1980년부터 2015년까지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을 산술평균한 결과 스웨덴은 12.0%, OECD 평균은 8.6%를 기록함
 - 2002년을 기점으로 스웨덴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 2014년 스웨덴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9.9%를 기록하여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약 0.8%p수준에 불과함

73) 주 스웨덴 대사관(2006)

2. 시점별 주요 정책 변화

가. 주요 조세정책과 세수구조

- 스웨덴은 수출지향형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하였으나 1980년대 성장률 하락 및 1990년대 초 대규모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를 경험함
- 스웨덴 경제는 1985년 자본시장 규제 철폐로 인해 신용이 과대 팽창하였다가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1990년대 초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위기에 직면함⁷⁴⁾
 - 1970년 스웨덴의 1인당 GDP(current US\$ 기준)는 세계 3위를 기록하였으나 1980년 9위, 1995년 11위를 거쳐 2000년에는 14위로 지속적 하락세를 겪음
 - 경제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1991년 조세개혁으로 인해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992년 재정적자는 GDP의 13%수준까지 증가함
- 1994년 재집권한 사민당 정권은 1995년 EU 가입을 맞아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복지제도 개혁을 통해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1998년부터 재정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세를 회복함
 - EU 가입 후 시장개방을 통해 국제경쟁력 및 생산성이 증진된 것 역시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함⁷⁵⁾
- 스웨덴은 1980년대부터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개혁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고 한계세율 간의 격차를 축소하여 과세체계의 누진성을 낮추는 대신 복지지출 수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전격적으로 수정함

74) 주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 경제 개요」, 2006. http://swe.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555&seqno=714902&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검색일자: 2017. 8. 10

75) 김인춘(2012), p.41

- 1970년대 이전 스웨덴은 OECD 평균에 비해 조세부담 수준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인 국가였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는 조세부담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대두함
- 1991년 ‘세기의 조세개혁’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개혁 이후 스웨덴의 세제는 직접세 비중을 낮추고 간접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으나 복지 혜택 수준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991년 조세개혁을 통해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 대폭 인하, 이원과세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 부가가치세율의 대폭 인상과 같은 조치가 단행됨⁷⁶⁾
 - 2004년에는 증여세·상속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으며 2007년 말부터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던 1.5%의 부유세를 폐지함
 - OECD 사회복지지출통계(Social Expenditure Database)에 따르면 스웨덴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비중은 1980년 24.8%, 1990년 27.2%, 2000년 26.8%이었으며 2015년 현재 26.7%로 조세개혁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동 기간 OECD 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4.9%, 16.9%, 18.0%, 21%임
- 높은 대외경제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OECD 평균에 비해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여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이 확인됨⁷⁷⁾
 - 스웨덴 경제는 2008년과 2012년 위기 직후 OECD 평균에 비해 더 큰 타격을 입었으나 이후에는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그림 VI-3]에서 개인소득, 법인소득과 소비 조세부담률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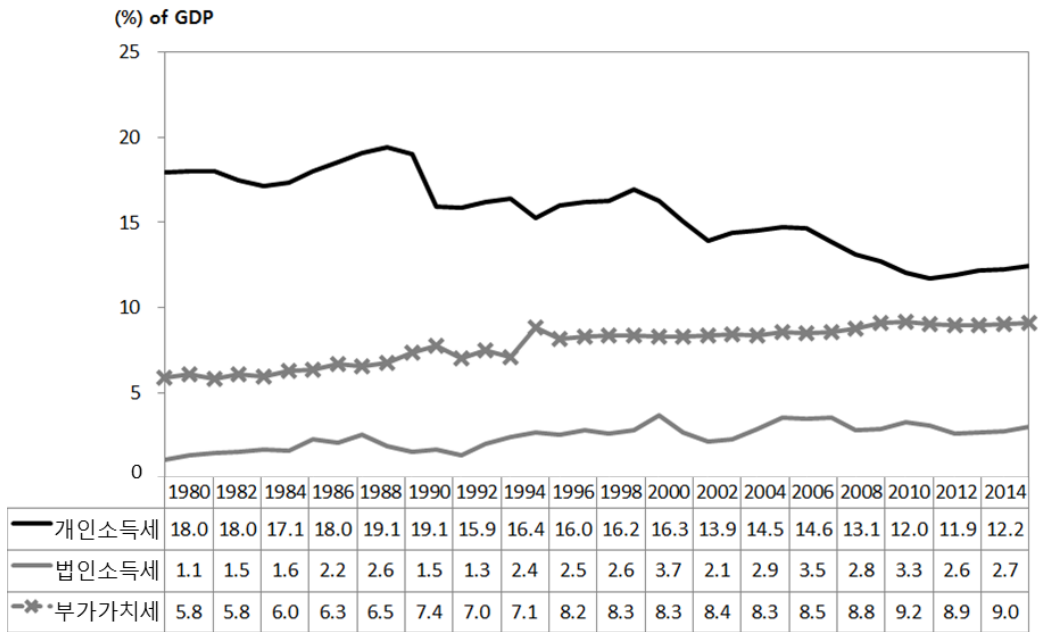
76) Henrekson, M., and Stenkula, M.(2015), p.37

77) 통계청(2016), 『무역의존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806&conn_path=I2, 검색일자: 2017. 6. 7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스웨덴의 대외 의존도는 55.98%임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 비해 법인소득과 소비의 조세부담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스웨덴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전반적으로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OECD 평균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OECD 평균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이 1990년 9.7%에서 2015년 8.4%로 완만하게 감소한 데 비해 스웨덴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1990년 19.1%에서 2014년 12.2%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
- 법인소득세율이 조세개혁으로 인해 큰 폭으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소득의 조세부담률은 1990년 1.5%에서 2014년 2.7%로 약 두 배로 증가함
 - 경기 호황기였던 2005년과 2007년에 3.5%로 정점을 기록함
- 스웨덴의 소비 조세부담률은 1990년 7.4%에서 2014년 현재 9.0%로 1.6%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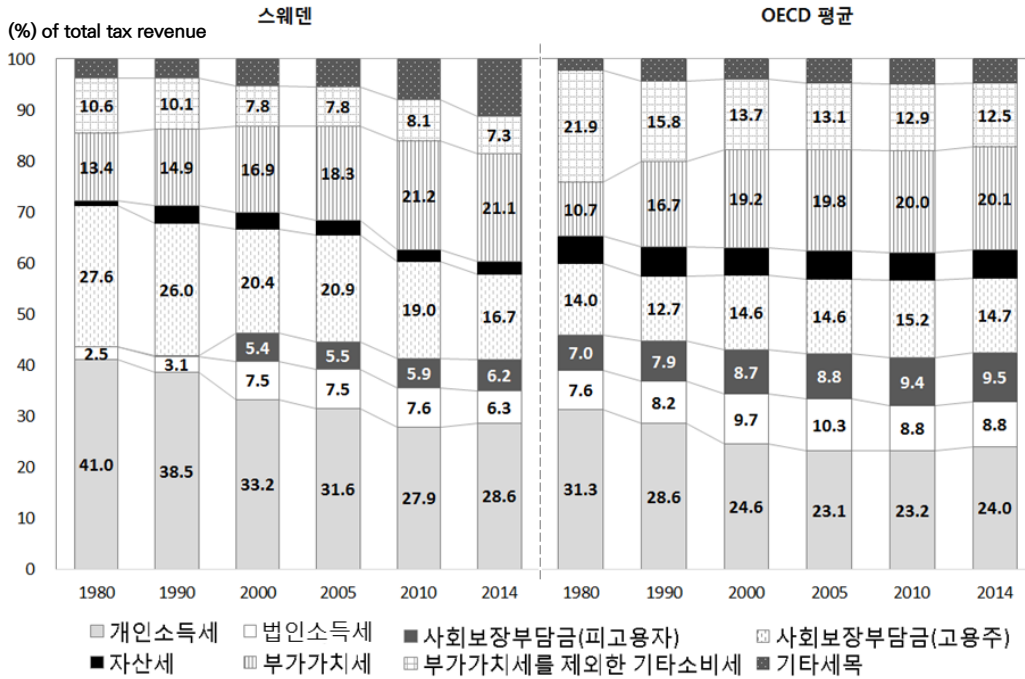
[그림 VI-3] 스웨덴의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그림 VI-4]를 통해 각 세목별 세수비중을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스웨덴의 개인소득세, 사회보장부담금 중 고용주 부담분 비중이 높고 법인소득세, 사회보장부담금 중 피고용자 부담분, 부가가치세 비중은 낮은 추세를 보이거나 1990년대 이후로 점차 OECD 평균과 비슷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세율은 낮추고 세원을 확대하며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한 결과, 스웨덴 총세수의 간접세 의존도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아지고 직접세 의존도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아짐
 - 스웨덴의 개인소득세 의존도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분석기간 중 개인소득세 세수비중은 1980년 41.0%에서 2014년 28.6%로 감소하여 동 시기 OECD 평균이 31.3%에서 24.0%로 변화한 데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법인소득세 세수비중은 1980년에 2.5%로 OECD 평균 7.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4년 현재 6.3%로 증가하여 OECD 평균 8.8%수준에 근접함
 - 사회보장부담금 세수비중은 1980년대 28%대로 OECD 평균 21%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고용주의 부담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2014년 현재 22.9%수준으로 감소하여 OECD 평균 24.2%보다 낮아짐
 - 피고용자의 사회보장부담금 비중은 0%에 가까운 수준에서 6.2%로 상승한 데 비해 고용주의 사회보장금 비중은 27.6%에서 16.7%로 큰 폭으로 감소함
 - 부가가치세의 세수비중은 1980년 13.4%에서 2014년 21.1%로 약 1.5배 증가하여 2014년 OECD 평균 20.1%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그림 VI-4] 스웨덴의 세목별 세수비중: OECD 평균과의 비교



주: 기타세목에는 급여세(payload tax)와 기타세금이 포함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나. 주요 조세정책 변화' 장에서 분석할 각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세부담의 절대적 크기', 각 세목별 세수비중을 '세부담의 상대적 크기'로 보면 스웨덴의 간접세는 직접적, 상대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부담수준이 높으며, 직접세는 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직접적으로는 높음
- 상대적인 직접세 부담크기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으나 절대적 크기는 OECD에 비해 매우 높아, 타국에 비해 스웨덴의 직접세 부담수준은 결코 낮지 않음

나. 개인소득세

- 1982년 스웨덴은 ‘찬란한 밤(Underbara natten)’이라 불리는 세제개혁을 통해 한계세율 인하, 모호한 공제제도 재정비 등을 결정하였으나 실제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됨⁷⁸⁾
 - 1980년대 스웨덴의 개인소득세 한계세율은 최고 87%수준에 달했으며 해석이 모호한 각종 공제제도를 이용한 탈세가 이어짐
 - <표 IV-1>에서 볼 수 있듯 1982년 세제개정을 통해 소득구간 기준금액이 인상되었고 한계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됨
 - 1980년 14%, 58%였던 국세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이 1987년에 13%, 47%로 인하되었으며 동 기간 지방세율 역시 29.74%에서 30.44%로 10%p 이상 인하됨⁷⁹⁾
 - 한계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1987년도 개정을 통해 각종 예외 사항 및 공제제도(특히 이자공제)를 축소·폐지하여 충당함

- 1991년 ‘세기의 조세개혁’ 법안은 한계세율을 단순화하고 대폭 인하하는 동시에 세원을 확대하는 등 스웨덴 소득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임
 - 더 이상의 한계세율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여야의 공통 판단하에⁸⁰⁾ 한계세율을 대폭 인하함
 - 저소득층에는 지방세만 징수하고 고소득층에 20%의 국세를 추가 징수함
 - 1982년 개정 이후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축소하여 과세베이스를 높이고 세제개혁을 통해 경제 효율성을 진작함⁸¹⁾
 - 기존에는 부가급여 및 이자지출 등 저과세 부문에 투자가 몰려 자원배분 효율성이 저하되고 근로소득 및 일반금융저축에 대한 과세부담이 과중됨⁸²⁾

78) 박노호(1994), p.49

79) Henrekson, M., and Stenkula, M.(2015), p.13

80) 은민수(2012), p.141

81) Edlund, J.(2000), p.41

- 1991년 개정은 모든 소득의 일률적 비례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 그룹 간의 수평적 형평성을 향상시키고자 함⁸³⁾
- 모든 비금전적 급부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되고 모든 부류의 개인소득은 소득세·사회보장부담금·특별급여세 부과대상이 됨
 - 자본소득을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30%의 일률 비례과세 대상으로 규정함

〈표 VI-1〉 스웨덴의 개인소득세 연혁

(단위: %)

적용 연도	개인소득세율					적용 연도	개인소득세율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²⁾
	0.67APW ¹⁾	1APW	1.67APW	최고세율				
1980		30.0			29.09	1999		31.48
1981	14.0	26.0	53.0	58.0	29.55	2000		30.38
1982		29.0			29.74	2001		30.53
1983	10.0	23.0	45.0	54.0	30.15	2002		30.52
1984	7.0		40.0	52.0	30.30	2003		31.17
1985	4.0	20.0	35.0	50.0	30.38	2004		31.51
1986	15.0		40.0		30.34	2005-2006		31.60
1987	13.0		45.0	47.0	30.44	2007		31.55
1988	20.0		42.0	45.0	30.56	2008	0%/20.0%/25.0%	31.44
1989	17.0	17.0	42.0	30.80	2009	31.52		
1990	10.0	24.0	35.0	31.16	2010	31.56		
1991				31.15	2011	31.55		
1992					2012	31.60		
1993		0%/20.0%			31.04	2013		31.73
1994					31.05	2014		28.89
1995		0%/25.0%				2015		31.99
1996-1998					31.65	2016	32.10	

주: 1) APW(Wage level of an average production worker)는 생산성이 평균수준인 근로자의 일반적인 월급 수준을 의미하며, OECD Taxing wages 등 소득수준별 세부담 비교에 통용되는 기준임. 0.67APW, 1APW, 1.67APW는 각각 평균 소득수준 대비 67%, 100%, 167%수준인 근로자의 세 부담률을 의미함.

2) 지방세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표에 명기한 지방세율은 대표적 지방세율 (representative local tax rate)임

자료: OECD, Tax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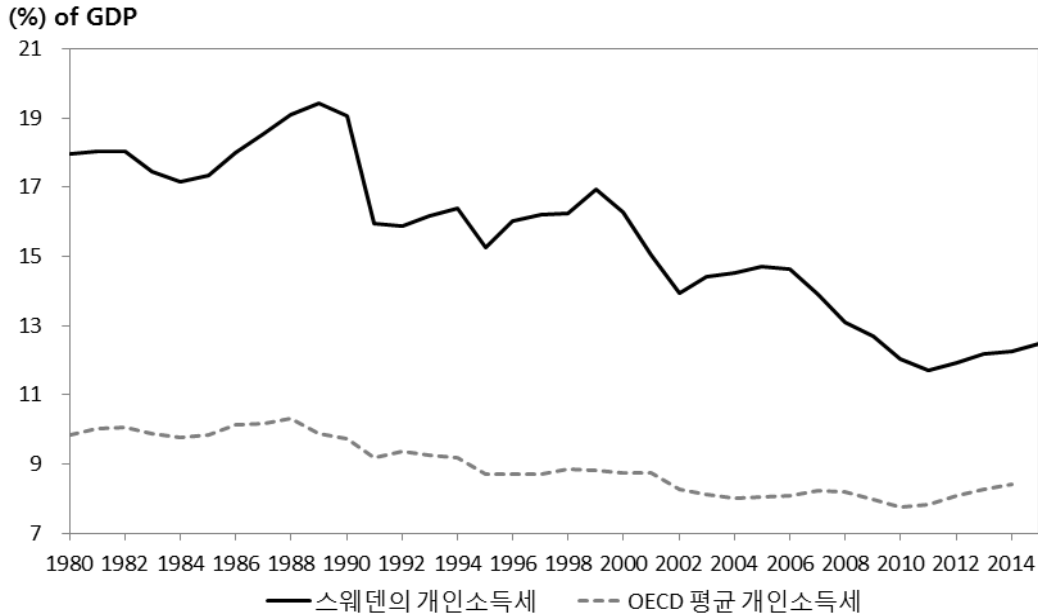
82) 박노호(1994), p.49

83) 박노호(1994), p.68

- 이후 소득세제의 누진성을 다소 회복시키는 소규모 개정을 이어나가면서 지금까지 1991년 조세개혁의 ‘세원 확대 및 세율 인하’라는 기본방향을 유지하고 있음
 - 1994년 재집권한 사민당은 높아진 실업률과 재정적자 규모를 극복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등 소득세제의 누진성을 다소 회복시킴
 - 국제 세율은 1991년 0%, 20%에서 1995년에 0%, 25%의 2단계 세제로 개정되었다가 1999년에 0%, 20%, 25%의 3단계 세제로 전환됨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5%p 인상된 것은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 의무를 준수하고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것임
 -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세율은 1991년 이래로 31%대를 유지하고 있음
 - 2008년에는 중하위계층에 대한 근로 소득공제를 확대하였고, 2009년에는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328,800크로나에서 380,400크로나로 인상함⁸⁴⁾
-
- 1980~2015년 동안 개인소득 조세부담률([그림 VI-5])의 추이를 보면 스웨덴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으나, 강한 하락세를 보이며 OECD 평균 수준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OECD 평균 개인소득세 세수가 대체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 스웨덴은 1991년, 1995년, 1999년, 2006년, 2011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하락세와 약한 회복세를 반복하며 전반적으로 강한 하강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강한 하강추세는 주로 스웨덴의 개인소득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8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07(15)

[그림 VI-5] 스웨덴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다. 법인소득세

- 스웨덴의 법인소득세율은 1991년 조세개혁 이전과 이후 모두 대체로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두 세율 간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1990년 66.2%에서 2014년 현재 56%대를 유지한 데 비해 법인소득세 최고세율은 1990년 57.1%에서 2014년 현재 22.0%로 급감함

- <표 VI-2>를 보면 스웨덴의 법인소득세율은 1991년 조세개혁을 통해 53%에서 30%로 대폭 인하된 후 하락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6년 현재 22.0%로 OECD 평균 24%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 1984년에 최고 수준 62.2%를 기록하였던 법인소득세율은 지속적인 인하 과정을 거쳐 1991년 30%, 1994년에는 28%, 2009년에는 26.3%, 2013년에는 22%로 조정됨

○ 1981~1990년 기간 OECD 회원국 중 스웨덴의 법인소득세율은 2, 3위의 수준으로 높았으나 1991년 조세개혁을 통해 세율을 인하한 후 21위 수준에 안착함

〈표 VI-2〉 스웨덴의 법인소득세 연혁

(단위: %)

적용연도	종합법인 소득세율			적용연도	종합법인 소득세율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1981~1982	57.8	40.0	29.6	1991~1993	30.0	30.0	-3)
1983	58.1	40.0	30.2	1994~2008	28.0	28.0	
1984~1988	56.6	52.0	-1)	2009~2012	26.3	26.3	
1989	60.1	52.0	-2)	2013~2016	22.0	22.0	
1990	53.0	40.0					

주: 1) 1984년부터 법인소득 지방세는 폐지되었으며 법인소득세(중앙정부)를 납부한 뒤의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법인이익에 대해 20%를 가산하는 이윤공유세(profit-sharing tax)가 도입됨. 이윤공유세 납부금액은 익년도 법인소득세액에서 공제됨

2) 1984년과 동일하게 이윤공유세가 적용되었으며, 1989년과 1990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특별 이윤공유세가 도입되어 종합 법인소득세율이 약 4%p 가산됨

3) 1991년부터 이윤공유세와 특별 이윤공유세는 폐지됨

자료: OECD, Tax Database

□ 1991년 조세개혁 이전 기존의 스웨덴 법인세제는 다양한 투자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동시에 법인소득에 대한 고세율 정책을 지향함

○ 스웨덴 경제는 대외 의존도 및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 조세제도 및 연대임금제 등의 제도는 대기업의 성장을 육성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음

- 연대임금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나 개별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존재함⁸⁵⁾

- 또한 1980년대부터 세계화로 인해 특히 글로벌 대기업 측의 노동시장 내 협상력이 근로자 측의 협상력을 압도하기 시작하여 연대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 데 유리하게 작용함

○ 1991년 개혁 이전 스웨덴은 기업의 직접적 이익으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부과하는 대신 재투자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허용하여 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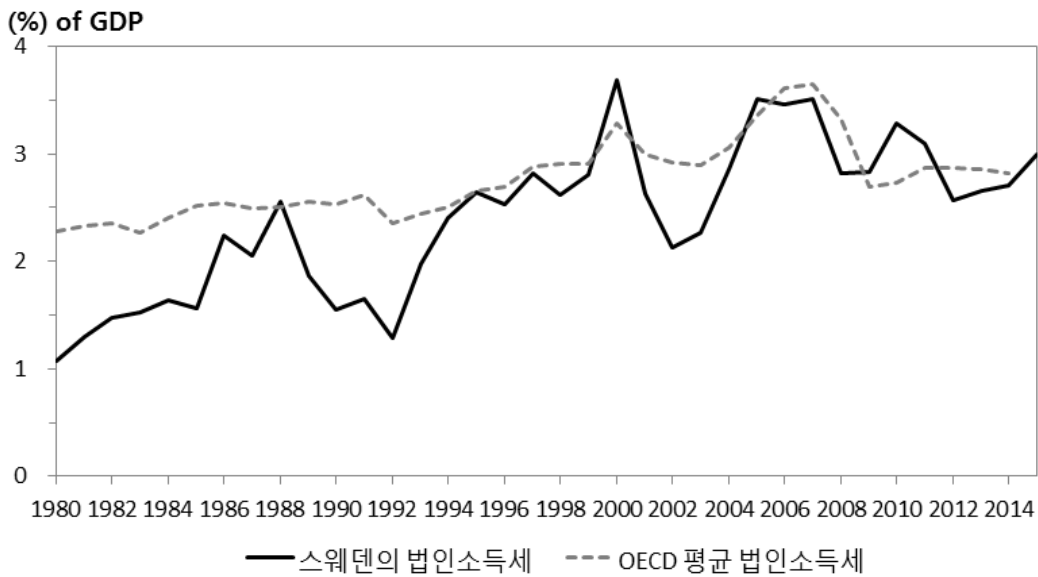
85) 이장원 · 전명숙 · 조강윤(2014), p.64

보다 기업 내 재투자를 장려함⁸⁶⁾

- 신주발행투자와 유보이익 간에는 1990년 기준 각각 131.0%, 62.9%로 매우 차별적인 세율이 적용됨
- 1991년을 기점으로 세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격차 역시 대폭 축소되어 2013년 현재 35.3%, 23.2%의 세율이 적용됨

- 1991년 조세개혁은 법인소득세율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납세회피책으로 이용되어 온 투자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하여 세원을 확대함
- 1980년대부터 기존의 법인소득세 공제제도가 기업의 과도한 내부유보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대두되었음
- 1991년 조세개혁은 당시 국제적인 법인소득세율 인하 경쟁과도 흐름을 같이함

[그림 VI-6] 스웨덴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86) Henrekson, M., and Stenkula, M.(2015), p.139

- [그림 VI-6]을 보면 스웨덴 법인소득의 조세부담률은 1980~2015년 동안 OECD 평균과 유사한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변동 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 법인소득의 조세부담률은 1980년대 후반 2.5%에서 1990년대 초반 1.2%까지 그 비중이 하락하였으나 2014년 현재 3.0%수준을 회복함

- 스웨덴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1990년대 이전까지는 매우 낮은 편이었으나 1991년 조세개혁 이후로 높은 증가세를 보여 2014년 기준 OECD 평균 2.8%에 근접한 2.7%를 기록함
 - 1991년에 조세개혁을 통해 법인소득세율이 대폭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까지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상승함
 - 법인소득의 조세부담률은 2001년의 IT버블 붕괴,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2011년의 유럽 재정위기 직후 급락하였으나 이후 점진적 회복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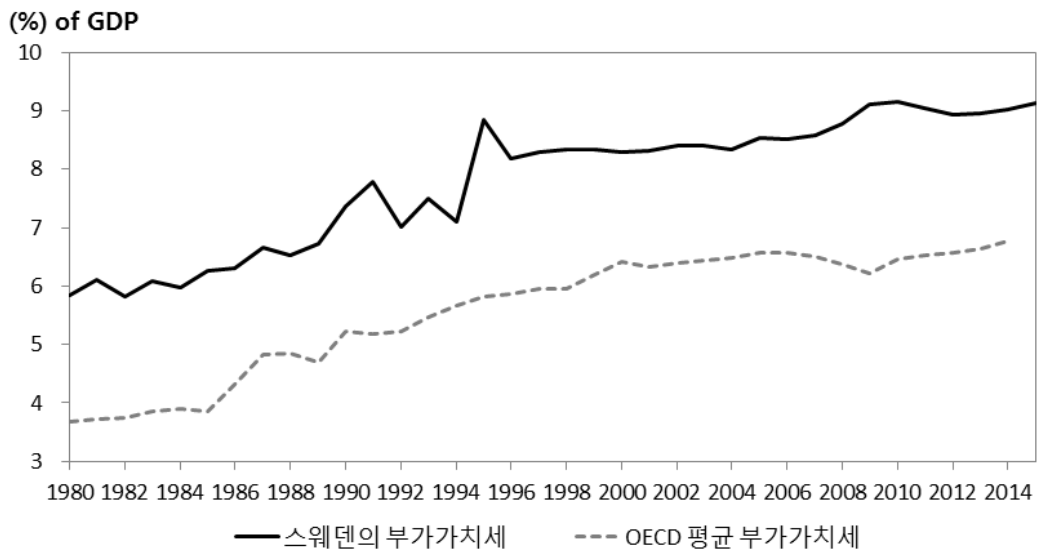
- 스웨덴은 세제를 통해 대기업과 같은 효율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다시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통해 복지재원으로 환원시켜 고부담·고복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스웨덴의 법인소득세 비중 및 법인소득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나 급여세(payroll tax) 중 고용주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임
 - 2015년 현재 고용주와 피고용자에게 부과되는 급여세(payroll tax) 세율은 각각 피고용자 임금의 31.41%, 7%로 대부분이 고용주에 의해 부담되고 있음
 - 급여세(payroll tax)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 4.6%였으며, 세수비중은 16.7%로 OECD 평균 0.4%, 15%에 비해 높은 편임

라. 부가가치세

- 스웨덴의 소비 조세부담률은 1980년 5.9%에서 2014년 9.1%로 증가하여 동 기간 3.7%, 6.8%였던 OECD 평균의 약 1.5배에 달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림 VI-7]을 보면 1990년에 부가가치세율 인상 이후 스웨덴의 소비 조세부담률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1995년 이후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전체 세수구조상 간접세인 소비세보다 직접세인 소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2014년 기준 간접세와 직접세의 조세부담률은 9.0%, 14.9%이며 총세수 중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중은 28.4%와 34.9%임

[그림 VI-7] 스웨덴의 소비 조세부담률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스웨덴은 1969년에 4.2%였던 판매세를 10%의 부가가치세(VAT)로 전환하면서 처음 소비세를 도입하였고, 1971년 17.7%였던 일반 소비세율을 1980년에 23.5%, 1990년에는 25%로 대폭 인상하여 사회보장지출 재원을 확보함
- <표 V-3>에서 볼 수 있듯 금융위기 직후인 1992년에 한시적으로 식료품, 음식업, 숙박업 등에 대해 18%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으며 1994년부터 1996년에 걸쳐 각 항목별로 6~12%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함
- 의료, 교육 및 금융업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표 VI-3〉 스웨덴의 부가가치세 연혁

(단위: %)

연도	항목 일반	경감세율												
		식료품	식당	숙박업	운수업	항공업	신문	영화	공연	스포츠	입장료	도서		
1971~1976		17.7												
1977~1980		20.6												
1981~1990		23.5												
1991	25	25	25	25	25	25								
1992		18	18	18	18	18								
1993		21	21	21	21	21	0	0	0	0	25	25		
1994														
1995					12									
1996						12								
1997~2000					12									
2001		12	25	12			6	6	6	6	6	6		
2002~2006													6	
2007~2011														6
2012~2015	12													

자료: Stenkula, M.(2015), pp.179~221과 Skatteverket(2015)에 기초하여 필자 작성

3. 소결

- 스웨덴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세개혁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직접세의 비중은 낮아지고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짐
 - 1991년도 세기의 조세개혁을 통해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이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절하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는 두 배 이상 절상됨
 - 스웨덴 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임

- 스웨덴 조세구조의 역진성은 1990년대 이후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누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복지지출 역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각 세목별 조세부담률과 각 세목별 세수비율을 비교해보면 스웨덴의 직접세부담은 상대적으로 경감되었으나 절대적으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함

- 2015년도 스웨덴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1980년, 1990년과 비슷한 26.7%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스웨덴은 개인소득세에 대해 1991년 조세개혁의 '세원 확대 및 세율 인하'라는 기본방향을 유지하고 있음
 - 1991년 조세개혁을 통해 조세제도의 단순화 및 세율 인하가 단행되었으며 그 결과 개인소득 조세부담률과 개인소득세 세수비중은 각각 1980년 18.0%, 41.0%에서 2014년 12.2%, 28.6%로 하락함
 - 이후 세율의 소폭 인상 및 두 차례의 정권 교체가 있었으나 '세원 확대 및 세율 인하'라는 기본방향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
- 스웨덴의 법인소득세는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기업소득을 환원시키고 있음
 - 스웨덴은 대외 의존도 및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상 조세제도 및 연대소득제 등 각종 제도를 대기업 성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함
 - 스웨덴의 법인소득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데 반해, 법인소득 조세부담률과 법인소득세 세수비중은 경기변동을 전후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각각 1980년 1.1%, 2.5%에서 2014년 2.7%, 6.3%로 상승함
 - 2014년 현재 고용주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의 조세부담률과 세수비중은 각각 4.6%, 16.7%로 OECD 평균 0.4%, 14.7%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에 대한 법인의 조세 기여도는 낮다고 할 수 없음
- 스웨덴의 소비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으나, 소비세 세수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임
 - 이는 스웨덴 조세구조의 직접세, 그 중에서도 개인소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임
 - 스웨덴의 소비 조세부담률은 1980년 5.8%에서 2014년 9.0%로 증가하였으며 동 시

기 OECD 평균 소비 조세부담률은 3.7%에서 6.8%로 증가함

- 한편 소비세 세수비중은 1980년 24.0%에서 28.4%로 증가하였으며 동 시기 OECD 평균이 32.6%를 유지한 것에 비하면 스웨덴의 상대적인 소비세 의존도는 낮은 편이나 그 격차가 좁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Ⅷ. 요약 및 시사점

1. 국가별 조세부담률 변화

-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2005년 이후 18%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민부담률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보면, 소비의 조세부담률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개인소득이나 법인소득의 조세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총조세수입에서 사회보장기여금,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였음
 - 반면 부가가치세와 기타 소비세를 합산한 소비세수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OECD 평균 수준보다 낮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1980년 이후 18%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국민부담률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보면,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과 함께 소비의 조세부담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개인소득이나 법인소득의 조세부담률은 1990년대에 대체로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임
 - 총조세수입에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의 비중을 현저히 증가하였음

- 영국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1980년대 초반 28~30%수준에서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2000년대 들어서는 약 26%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2000년대 들어 약 32% 내외로 유지됨
 -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보면, 2008년 이후 세율 조정과 함께 부가가치세의 부담률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개인소득의 조세부담률은 소폭 감소한 반면, 법인소득의 조세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감소하였음
 - 총조세수입에서 개별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부터 최근까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다른 세목과 비교하여 소비세의 비중이 약간 증가하였음
 - 전반적으로 사회보장부담금,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비중은 OECD 평균 수준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1981년 약 11%에서 1989년 약 21%까지 빠르게 증가하였고, 1990년 이후에는 22%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2000년대 들어 약 32% 내외로 유지됨
 -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보면, 2008년 국제 금융위기와 유럽 통화위기를 전후로 개인 소득이나 소비의 조세부담률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회복된 것을 빼고는 최근 들어서는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음
 - 다만 법인소득의 조세부담률은 2008년 이전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총조세수입에서 개별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비중은 작은 반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현저히 크게 나타남
- 독일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약 22%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민부담률도 36%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부담률의 변화가 경제성장률의 변화와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1990년 독일 통일을 전후해서도 조세부담률에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 세목별 조세부담률도 시기에 따른 큰 변화가 없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개인소득이나 법인소득의 조세부담률은 미미하게나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가가치세의 부담률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총조세수입에서 개별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시기별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지만,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할 때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비중은 낮고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높은 것을 확인하였음

□ 스웨덴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평균적으로 약 33%에 해당하였지만, 시기별로 부담률의 등락이 크게 관찰되었음

- 특히 1986년과 1999년을 전후하여 조세부담률이 37%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는데, 경제성장률과도 상당한 관련성을 보임
- 국민부담률은 1990년 약 49%에서 2015년 약 43%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임
-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보면, 개인소득의 조세부담률은 최근 들어 뚜렷이 감소하였고, 법인소득과 소비의 조세부담률은 증가하였음
- 총조세수입에서 개별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남

2. 조세제도 변화와 부담률 변화

□ 개별 조세부담률을 볼 때, 대체로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시기적으로 세율의 변동과 같은 조세정책에 따른 큰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움

- 일본은 1989년과 1999년의 개인소득세율 인하 시기에도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개인소득세율이 인하되었지만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증가한 반면, 2008년 이후에는 세율이 인상되었으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감소추세를 보임
- 스페인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개인소득세율 인상 시기에 개인소득 조세부담률도 함께 증가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의 각종 공제제도를 폐지한 시기에는 조세부담

률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 독일은 3단계 조세부담경감법 도입을 통해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였으나 오히려 이 시기에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상승하였음
 - 스웨덴에서 1991년에 개인소득세율을 20%p 정도 대폭 인하함에 따라 개인소득 조세부담률 역시 급감하였으며, 이후 1995년과 1999년에 세율을 소폭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개인소득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세율 조정보다 경기 변동에 따라 더욱 민감하게 변화하며, 특히 경제위기 또는 경기 침체가 있으면 빠르게 감소하였다가 천천히 회복하는 경향을 보임
- 일본은 1998년과 1999년의 두 차례에 걸친 세율 인하에도 조세부담률에 큰 변화가 없었고 2000년대에는 세율 변경이 없었지만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크게 증가하였음
 - 영국은 1992년 통화위기(이른바 ‘검은 수요일’ Black Wednesday)를 전후하여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이 급락하기도 하였음
 - 스페인은 1995년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법인소득세 개혁으로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이 크게 증가하였다가 금융위기를 맞아 급락하였음
 - 독일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경제위기가 발발한 1999, 2001, 2008년도에 0.7%p 이상의 큰 낙폭을 보임
 - 스웨덴은 1991년 법인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였으나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은 2000년까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1, 2008, 2011년 세 차례의 국제경제 위기 직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음
- 요약하자면, 개인소득 조세부담률과 법인소득 조세부담률이 각 세목의 세율 조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던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웠음
- 이는 아마도 개인소득세나 법인소득세의 부담 수준이 세율뿐만이 아니라 각종 공제 제도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면서, 공제를 확대하거나 신설하면 오히려 소득세 부담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음

- 이와 함께 개인소득이나 법인소득의 크기가 거시경제의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이러한 거시 변수가 조세부담 수준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조세부담률과 세율 사이의 관련성이 더욱 적어질 수 있음

□ 소비 조세부담률은 세율 변동과 비교적 밀접한 관련성을 보임

- 일본은 소비세 도입 이후 1997년과 2014년 두 차례의 세율 인상이 있었고 세율이 인상된 연도와 그 다음연도 2개 연도에 걸쳐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 영국은 세율이 8%에서 15%로 인상되었던 1980년대 초반과 17.5%로 인상되었던 1991년과 20%로 인상된 2011년 직후에 소비세 조세부담률이 크게 증가하였음
- 스페인의 경우 1986년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총소비 조세부담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총소비 조세부담률이 1980년 4.6%에서 부가가치세 도입 직후인 1990년에는 9.0%로 증가하였고 2015년 현재는 9.9%임
- 독일은 1993년, 1998년, 2007년에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였는데, 앞의 두 인상조치는 소비 조세부담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2007년에 부가가치세를 16%에서 19%로 인상한 후 소비 조세부담률은 6.1%에서 2014년 현재 7.0%로 약 0.9%p 인상됨
- 스웨덴은 1990년에 부가가치세율을 25%로 인상한 결과 1980년 5.8%였던 소비 조세부담률이 1991년에 7.8%, 2014년에 9.0%로 증가하여 분석기간 내 약 3.2%p 상승함

참고문헌

- 국중호,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재정개혁과 세제개편』, 한국조세연구원, 1998.
- _____,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권오성, 「스페인의 조세개혁」, 『OECD국가의 최근 조세개혁 논의 동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 김영태, 「독일의 세제 개혁과 정당경쟁」, 강원택 (편),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2007.
- 김상철, 「독일 복지재정의 구조와 변화에 관한 연구」, 『경상논총』, Vol. 34, No. 4, 한독경상학회, 2016, pp.55~85.
- 김유찬, 『한국과 독일의 최근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대외경제연구원, 2001.
- _____, 『독일통일 이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예산처, 2014.
- _____, 「독일의 재정정책의 변화와 쟁점에 대한 고찰」, 『경상논총』, Vol. 34, No. 4, 한독경상학회, 2016, pp.233~253.
- 김유찬 · 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김인춘, 「스웨덴의 복지체제와 재정 - 복지재정과 국민부담의 조화」, 한국유럽학회(편), 『(복지국가시대를 위한) 유럽 복지정책의 변화와 아시아의 경험』, 유럽학연구총서, No. 5, 한국유럽학회, 2012, pp.13~52.
- 박노호, 『스칸디나비아 삼국의 조세제도: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1994.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박형수,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적정수준 분석」, 『재정포럼』, Vol. 10, No. 6, 한국조세연구원, 2004, pp.30~57.
- 박형수 · 이은경,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시사점」, 『조세·재정 BRIEF』, 한국조세연구원, 2010.2.
- 손원익 · 송은주 · 박수진, 『주요국의 연구개발(R&D) 조세지원 대상 비용 조사』, 한국

- 조세연구원, 2012.
- 안중석, 「조세·국민부담률 변화 과정과 평가, 시사점」, 『한국경제포럼』 Vol. 10, No.1, 한국경제학회, 2017, pp.51~78.
- 유경진,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KERI Brief』, Vol. 17, No. 4, 한국경제연구원, 2017.
- 은민수, 「복지국가의 조세정치: 영국과 스웨덴의 조세개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 39, No. 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pp.125~155.
- 이성봉, 「EU 주요국의 법인소득 이중과세 관련 제도분석 및 한국과의 비교에 관한 연구」, 『EU학연구』, Vol. 6, No. 1, 한국EU학회, 2001, pp.121~150.
- 이장원·전명숙·조강윤, 『격차축소를 위한 임금정책: 노사정 연대임금정책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14.
- 이현대·조윤수, 「통일 후 독일경제의 교훈」, 『한국경제포럼』, Vol. 6, No. 1, 한국경제학회, 2013, pp.69~79.
- 주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 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 주 스웨덴 대사관, 2006, DOI: <http://archives.knowhow.or.kr/policy/all/view/2056033?page=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07(15); 08(01); 09(20); 12(01); 12(08); 12(09); 12(11); 14(07), 각 년도.
- _____, 『KIPF 재정동향』, Vol. 2, No. 4, 2011.12, DOI: <http://www.kipf.re.kr/storage/Publish/Attach/Old/pdf/634621476853427500.pdf>
- 홍성훈·성명재, 『부가가치세 발전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12.
- 홍승현, 「유럽위기의 최근 동향 및 유럽의 회원국 재정관리 제도」, 『재정포럼』, Vol. 12, No. 7, 한국조세연구원, 2012.7.
- 井上徹二, 「イギリス税制:我が国の税制改革に与える示唆」, 『川口短大紀要』, Vol. 24, 埼玉学院大学, 2010, DOI: http://www.media.saigaku.ac.jp/bulletin/pdf/kjc/vol24/business/02_inoue.pdf
- 江島一彦 編著, 『図説日本の税制』, 財経詳報社, 2015.
- 橋本恭之, 「イギリスの税制改革」, 『総合税制研究』, Vol. 10, 清文社, 2002, pp.137~153.

長谷川卓, 「定率減税の縮減とその影響」, 『ISSUE BRIEF』, Vol. 471, 国立国会図書館, 2005.2. DOI: <http://warp.da.ndl.go.jp/info:ndljp/pid/287276/www.ndl.go.jp/jp/data/publication/issue/0471.pdf>

Bethusy-Huc, V., *Familienpolitik: aktuelle Bestandsaufnahme der familienpolitischen Leistungen und Reformvorschlage*, Mohr Siebeck, 2016.

Edlund, J., “Public attitudes towards taxation: Sweden 1981-1997,”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Vol. 23, No. 1, 2000, pp.37~65.

Gadatsch, N., Stähler, N., and Weigert, B., “German labor market and fiscal reforms 1999-2008: Can they be blamed for intra-euro area imbalances?,” *Journal of Macroeconomics*, 50, 2016, pp.307~324.

Henrekson, M., and Stenkula, M., “Swedish Taxation Since 1862: An Overview,” IFN Working Paper, IFN, No.1052, 2015.

_____, *Swedish Taxation: Developments Since 1862*, Springer, 2015.

HMRC, *Corporate Tax Reform: delivering a more competitive system*, HM Treasury and HM Revenue and Customs, 2010.

Johnson, P., Frances L., and John G. W., “Income tax and elections in Britain, 1950-2001,” *Electoral Studies*, Vol. 24, No. 3, 2005, pp.393~408.

Kato, Junko, *Regressive Taxation and the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Martinez-Vazquez, Sanz-Sanz, and José Félix, Jorge, *The Spanish Tax Reform: Overview and Lessons*, Georgia State University, 2007.

OECD, *Consumption Tax Trends*, OECD Publishing, Paris, 2016.

Stenkula, M. *Taxation of Goods and Services in Sweden (1862-2013)*, Palgrave Macmillan, 2015.

The Swedish Tax Agency(Skatteverket), *VAT Brochure*, Skatteverket, 2015.

_____, *Taxes in Sweden- Tax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2015*, Skatteverket, 2016.

주스웨덴 대사관, 「스웨덴 경제 개요」, 2006.

http://swe.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555&seqno=714902&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검색일자: 2017. 8. 10

외교부, 「독일의 재정구조와 재정개혁 및 조세개혁」, 2007. 12. 26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782&seqno=3970&c=TITLE&t=%EC%9E%AC%EC%A0%95%EA%B5%AC%EC%A1%B0&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vu=&iu=&du=, 검색일자: 2017. 8. 10

통계청, 『무역의존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806&conn_path=I2, 검색일자: 2017. 6. 7

KOTRA, 「스페인 조세제도 개혁안 발표」, 2009. 9. 30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92583&column=title&search=&searchAreaCd=10003&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816&row=10>, 검색일자: 2017. 8. 10

財務省, 「平成10年度税制改正の概要」, 1999.

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trend/sy004a1.htm, 검색일자: 2017. 8. 10

Institute of Fiscal Studies, <https://www.ifs.org.uk/>

〈부표 1〉 한국의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단위: %, 십억원)

연도	경제 성장률	조세수입				조세부담률				비고
		총조세수입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총조세	개인소득	법인소득	소비	
1979	8.4	5,437	708	674	1,089	16.9	2.2	2.1	3.4	
1980	-1.9	6,687	766	738	1,471	16.9	1.9	1.9	3.7	
1981	7.4	8,277	1,024	934	1,805	16.8	2.1	1.9	3.7	
1982	8.3	9,648	1,230	1,102	2,094	17.0	2.2	1.9	3.7	
1983	12.2	11,603	1,404	1,170	2,559	17.2	2.1	1.7	3.8	
1984	9.9	12,586	1,522	1,301	2,704	16.2	2.0	1.7	3.5	
1985	7.5	13,766	1,845	1,574	2,901	15.8	2.1	1.8	3.3	
1986	12.2	15,686	2,238	1,666	3,272	15.4	2.2	1.6	3.2	
1987	12.3	18,834	2,856	2,377	3,651	15.7	2.4	2.0	3.0	
1988	11.7	22,431	3,544	2,967	4,205	15.6	2.5	2.1	2.9	국민연금제도 도입
1989	6.8	26,705	4,491	4,285	5,290	16.3	2.7	2.6	3.2	
1990	9.3	37,262	7,440	4,757	6,964	18.8	3.8	2.4	3.5	
1991	9.7	44,287	8,205	4,838	8,253	18.5	3.4	2.0	3.5	
1992	5.8	50,408	8,591	6,330	10,076	18.4	3.1	2.3	3.7	
1993	6.3	58,205	10,146	6,279	11,688	18.8	3.3	2.0	3.8	
1994	8.8	69,171	12,076	7,897	13,058	18.9	3.3	2.2	3.6	
1995	8.9	82,003	14,850	9,552	14,637	19.1	3.5	2.2	3.4	
1996	7.2	95,025	16,270	10,513	16,790	19.8	3.4	2.2	3.5	
1997	5.8	102,916	16,543	10,158	19,488	19.4	3.1	1.9	3.7	
1998	-5.7	101,826	19,122	11,641	15,707	19.4	3.6	2.2	3.0	
1999	10.7	113,760	17,814	10,152	20,369	19.7	3.1	1.8	3.5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제도 도입
2000	8.8	136,295	19,950	19,271	23,212	21.5	3.1	3.0	3.7	
2001	4.5	149,899	21,160	18,387	25,835	21.8	3.1	2.7	3.8	
2002	7.4	167,242	21,287	21,314	31,609	22.0	2.8	2.8	4.1	
2003	2.9	184,146	23,245	28,149	33,447	22.7	2.9	3.5	4.1	
2004	4.9	192,384	26,113	27,426	34,572	22.0	3.0	3.1	3.9	
2005	3.9	207,345	27,570	33,039	36,118	22.5	3.0	3.6	3.9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2006	5.2	227,592	34,593	32,563	38,093	23.6	3.6	3.4	3.9	
2007	5.5	258,571	43,276	38,963	40,942	24.8	4.1	3.7	3.9	
2008	2.8	272,201	40,910	43,409	43,820	24.6	3.7	3.9	4.0	
2009	0.7	273,647	38,618	39,279	46,992	23.8	3.4	3.4	4.1	
2010	6.5	295,968	42,098	40,807	51,800	23.4	3.3	3.2	4.1	신용카드 공제 대상금액을 25% 초과분으로 축소
2011	3.7	321,915	47,299	49,546	54,868	24.2	3.5	3.7	4.1	
2012	2.3	341,336	51,185	50,759	58,702	24.8	3.7	3.7	4.3	
2013	2.9	347,332	53,311	48,481	59,105	24.3	3.7	3.4	4.1	
2014	3.3	365,428	59,457	46,896	62,975	24.6	4.0	3.2	4.2	
2015	2.6	393,558	68,625	50,525	60,162	25.3	4.4	3.2	3.9	

〈부표 2〉 일본의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단위: %, 십억엔)

연도	경제 성장률	조세수입				조세부담률				비고
		총조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총조세	개인소득	법인소득	소비	
1979	5.5	55,041	13,054	11,427	..	16.9	5.6	4.9	0.0	
1980	2.8	62,443	15,180	13,620	..	17.5	6.0	5.4	0.0	
1981	4.2	68,262	16,981	13,845	..	17.8	6.3	5.2	0.0	
1982	3.4	72,574	18,391	14,338	..	18.1	6.6	5.1	0.0	
1983	3.1	77,157	19,717	15,128	..	18.4	6.7	5.2	0.0	
1984	4.5	82,837	20,264	17,495	..	18.6	6.5	5.6	0.0	개인소득세를 인하
1985	6.3	89,589	22,168	18,822	..	18.6	6.6	5.6	0.0	
1986	2.8	96,181	24,085	19,878	..	19.4	6.9	5.7	0.0	
1987	4.1	105,034	25,307	23,958	..	20.4	6.9	6.5	0.0	개인소득세를 인하
1988	7.1	114,218	26,502	28,206	..	20.9	6.7	7.2	0.0	
1989	5.4	123,699	30,505	30,030	4,087	21.1	7.2	7.1	1.0	소비세 도입
1990	5.6	130,823	36,394	29,288	5,778	21.0	7.9	6.4	1.3	법인소득세를 인하
1991	3.3	135,504	37,751	28,131	6,220	20.4	7.9	5.9	1.3	
1992	0.8	130,688	34,599	23,472	6,551	18.8	7.1	4.8	1.3	
1993	0.2	130,440	35,030	20,411	6,983	18.6	7.2	4.2	1.4	
1994	0.9	127,845	30,438	19,751	7,039	17.5	6.1	4.0	1.4	
1995	2.7	133,277	29,798	21,210	7,238	17.6	5.9	4.2	1.4	개인소득세 구간조정
1996	3.1	136,393	28,664	23,365	7,571	17.5	5.6	4.5	1.5	
1997	1.1	139,501	29,809	21,864	10,112	17.6	5.7	4.2	1.9	소비세를 인상
1998	-1.1	134,914	26,516	18,854	12,625	17.1	5.2	3.7	2.5	법인소득세를 인하
1999	-0.3	131,416	24,761	17,387	12,926	16.6	4.9	3.4	2.6	개인소득세율, 법인소득세율 인하
2000	2.8	136,125	28,677	18,721	12,350	17.3	5.6	3.7	2.4	
2001	0.4	134,663	27,538	17,422	12,242	17.0	5.5	3.5	2.4	
2002	0.1	128,266	23,620	15,614	12,236	15.9	4.7	3.1	2.5	
2003	1.5	127,003	22,239	16,547	12,106	15.5	4.4	3.3	2.4	
2004	2.2	131,132	23,295	18,651	12,588	16.2	4.6	3.7	2.5	
2005	1.7	137,939	25,222	21,408	13,135	17.2	5.0	4.2	2.6	
2006	1.4	143,001	26,375	24,250	13,092	17.8	5.2	4.8	2.6	
2007	1.7	146,243	28,600	24,573	12,841	18.1	5.6	4.8	2.5	
2008	-1.1	139,616	27,790	19,061	12,443	17.4	5.7	3.9	2.5	
2009	-5.4	127,768	25,518	12,221	12,221	15.9	5.4	2.6	2.6	
2010	4.2	132,480	24,663	15,372	12,675	16.2	5.1	3.2	2.6	
2011	-0.1	135,668	24,951	15,959	12,745	16.7	5.3	3.4	2.7	
2012	1.5	139,578	25,946	17,406	12,902	17.2	5.5	3.7	2.7	법인소득세율 인하
2013	2.0	146,401	28,150	19,384	13,479	18.0	5.8	4.0	2.8	
2014	0.3	156,867	29,655	20,284	19,135	19.3	6.1	4.1	3.9	소비세율 인상
2015	1.2	..	30,541	21,329	21,984	..	6.1	4.3	4.4	개인소득세율 인상, 법인소득세율 인하

〈부표 3〉 영국의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단위: %, 십억파운드)

연도	경제 성장률	조세수입				조세부담률				비고
		총조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총조세	개인 소득	법인 소득	소비	
1979	3.7	64	21	5	8	25.3	10.1	2.4	3.8	
1980	-2.0	81	24	7	12	27.8	9.8	2.8	4.9	
1981	-0.8	93	27	8	13	28.9	10.2	3.1	4.9	
1982	2.0	108	30	10	14	30.4	10.3	3.6	4.9	
1983	4.2	113	32	12	16	28.8	9.8	3.7	5.02	
1984	2.3	122	33	14	18	28.9	9.4	4.0	5.3	
1985	4.2	134	35	17	21	28.8	9.1	4.4	5.6	
1986	3.2	146	40	15	23	29.0	9.8	3.7	5.5	
1987	5.4	155	41	16	25	27.8	9.1	3.6	5.5	
1988	5.8	173	45	19	29	27.6	8.9	3.7	5.6	개인소득세를 인하
1989	2.6	187	49	23	32	27.3	8.6	4.1	5.6	
1990	0.7	202	60	20	34	27.3	9.7	3.3	5.5	
1991	-1.1	205	60	17	38	26.1	9.3	2.6	5.8	
1992	0.4	208	62	13	41	25.4	9.2	1.9	6.1	통화 위기
1993	2.5	211	62	13	42	24.3	8.7	1.8	5.9	
1994	3.9	228	67	15	45	25.0	8.9	2.1	6.0	
1995	2.5	250	72	20	48	24.5	8.6	2.4	5.7	개인소득세를 인하
1996	2.5	265	72	25	52	24.4	8.1	2.8	5.8	개인소득세를 인하 VAT 경감세를 인하
1997	3.1	284	73	32	54	24.9	7.8	3.4	5.8	GBP5,000 이자소득 비과세
1998	3.2	312	87	34	57	26.4	8.9	3.5	5.8	indexation 실시
1999	3.3	332	95	33	62	27.0	9.3	3.2	6.0	개인소득세 경감세를 도입, 근로세액공제 도입, 법인소득세를 인하
2000	3.7	355	104	34	64	27.3	9.6	3.2	5.9	개인소득세를 인하, 부녀자세액공제폐지, 법인소득 초기세를 도입
2001	2.7	369	111	35	67	27.3	9.9	3.1	6.0	
2002	2.4	372	111	30	71	26.3	9.5	2.6	6.1	소기업세를 인하
2003	3.5	392	113	31	77	25.8	9.1	2.5	6.2	
2004	2.5	419	120	34	82	26.1	9.2	2.6	6.2	
2005	3.0	448	130	42	83	26.4	9.4	3.0	6.0	
2006	2.5	484	140	52	88	27.1	9.6	3.6	6.0	개인소득세 경감세를 폐지 소기업세를 인상
2007	2.6	505	151	48	92	26.9	9.9	3.1	6.0	법인소득 초기세를 폐지
2008	-0.6	516	155	52	92	26.7	9.9	3.3	5.9	법인소득세를 인하
2009	-4.3	479	146	39	80	25.3	9.6	2.6	5.3	VAT표준세를 인하
2010	1.9	512	147	45	96	26.3	9.3	2.8	6.1	개인소득세 높은세를 신설, VAT표준세를 인상
2011	1.5	544	153	47	111	27.2	9.4	2.9	6.8	개인 소득세 높은세를 인상, 법인소득세를 인하, VAT표준세를 인상
2012	1.3	548	150	45	114	26.5	9.0	2.7	6.8	개인소득세기본세를 인하, 법인소득세를 인하
2013	1.9	565	156	44	118	26.4	9.0	2.5	6.8	법인소득세를 인하
2014	3.1	584	160	44	124	26.1	8.8	2.4	6.8	법인소득세를 인하
2015	2.2	608	169	46	129	26.5	9.1	2.5	6.9	

〈부표 4〉 스페인의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단위: %, 십억유로)

연도	경제 성장률	조세수입				조세부담률				비고
		총조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총조세	개인소득	법인소득	소비	
1979	0.0	18	3	1	0	10.7	4.0	1.1	0.0	
1980	2.2	22	4	1	0	11.3	4.5	1.1	0.0	
1981	-0.1	26	5	1	0	12.2	4.4	1.1	0.0	
1982	1.2	30	6	2	0	12.6	4.5	1.2	0.0	
1983	1.8	37	7	2	0	14.0	4.8	1.3	0.0	
1984	1.8	43	8	2	0	14.8	5.1	1.3	0.0	개인소득세를 인하
1985	2.3	49	10	3	0	15.9	5.2	1.4	0.0	
1986	3.3	59	10	3	9	17.4	4.9	1.6	4.2	
1987	5.5	71	15	5	11	19.1	6.4	2.0	4.8	
1988	5.1	79	17	5	13	19.4	6.5	2.0	4.9	개인소득세를 인하
1989	4.8	94	21	8	15	20.8	7.3	2.7	5.2	
1990	3.8	104	23	9	16	20.4	6.9	2.8	5.0	
1991	2.5	115	27	9	18	20.6	7.4	2.4	5.0	
1992	0.9	127	30	8	21	20.9	7.7	2.1	5.3	
1993	-1.0	128	31	7	19	19.9	7.7	1.8	4.7	
1994	2.4	136	32	7	21	20.1	7.4	1.6	5.0	
1995	2.8	144	34	8	23	20.0	7.4	1.7	5.0	VAT표준세를 인상
1996	2.7	151	34	9	25	19.8	7.1	1.8	5.0	
1997	3.7	166	36	13	27	20.8	7.0	2.5	5.2	개인소득세를 인하, 세율구간 조정
1998	4.3	179	37	13	30	21.0	6.7	2.3	5.4	
1999	4.5	198	39	16	34	21.7	6.5	2.7	5.8	개인소득세를 인하
2000	5.3	216	41	20	38	21.8	6.4	3.0	5.9	
2001	4.0	231	45	19	40	21.2	6.5	2.8	5.7	
2002	2.9	250	50	23	41	21.6	6.7	3.1	5.5	
2003	3.2	268	50	25	46	21.5	6.2	3.1	5.7	개인소득세를 인하
2004	3.2	295	54	30	52	22.5	6.3	3.5	6.0	
2005	3.7	329	60	36	58	23.5	6.5	3.9	6.2	
2006	4.2	364	70	42	63	24.3	6.9	4.1	6.2	
2007	3.8	395	81	51	63	24.7	7.5	4.7	5.8	개인소득세 최저세율 인상, 최고세율 인하
2008	1.1	361	78	32	55	20.5	7.0	2.9	4.9	법인소득세를 인하
2009	-3.6	323	71	25	41	18.1	6.6	2.3	3.8	
2010	0.0	341	74	21	57	19.8	6.9	1.9	5.3	개인소득세율, 법인소득세율, VAT세율 인상
2011	-1.0	337	77	20	55	19.7	7.2	1.9	5.2	결손금이월기간 연장
2012	-2.9	338	77	23	56	20.8	7.4	2.2	5.4	개인소득세율, VAT세율 인상
2013	-1.7	343	77	22	61	21.8	7.5	2.1	5.9	
2014	1.4	352	79	22	64	22.2	7.6	2.1	6.1	
2015	3.2	366	78	26	69	22.5	7.2	2.4	6.4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소득세율 인하

〈부표 5〉 독일의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단위: %, 십억유로)

연도	경제 성장률	조세수입				조세부담률				비고(세율 조정, 경제위기 여부)
		총조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총조세	개인소득	법인소득	소비	
1979	4.2	268.2	77.4	16.2	43.1	24.1	10.5	2.2	5.8	
1980	1.4	287.3	85.1	15.7	47.8	23.9	10.8	2.0	6.1	
1981	0.5	296.1	85.7	14.9	50.0	23.2	10.4	1.8	6.1	
1982	-0.4	305.7	88.0	15.6	50.0	22.8	10.2	1.8	5.8	부가가치세율 인상
1983	1.6	319.5	90.0	16.4	54.1	22.8	10.0	1.8	6.0	부가가치세율 인상
1984	2.8	336.4	93.9	18.1	56.5	22.7	10.0	1.9	6.0	
1985	2.3	355.2	101.8	21.7	56.2	22.9	10.3	2.2	5.7	
1986	2.3	371.6	106.1	22.2	56.8	22.5	10.2	2.1	5.5	
1987	1.4	386.5	112.4	19.5	60.7	22.8	10.6	1.8	5.7	
1988	3.7	403.8	116.6	21.5	63.0	22.5	10.4	1.9	5.6	개인소득 한계세율 조정
1989	3.9	435.0	128.4	24.0	67.2	23.1	10.7	2.0	5.6	
1990	5.3	454.8	125.3	22.0	75.5	21.8	9.6	1.7	5.8	법인소득세율 인하
1991	5.1	553.0	152.1	24.0	91.9	21.6	9.6	1.5	5.8	7.5%의 연대세 한시적 도입
1992	1.9	608.6	171.5	24.4	101.1	22.3	10.1	1.4	6.0	
1993	-1.0	626.5	170.8	22.7	110.6	22.1	9.8	1.3	6.3	부가가치세율 인상
1994	2.5	662.0	176.4	19.3	120.5	22.2	9.6	1.1	6.6	법인소득세율 인하
1995	1.7	688.0	189.1	19.2	120.0	22.1	10.0	1.0	6.3	7.5%의 연대세 재도입
1996	0.8	685.3	170.0	26.1	121.3	21.3	8.8	1.4	6.3	
1997	1.8	693.3	167.0	28.2	123.2	20.7	8.5	1.4	6.3	
1998	2.0	715.9	179.1	31.2	127.9	21.1	8.9	1.5	6.3	부가가치세율 인상 개인소득세 인하, 연대세 5%로 인하
1999	2.0	746.6	187.1	35.6	137.2	22.0	9.1	1.7	6.6	법인소득세율 인하
2000	3.0	767.0	194.2	37.1	140.9	22.1	9.2	1.8	6.7	
2001	1.7	763.1	207.0	12.7	138.9	21.1	9.5	0.6	6.4	개인소득세율과 법인 소득세율 인하, 배당 소득 세액공제 폐지 후 50%과세제도 도입
2002	0.0	759.7	190.7	21.7	137.1	20.5	8.6	1.0	6.2	
2003	-0.7	768.4	183.6	27.3	137.6	20.6	8.3	1.2	6.2	
2004	1.2	768.8	176.1	34.1	137.8	20.1	7.8	1.5	6.1	
2005	0.7	779.3	179.6	40.0	140.1	20.4	7.8	1.7	6.1	
2006	3.7	825.4	200.0	50.5	147.5	21.3	8.4	2.1	6.2	
2007	3.3	876.8	218.8	54.7	170.4	22.1	8.7	2.2	6.8	부가가치세 인상
2008	1.1	907.0	240.3	48.5	176.2	22.5	9.4	1.9	6.9	법인소득세율 및 영업세 인하, 부유세 도입,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신설
2009	-5.6	887.6	223.6	32.5	178.0	22.2	9.1	1.3	7.2	2009 유럽재정위기 발발, 배당소득 과세기준 인상
2010	4.1	903.2	219.4	38.4	180.5	21.3	8.5	1.5	7.0	
2011	3.7	965.1	238.7	45.4	190.2	21.9	8.8	1.7	7.0	
2012	0.5	1002.5	257.1	47.5	194.4	22.4	9.3	1.7	7.0	
2013	0.5	1030.0	268.5	50.5	197.3	22.6	9.5	1.8	7.0	
2014	1.6	1069.3	281.6	51.0	203.4	22.6	9.6	1.7	7.0	
2015	1.7	1120.2	299.6	52.9	211.7	22.9	9.9	1.7	7.0	

〈부표 6〉 스웨덴의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단위: %, 십억크로나)

연도	경제 성장률	조세수입				조세부담률				비고(세율 조정, 경제위기 여부)
		총조세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부가 가치세	총조세	개인 소득	법인 소득	소비	
1979	3.8	229.1	97.2	7.1	30.6	31.9	18.6	1.4	5.9	
1980	1.7	259.2	106.4	6.4	34.6	31.2	18.0	1.1	5.8	
1981	0.5	291.4	116.7	8.4	39.6	31.8	18.0	1.3	6.1	
1982	1.2	312.0	127.8	10.5	41.3	31.8	18.0	1.5	5.8	개인소득세율 인하
1983	1.9	354.9	138.6	12.1	48.2	32.7	17.5	1.5	6.1	
1984	4.2	394.7	152.7	14.6	53.2	32.7	17.1	1.6	6.0	
1985	2.2	433.5	167.9	15.1	60.5	33.6	17.3	1.6	6.3	
1986	2.7	497.0	190.1	23.7	66.8	35.3	18.0	2.2	6.3	
1987	3.4	566.7	212.0	23.6	76.1	37.5	18.5	2.1	6.7	개인소득세율 인하
1988	2.6	610.6	238.7	32.0	81.7	36.5	19.1	2.6	6.5	
1989	2.7	683.6	268.9	25.8	93.3	36.2	19.4	1.9	6.7	
1990	0.8	756.0	291.1	23.7	112.4	36.0	19.1	1.5	7.4	부가가치세율 인상
1991	-1.1	777.0	260.5	27.0	127.1	33.7	15.9	1.7	7.8	경제위기 발발, 소비세율 인하, 법인소득세율 인하, 부가가치세율 인상
1992	-1.2	735.3	259.2	21.0	114.6	31.8	15.9	1.3	7.0	
1993	-2.1	724.9	264.4	32.2	122.4	32.3	16.2	2.0	7.5	
1994	4.1	777.9	285.7	42.0	124.0	32.5	16.4	2.4	7.1	법인소득세율 인하
1995	4.0	859.3	287.6	49.8	166.6	33.0	15.3	2.6	8.8	개인소득세율 인상
1996	1.5	915.2	309.2	48.8	158.0	33.8	16.0	2.5	8.2	
1997	2.9	975.7	326.9	57.0	167.4	34.8	16.2	2.8	8.3	
1998	4.2	1027.1	344.5	55.7	177.1	35.1	16.2	2.6	8.3	
1999	4.5	1092.2	378.6	62.9	186.8	37.1	16.9	2.8	8.3	개인소득세율 3단계 세제로 개정
2000	4.7	1166.0	387.5	87.8	197.5	36.1	16.3	3.7	8.3	
2001	1.6	1160.6	372.7	65.1	206.1	33.5	15.0	2.6	8.3	
2002	2.1	1160.9	358.5	54.7	215.7	32.0	13.9	2.1	8.4	
2003	2.4	1217.2	385.7	60.7	225.2	32.6	14.4	2.3	8.4	
2004	4.3	1280.5	407.1	80.3	234.0	33.1	14.5	2.9	8.3	
2005	2.8	1355.2	427.6	102.0	248.3	34.1	14.7	3.5	8.5	
2006	4.7	1424.5	453.9	107.3	263.8	34.2	14.6	3.5	8.5	
2007	3.4	1482.6	457.8	115.9	282.6	33.2	13.9	3.5	8.6	
2008	-0.6	1490.7	443.6	95.6	297.5	33.0	13.1	2.8	8.8	
2009	-5.2	1449.7	417.3	93.0	299.5	33.2	12.7	2.8	9.1	법인소득세율 인하
2010	6.0	1521.4	423.9	115.8	322.6	32.3	12.0	3.3	9.2	
2011	2.7	1554.3	427.9	113.0	330.8	32.6	11.7	3.1	9.0	
2012	-0.3	1568.2	439.6	94.8	329.3	32.4	11.9	2.6	8.9	
2013	1.2	1617.8	459.1	99.9	337.8	32.9	12.2	2.7	9.0	법인소득세율 인하
2014	2.6	1676.4	479.5	106.1	353.4	32.9	12.2	2.7	9.0	
2015	4.1	1800.7	518.0	124.4	379.2	33.6	12.5	3.0	9.1	

세법연구 17-02

재정정책과 조세부담의 관계 국제비교

발행 2017년 6월 30일

저자 홍성훈 · 송은주 · 이서현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에스디워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ISBN 978-89-8191-887-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